

2021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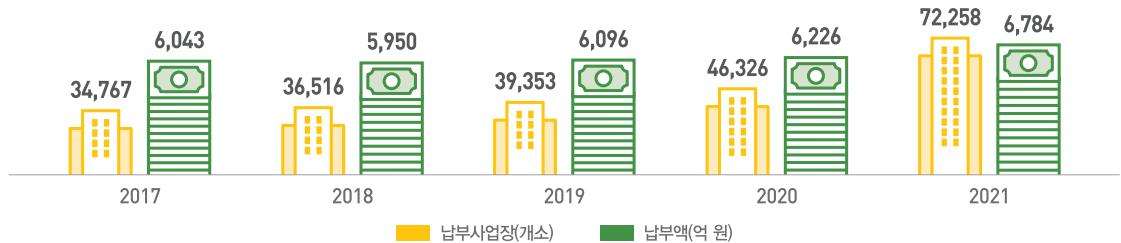


2021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공제회 사업 주요 통계 현황(최근 5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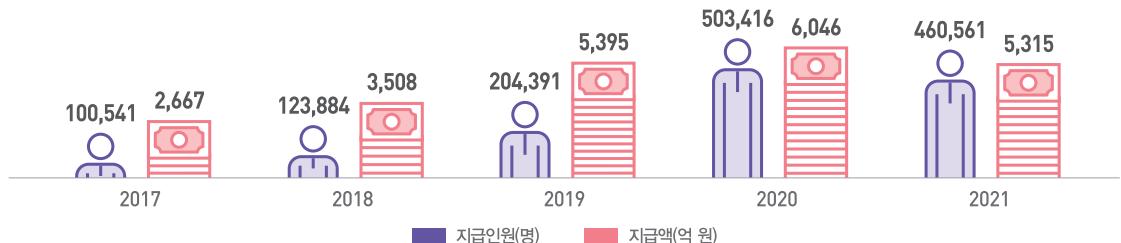
연도별 퇴직공제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연도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피공제자수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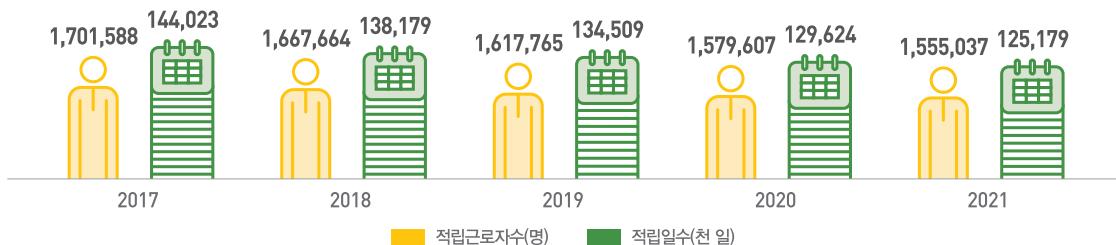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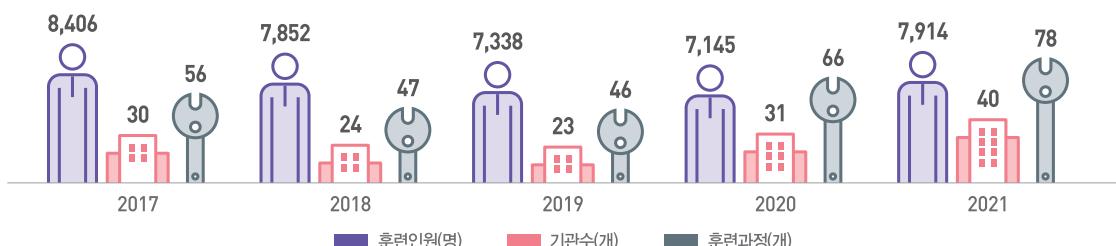
연도별 퇴직공제 적립근로자수 및 적립일수 현황



퇴직공제부금 운용규모 및 수익률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훈련사업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건설근로자 복지지원사업(각 사업의 2021년까지 누계)

생활안정 대부	47,801명 764억 원	고용 불안정 등으로 시중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 본인의 퇴직공제금 적립액의 50% 범위 내에서 주택자금, 학자금, 입원·수술비 등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지급
단체보험 가입	59,231명 75억 원	건설현장,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 등에 대한 다양한 보장
종합 건강검진	5,746명 12억 원	열악한 외부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종합 건강검진 지원
자녀 장학금	4,744명 43억 원	생활 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결혼·출산 지원금 (유산위로금)	11,385명 41억 원	청년 건설근로자의 결혼·출산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21년에 유산위로금 추가
가족 힐링캠프	898명 6억 원	건설업에 공적이 있거나 감동있는 사연을 통해 선정된 건설근로자 가족을 격려하고 해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 ※ 2020년~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 휴가지원으로 대체하여 사업 추진
휴가 지원	2,004명 6억 원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국내가족 여행 기회 제공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12회 (210점 시상)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매년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및 수상작 전시
종합지원 이동 상담버스 운영	145,556명	건설현장 및 새벽인력시장을 직접 찾아가 퇴직공제 적립내역 확인 및 축소신고 접수, 고용·복지사업 안내 등 상담서비스 제공
건설유공 근로자 정부포상 수여	12회 (419명 수상)	매년 11월22일 건설기능인의 날(국토부 지정 기념일) 기념식에서 건설업 발전에 공적이 있는 근로자를 발굴·추천하여 훈장 등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격려

CONTENTS

PART **01**

건설근로자공제회 개관

제1장 조직 및 기능	16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16
2. 기능	17
3. 조직 및 인원	18
4. 회계	19
제2장 주요사업	20

PART **02**

주요사업 현황

제1부 퇴직공제사업	24
제1장 사업 개요	25
1. 가입 범위	25
2. 퇴직공제 이행	26
3. 퇴직공제금 지급	27
제2장 주요 추진 사업	28
1. 공제가입 사업장 관리 강화	28
2. 피공제자 권익 보호 및 지급업무의 편의성 제고	29
제3장 추진현황	31
1. 퇴직공제 가입 현황	31
2. 공제부금 납부 및 적립일수	32
3. 퇴직공제 가입 근로자 현황	32
4.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33

CONTENTS

제2부 고용지원사업 34

제1장 | 기능향상훈련 35

- 1. 사업 개요 35
- 2. 주요 추진 사업 36
- 3. 추진현황 37

제2장 | 무료취업지원 42

- 1. 사업 개요 42
- 2. 주요 추진 사업 42
- 3. 추진현황 44

제3장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45

- 1. 사업 개요 45
- 2. 주요 추진 사업 46
- 3. 추진현황 46

제4장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48

- 1. 사업 개요 48
- 2. 주요 추진 사업 48
- 3. 추진현황 50

제5장 | 관련 사업 51

- 1.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51

제3부 고객복지사업 53

제1장 | 사업 개요 54

제2장 | 주요 추진 사업 및 추진현황 56

- 1. 생활안정 및 금융지원 56
- 2. 건강관리 지원 57
- 3. 자녀교육 지원 59
- 4. 가족친화 지원 60

PART
03

PART
04

5. 상담서비스 지원	63
6. 건설근로자 이미지 개선	64
제4부 자산운용사업	68
제1장 사업 개요	69
제2장 주요 추진 사업	70
1.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운영	70
2. 효율적인 자산운용	71
3.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74
제3장 추진현황	76
1. 자산운용 현황	76
2. 운용 규모 및 수익률	7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통계

제1장 건설경기 및 건설노동시장 동향	85
1. 건설경기 동향	85
2. 건설노동시장 동향	89
제2장 퇴직공제사업 운영실적	93
1. 개요	93
2. 공제부금 적립일수	97
3. 공제부금 납부	121
4. 퇴직공제금 지급	131

부록

퇴직공제사업 세부 통계	145
---------------------------	------------

표 차례

<표 1> 주요 연혁	16
<표 2> 주요 기능	17
<표 3> 직급별 정원	19
<표 4>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범위의 확대 추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5
<표 5>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범위의 확대 추이: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기타공사	26
<표 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현황	31
<표 7> 공제부금 납부 및 적립일수 현황	32
<표 8> 퇴직공제 가입 근로자 현황	33
<표 9>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33
<표 10> 고용노동부 위탁 훈련사업 추진 실적	37
<표 11>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직종별	38
<표 12>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과정별	39
<표 13>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연령별	39
<표 14>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성별	40
<표 15>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실적: 참여유형별	41
<표 16>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추진 실적	44
<표 17> 공사예정금액별 전자카드제 적용 구분	45
<표 18> 전자카드제 적용·운영 사업장 현황	47
<표 19> 전자카드 발급 현황	47
<표 20> 전자카드 사업장 신고 현황	47
<표 21> 2021년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통계	50
<표 22> 최근 3개년 건설인력 고용지수 등급별 업체분포 현황	52
<표 23> 최근 3개년 건설인력 고용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감점 업체 현황	52
<표 24> 생활안정대부 지급현황	57
<표 25>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추진 현황	58
<표 26>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추진 현황	58
<표 27>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추진 현황	59
<표 28> 건설근로자 협성장학금 추진 현황	60
<표 29> 고등학생 자녀 무료 인터넷 수강 지원 추진 현황	60
<표 30> 결혼·출산 지원금 지원 추진 현황	61
<표 31> 가족 힐링캠프 추진 현황	62

<표 32>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추진 현황	62
<표 33>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추진 현황	63
<표 34> 종합지원 이동상담버스 운영 현황	63
<표 35> 노무·건강 등 건설근로자 상담서비스 실시 현황	64
<표 36>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여 현황	65
<표 37> 사진·영상 공모전 추진 현황	66
<표 38> 2021년 온라인 사진·영상 전시회 실시 현황	66
<표 39> 2021년 건설근로자 수기공모전 실시 현황	67
<표 40> 2021년도 부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자산배분 및 허용범위	72
<표 41>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전술적 자산배분 강화	72
<표 42> 공제부금 자산운용 현황	77
<표 43> 공제부금 운용 규모 및 수익률 추이	78
<표 44> 특별회계 운용 규모 추이	79
<표 45> 건설투자 추이	88
<표 46> 건설업취업자의 직종별 구성 변화: 최근 10년간	90
<표 47> 퇴직공제사업 운영 현황(1998~2021)	94
<표 48> 연도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추이(2007~2021)	98
<표 49> 성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100
<표 50>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101
<표 51>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102
<표 52> 적립일수 규모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104
<표 53>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106
<표 54> 월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108
<표 55> 내·외국인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109
<표 56> 성별 신규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110
<표 57> 연령별 신규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111
<표 58> 직종별 신규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113
<표 59> 지역별 신규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115
<표 60>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116
<표 61>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117
<표 62>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119
<표 63>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121
<표 64> 연도별 퇴직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1998~2021)	123

<표 65> 공사유형별 퇴직공제부금 납부 현황	125
<표 66> 납부액 규모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126
<표 67>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127
<표 68>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130
<표 69>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131
<표 70>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1999~2021)	133
<표 71>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135
<표 72>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136
<표 73>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138
<표 74> 적립일수 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139
<표 75> 지급액 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141
<표 76>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143

그림 차례

[그림 1] 조직도	18
[그림 2] 사업 개요	20
[그림 3]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체계	36
[그림 4] 공제부금 운용 규모 및 수익률 추이	78
[그림 5] 국내 건설수주 중장기 추이	87
[그림 6] 발주 부문별 국내 건설수주 추이	87
[그림 7] 건설수주와 건설기성의 순환변동 추이	88
[그림 8] 건설투자 및 건설업취업자 추이	89
[그림 9] 건설기능인력의 규모 및 고령화 추이	92
[그림 10] 건설기능인력의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	92
[그림 11] 퇴직공제 피공제자 및 퇴직자 누계 추이(1998~2021)	95
[그림 12]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 및 연도별 수지 추이(1998~2021)	96
[그림 13] 연도별 퇴직공제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추이(2007~2021)	98
[그림 14] 성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100
[그림 15]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0
[그림 16]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101
[그림 17]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1

[그림 18]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102
[그림 19]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2
[그림 20] 적립일수 규모별 적립근로자수	103
[그림 21] 적립일수 규모별 적립일수	103
[그림 22] 지역별 적립근로자수	105
[그림 23] 지역별 적립일수	105
[그림 24] 월별 적립근로자수	107
[그림 25] 월별 적립일수	107
[그림 26] 내·외국인별 적립근로자수	109
[그림 27] 내·외국인별 적립일수	109
[그림 28] 성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110
[그림 29] 성별 신규 적립일수	110
[그림 30] 연령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111
[그림 31] 연령별 신규 적립일수	111
[그림 32] 직종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112
[그림 33] 직종별 신규 적립일수	112
[그림 34] 지역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114
[그림 35] 지역별 신규 적립일수	114
[그림 36] 성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116
[그림 37] 성별 외국인 적립일수	116
[그림 38] 연령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117
[그림 39] 연령별 외국인 적립일수	117
[그림 40] 직종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118
[그림 41] 직종별 외국인 적립일수	118
[그림 42] 지역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120
[그림 43] 지역별 외국인 적립일수	120
[그림 44] 연도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1998~2021)	122
[그림 45] 공사유형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124
[그림 46] 공사유형별 공제부금 납부액	124
[그림 47] 납부액 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126
[그림 48] 납부액 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액	126
[그림 49]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127
[그림 50]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액	127

[그림 51]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129
[그림 52]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액	129
[그림 53]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131
[그림 54]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액	131
[그림 55]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1999~2021)	132
[그림 56]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34
[그림 57]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134
[그림 58]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36
[그림 59]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136
[그림 60]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37
[그림 61]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137
[그림 62]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39
[그림 63]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139
[그림 64] 지급액 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41
[그림 65] 지급액 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141
[그림 66]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42
[그림 67]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142

부표 차례

<부표 1> 연도별 신규 피공제자수	147
<부표 2> 연도별 성별 신규 피공제자수	148
<부표 3> 연도별 연령별 신규 피공제자수	149
<부표 4> 연도별 지역별 신규 피공제자수	151
<부표 5>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규 피공제자수	153
<부표 6>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규 피공제자수	155
<부표 7> 연도별 내·외국인 신규 피공제자수	157
<부표 8> 성별 연령별 누적 피공제자수	158
<부표 9> 성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160
<부표 10> 성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162
<부표 11> 성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164
<부표 12> 연령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166

<부표 13>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176
<부표 14>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186
<부표 15> 연령별 내·외국인 누적 피공제자수	196
<부표 16> 지역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198
<부표 17> 지역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208
<부표 18> 월별 연도별 적립일수	218
<부표 19> 연도별 성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219
<부표 20> 연도별 연령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220
<부표 21> 연도별 지역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222
<부표 22>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224
<부표 23>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226
<부표 24>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금액	228
<부표 25> 연도별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229
<부표 26> 연도별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230
<부표 27> 연도별 지역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232
<부표 28> 연도별 지급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234
<부표 29> 연도별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236
<부표 30> 연도별 퇴직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238
<부표 31> 연령별 지역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1999~2021)	239
<부표 32> 연령별 적립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1999~2021)	241



PART
01

...

건설근로자공제회 개관

제1장 | 조직 및 기능

제2장 | 주요사업



• • •

조직 및 기능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퇴직공제사업,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사업 등을 실시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공제회는 설립 당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공제부금 규모 증가와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 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표 1> 주요 연혁

시기	내용
199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7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설립(노동부장관 인가)
1998	업무 개시(퇴직공제사업 시작)
2003	「건설근로자공제회」로 기관명 변경
2006	전국 광역권 7개 지부 개소
2011	기능훈련, 취업지원, 복지사업 시작(건설근로자법 개정)
2013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정
2019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확대(건설근로자법 개정)
2020	직제 개편(3본부 1실 12팀, 7지사 7센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2021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2 기능

공제회의 기능은 건설근로자법과 공제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위의 사업에 달린 사업 등이다.

건설근로자법 1차 개정(2002.12.30 법률 제6848호)을 통해 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변경하고, 법률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를 신설해 퇴직공제제도 이외에 공제회가 수행할 다양한 사업을 열거했다. 공제회의 명칭을 변경한 취지는 공제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퇴직 이후’의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업인 퇴직공제 이외에, ‘재직 중’인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지원 및 복지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취지였다.

그 결과 기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각종 제도로부터 소외됐던 비정규직 건설근로자들은 보다 강화된 고용지원 및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복지종합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2019년 말에는 고용 및 복지 개선의 초석이 될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법이 개정(2019.11.26. 법률 제16620호)됐다. 퇴직공제금의 지급대상 확대, 소멸시효 연장, 수급범위 개선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기능등급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등 신규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2020년 11월에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본격 시행되었고, 2021년 5월에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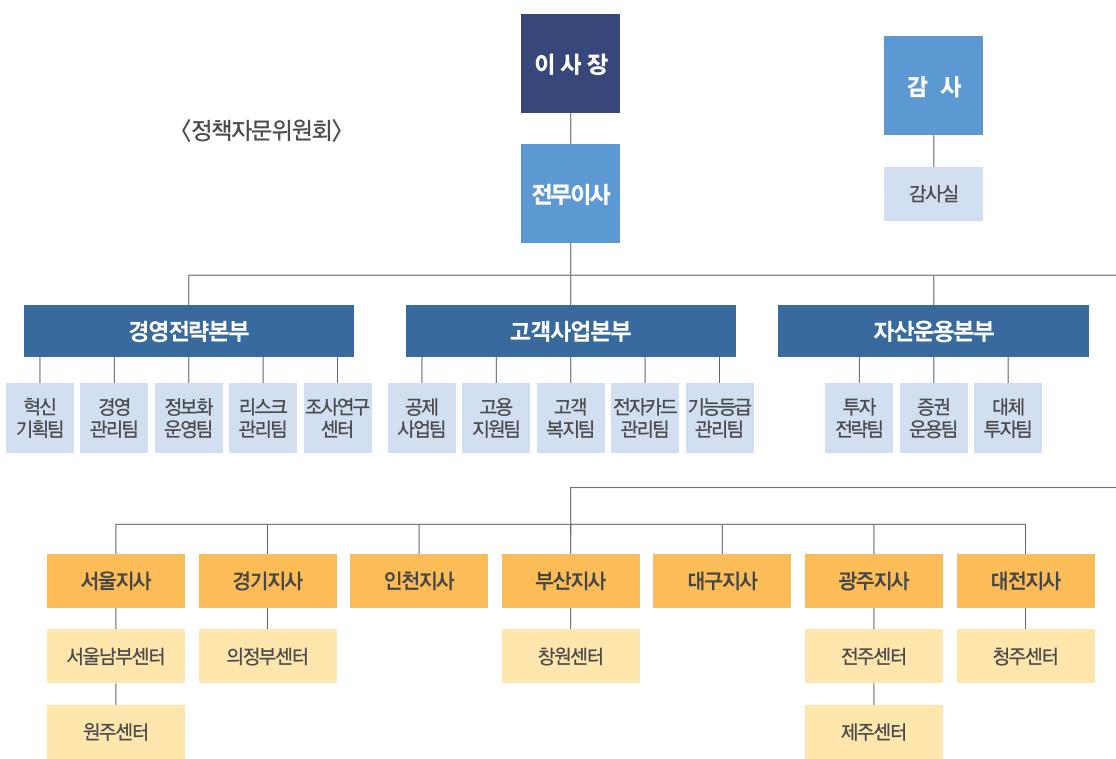
<표 2> 주요 기능

구분	건설근로자법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공제회 정관 제36조(사업)
주 요 기 능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2. 공제부금의 수납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
	3. 제16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3. 퇴직공제부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지급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5.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5. 공제사업에 관련된 간행물의 발행 및 홍보사업
	6.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 증진 사업	6.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구분	건설근로자법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공제회 정관 제36조(사업)
주 요 기 능	6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7.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사업 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을 위한 사업
		10. 정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사업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3 조직 및 인원

[그림 1] 조직도



<표 3> 직급별 정원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타
정원(명)	214.5	3	5	10	17	31	44	49	13	42.5
현원(명)	201.5	3	3	9	18	31	28	54	16	39.5

4 회계

공제회의 회계는 부금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외부수탁회계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된다.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하루 일할 때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6,500원 중 6,200원은 부금회계로서 근로자 몫인 퇴직공제금으로 전액 적립되어 관리·지급되고, 300원은 공제회의 기관운영비 등인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적립·운영되고 있다.

특별회계는 2006년 1월 퇴직공제금 신고 납부방식의 변경(증지부착방식→전산신고방식)으로 인한 미회수공제증지 판매대금과 그 운영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부금회계에서 분리됐다. 외부수탁회계는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받는 정부 위탁사업(훈련, 취업지원) 관리를 위해 별도로 구분하는 회계다.

제2장

• • •

주요사업

공제회의 사업은 크게 공제부금 수납, 공제부금 운용,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복지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공제부금 수납은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으로부터 피공제자인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수납하는 과정이고, 공제부금 운용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을 더 많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적립된 공제부금을 불리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축적된 부금을 활용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거나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각 피공제자별로 적립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관리해야 하고, 퇴직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고용·복지 서비스는 건설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여주는 기능훈련사업, 무료로 구인자와 구직자를 매개하는 취업지원사업, 출·퇴근 기록을 비롯해 제반 근로경력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 근로경력 및 자격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을 위한 기능등급제, 실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복지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2] 사업 개요



첫째, 퇴직공제사업이란 퇴직공제제도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말한다.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건설사업주는 소속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가 매월 근로한 일수만큼 근로내역 신고와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고,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건설근로자는 건설업을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2020년 5월 27일부터는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건설근로자도 만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98년에 시행된 퇴직공제제도는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의 고용특성을 반영한 최초의 건설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고용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실시와 직업소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무료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정부위탁사업을 통한 고용보험기금이다. 한편, 2020년 11월에 출범한 전자카드제와 2021년 5월에 출범한 기능등급제 역시 고용지원사업으로서 기술하고자 한다. 전자는 출·퇴근 기록을 비롯해 제반 근로경력을 관리하는 것이고, 후자는 근로경력 및 자격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을 하려는 것이다.

셋째, 고객복지사업이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사기 진작, 직업이미지 제고 등 건설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생활안정과 금융지원, 건강관리, 자녀교육, 가족친화 사업과 다양한 상담서비스, 건설근로자 이미지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자산운용사업은 퇴직공제금 지급, 복지증진 사업,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수납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을 효과적으로 증식시키는 사업이다.

서울타워



PART 02

• • •

주요사업 현황

-
- | | | |
|------------|---------------|------------------------|
| 제1부 | 퇴직공제사업 | 제 1장 사업 개요 |
| | | 제 2장 주요 추진 사업 |
| | | 제 3장 추진현황 |
| 제2부 | 고용지원사업 | 제 1장 기능향상훈련 |
| | | 제 2장 무료취업지원 |
| | | 제 3장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 | | 제 4장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
| | | 제 5장 관련 사업 |
| 제3부 | 고객복지사업 | 제 1장 사업 개요 |
| | | 제 2장 주요 추진 사업 및 추진현황 |
| 제4부 | 자산운용사업 | 제 1장 사업 개요 |
| | | 제 2장 주요 추진 사업 |
| | | 제 3장 추진현황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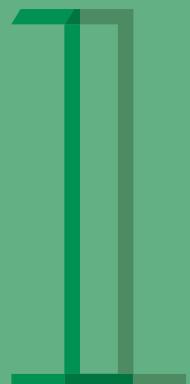
제 1부

퇴직공제사업

제1장 | 사업 개요

제2장 | 주요 추진 사업

제3장 | 추진현황



제1장

• • •

사업 개요

퇴직공제사업은 건설사업장의 퇴직공제 가입·공제부금 납부,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적립금액 관리를 통해 퇴직공제금과 대부금을 지급하는 공제회의 핵심 사업이다. 공제가입 사업장 및 피공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1 | 가입 범위

퇴직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는 여러 차례의 법령 개정을 거쳐 확대되어 왔는데, 2021년 현재 공사예정금액 기준으로 공공공사의 경우 1억 원 이상, 민간공사의 경우 50억 원 이상이다.

<표 4>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범위의 확대 추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공사 사업 개요종류	1998.1.1	2001.8.25	2004.1.1	2008.1.1	2010.9.30	2020.9.8
국가·지자체 발주공사	100억 원	50억 원	10억 원	5억 원	3억 원	1억 원
정부출자·출연법인 발주공사	100억 원	50억 원	10억 원	5억 원	3억 원	1억 원
민간투자사업 시행공사	-	-	10억 원	5억 원	3억 원	1억 원
공동주택공사, 주상복합공사, 오피스텔공사	500호	500호	300호	200호	200호	200호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	-	-	100억 원	50억 원

주 :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함한 금액을 말함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은 제외)

<표 5>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범위의 확대 추이: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기타공사

공사종류	2003.7.1	2008.1.28	2011.10.26	2020.5.27
공공	10억 원	5억 원	3억 원	1억 원
민간	-	-	100억 원	50억 원

주: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기타공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등이 포함됨

퇴직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피공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다. 적용제외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이다.

2 퇴직공제 이행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공사 시작일로부터 당연 가입되고, 실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공제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퇴직공제가입 사업주는 매월 15일까지 당해 가입공사에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적립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부금은 발주자가 부담(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반영하고 준공 시 정산)하는데, 소요비용은 ‘직접노무비×2.3%’(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제2015-610호, ’15.8.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제부금은 근로자 둘인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비에 쓰이는 ‘부가금’으로 구성된다. 공제부금은 다섯 차례 인상되었는데, 공제부금액의 인상이 네 차례 그리고 부가금의 인상이 두 차례 있었다.

특히 2018년부터 2년째 동결됐던 퇴직공제금이 2020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4,800원에서 6,200원으로 인상되어 2020년 5월 27일 이후 신규 입찰공고 공사부터 적용되었다. 그에 따라,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일액이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되었다.

공제부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퇴직공제제도 출범 이후 2006년 말까지 2,100원이었고, 2007년에는 3,100원, 2008년부터 4,100원, 2012년 4월부터 2017년까지 4,200원, 2018년부터 5,000원, 2020년 5월부터 6,500원이다.

3 퇴직공제금 지급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60세에 이른 경우, 둘째,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로서 사망하거나 만65세에 이른 경우이다.

퇴직공제금 지급액은 본인에게 적립된 퇴직공제금과 매월 복리로 적립된 이자(공제회가 매년도 2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 고시)를 더한 금액이며, 장기근속자에게 추가 지급되는 특별퇴직공제금은 7년 이상이면 30만 원, 10년 이상이면 50만 원, 15년 이상이면 100만 원이다.

• • •

주요 추진 사업

2021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퇴직공제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제가입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건설근로자 권리 보호 및 퇴직공제금 등 지급업무의 편의성 제고 등이다.

1 공제가입 사업장 관리 강화

가. 전략적 사업장 관리 체계 구축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근로일수의 신고가 감소하는 한편, 퇴직공제 적용공사 범위는 확대됨에 따라 전략적인 사업장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한정된 인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장기(4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퇴직공제 누락방지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에는 과거의 실적분석과 내·외부 요구사항을 종합해 4개의 전략과제를 담았다. 전략과제는 성과목표에 따라 내부절차 및 제도 개선, 사업장 관리 효율화, 고객만족도 제고, 근로자 근로일수 보호 강화 등으로 대별되며, 31개 실행과제로 세분화된다. 종합계획에 따라 수행한 결과, 역대 최대의 수납액(6,784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공제부금 납부율(0.6%)과 근로내역 신고율(6.9%)도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향후 세부 실행과제가 순차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사업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전담책임제 및 이행등급제의 본 사업을 실시하였다. 전담책임제는 공제회 직원별로 담당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사업장의 성립신고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수도권 1,068개소('20년 시범운영)에서 전국 3,802개소로 확대 적용한 결과, 납부율이 대폭 개선(12.5%)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행등급제는 전담관리공사를 대상으로 미신고·미납부 등 객관적인 퇴직공제 제도 이행 정도에 따

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산출한 후, 기존의 획일화된 관리 방식과 달리, 하위 등급의 부진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맞춤형 이행지도 기반을 제공하려는 제도이다. 이행등급제 적용공사 수가 증가(3,954개소→6,255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우수(1~2) 등급이 2% 증가하는 개선효과를 볼 수 있었다.

나. 수요자 주도 자율개선사업 추진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사업주의 관심과 교육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에는 수요자 주도 자율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노무사의 사전 컨설팅과 고용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시범운영하였다. 소규모 사업장 또는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직공제 관계 법령과 책임자의 역할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결과, 높은 교육 만족도(92.2점)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 제도 이행을 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22년에는 참여 대상을 2배로 확대(본 사업 실시)할 계획인데,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고 공제사업 홍보를 강화했다. 연간 910개소를 대상으로 비대면 사업주 교육을 18회 실시하였고, 전자 해설서·동영상 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상시 운영하였으며, 발주기관 대상 특화 교육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언론사를 통한 홍보(18개 매체)와 함께 사업주 성실신고 캠페인(120개소)을 전개하여, 법 개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안내와 성실이행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였다.

2 피공제자 권리 보호 및 지급업무의 편의성 제고

가. 퇴직공제금 수혜대상 확대 및 접수창구 다양화로 민원 편의 제고

건설근로자법 개정('19.11.27.)으로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도 만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수혜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수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자의 청구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접수대행 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가까운 우체국 방문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21.12월까지 30만 원 미만의 소액 ARS전화청구를 신설하여 기관 방문 없이도 전화로 청구가 가능도록 민원 편의를 제고하였다.

2021년 말 기준 우체국 방문을 통한 지급자 수는 32만 1천 명(1,283억 원)이며 ARS전화청구를 통한 지급자 수는 12만 5천 명(146억 원)이다.

나. 퇴직공제금 찾아주기 대상 확대를 통한 수급권 보호 강화

고령자,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 중증장해자, 최근 2년간 근로내역 신고가 없는 건설근로자 이외에, 외국인에 대한 퇴직공제금 청구 안내를 강화하고, 장기 고령 미청구자 및 사망 소멸시효 임박자 유족에게도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재차 안내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주민등록주소, 유족정보 및 외국인 출입국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법 제23조의2), 해당정보를 제공 받아 건설근로자 및 유족의 주민등록주소지로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여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둘째,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업인력공단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민원실에 안내 리플릿을 비치하고 유관기관의 각종 매체를 활용해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홍보하였다.

셋째, 압류방지통장에 대한 홍보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였다. 각종 고지 시 압류방지통장 발급가능기관을 안내하거나, 공제회 및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압류방지통장 개설 및 이용을 안내했다.

다. 고지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 편의 증진

기존 고지서비스는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시 입력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에 의존하여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경우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의 특성상 정보 불분명으로 인한 오·배송과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카카오페이 → KT공공알림문자서비스 → 우편발송’ 순의 3단계 고지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관계기관 정보연계를 통해 30분 이내의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 서비스를 실시하여 건설근로자의 알권리와 고객 편의를 증진하였다.

• • •

추진현황

1 퇴직공제 가입 현황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신규 가입한 공사는 78,422개소로 전년대비 73.5%(33,218개소) 증가하였으며, 공사금액과 공제부금 반영액 역시 각각 15.8%(294,483억 원)와 49.7%(4,945억 원) 증가하였다.

신규 가입공사의 증가는 당연가입 대상 공사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건설공사 발주정보 파악시스템 운영과 퇴직공제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입 누락을 방지하는 등 가입대상공사 관리 강화에 힘쓴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신규가입공사 대비 원가미반영공사의 비율은 전년대비 3.8%p(390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현황

(21.12.31 기준, 단위: 개소, 억 원, %, %p)

구분	2020	2021	증감	증감률
신규 가입	계	45,204	78,422	33,218 73.5
	공공공사	41,849	73,130	31,281 74.7
	민간공사	1,838	2,973	1,135 61.8
	임의	1,517	2,319	802 52.9
	공사금액	1,860,758	2,155,241	294,483 15.8
	공제부금 반영액	9,954	14,899	4,945 49.7
원가 미반영공사 (미반영률)		3,584	3,194	△390 △10.9
		7.9	4.1	△3.8 △48.1

2 공제부금 납부 및 적립일수

2021년 공제부금 납부액은 6,784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558억 원(9.0%) 증가했다. 적립일수는 총 129,107천 일로 전년대비 1,071천 일(0.8%) 감소했다. 수납액은 증가했으나 적립일수는 감소하는 상반된 방향의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건설투자의 감소로 인해 전체 적립일수는 감소했지만 공제부금 일액 인상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전체 수납액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에 비해 공공공사, 민간공사 모두 공제부금 납부실적은 증가했으나 적립일수는 감소했다. 임의가입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수납액은 30.5% 증가하였으며, 적립일수는 2.8% 감소했다.

<표 7> 공제부금 납부 및 적립일수 현황

('21.12.31 기준, 단위: 천 일, 억 원, %)

구분		2020	2021	증감	증감률
공제부금 납부	계	6,226	6,784	558	9.0
	공공	2,388	2,628	240	10.1
	민간	3,697	3,972	275	7.4
	임의	141	184	43	30.5
적립일수	계	130,178	129,107	△1,071	△0.8
	공공	49,109	48,376	△733	△1.5
	민간	78,014	77,763	△251	△0.3
	임의	3,055	2,968	△87	△2.8

주 : 상기 적립일수는 소급·삭감신고 등에 의해 변동 가능하며, Part 3 퇴직공제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퇴직공제 가입 근로자 현황

2021년도 말 현재 퇴직공제 가입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는 5,294천 명으로서, 전년 대비 91천 명이 줄어 1.7% 감소하였다. 신규가입 근로자는 372천 명으로 전년 대비 3.9%(14천 명) 증가했고, 퇴직 근로자는 463천 명으로 전년 대비 8.5%(43천 명) 감소했다.

<표 8> 퇴직공제 가입 근로자 현황

(21.12.31 기준, 단위: 천 명, %)

구분	2020	2021	증감	증감률
피공제자수 누계	5,385	5,294	△91	△1.7
신규 피공제자수	358	372	14	3.9
퇴직 피공제자수	506	463	△43	△8.5

4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2021년도의 퇴직공제금 지급건수는 460,561건으로서, 전년 대비 42,855건이 줄어 8.5% 감소하였다. 지급액은 5,403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645억 원이 줄어 10.7% 감소하였다.

한편, 특별퇴직공제금 지급건수는 9,194건으로서, 전년 대비 1,268건이 줄어 12.1% 감소하였다. 지급액은 37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4억 원이 줄어 9.8% 감소하였다. 특별퇴직공제금은 장기적립자를 우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7년 이상자에게는 30만 원, 10년 이상자에게는 50만 원, 15년 이상자에게는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표 9>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21.12.31 기준, 단위: 건, 억 원, %)

구분	2020	2021	증감	증감률
퇴직공제금	지급건수	503,416	460,561	△42,855
	지 급 액	6,048	5,403	△645
특별퇴직공제금	지급건수	10,462	9,194	△1,268
	지 급 액	41	37	△4

주 : '추가지급'은 퇴직공제금 지급건수에서 제외됨. 특별퇴직공제금 지급건수 및 지급액 수치는 퇴직공제금 지급건수 및 지급액에 기 포함됨

제2부

고용지원사업

제1장 | 기능향상훈련

제2장 | 무료취업지원

제3장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제4장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제5장 | 관련 사업



제1장

• • •

기능향상훈련

1 사업 개요

고용지원사업 중 기능향상훈련이란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켜 취업능력을 배양 하려는 사업이다. 일과 실업이 반복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특수성을 고려하여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향상 및 소득증대 둘 다 확보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고자 했다. 현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건축시공 직종을 훈련직종으로 선정했고, 훈련과정은 주간과정과 야간과정으로 나누어 개설 했으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했다.

참여대상은 만 15세 이상인 자로서, 고용보험에 건설현장 근로내역이 있는 자,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있는 자,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자,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직업안정기관에 건설직종으로 구직 신청한 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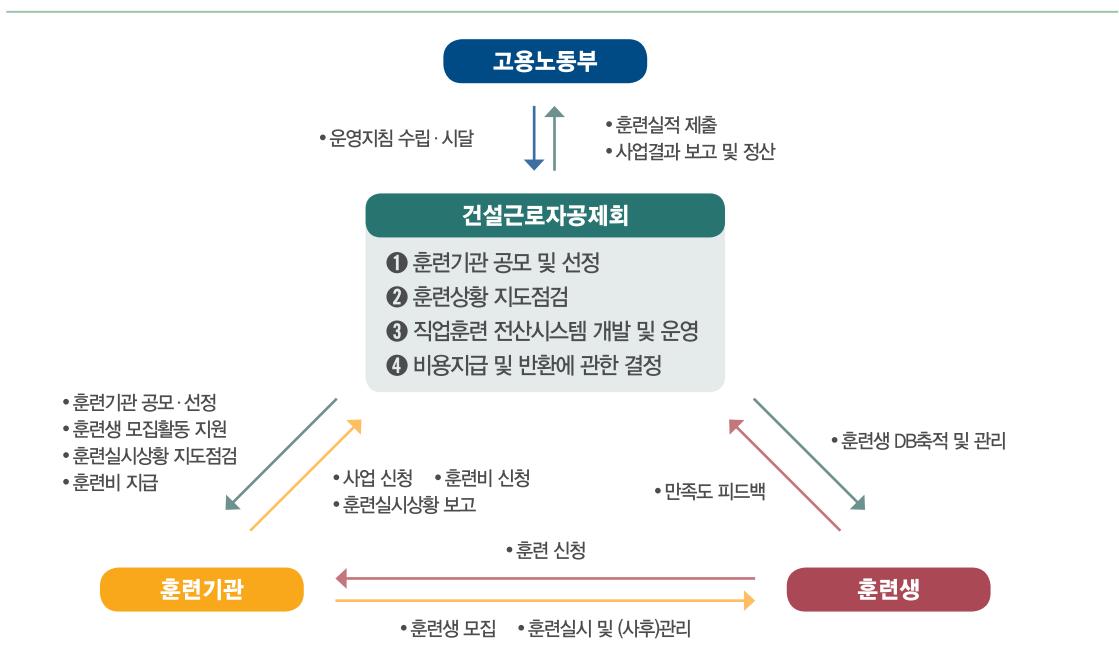
사업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는데, 고용노동부가 공제회에 위탁하면 공제회가 민간 훈련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고 재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시행지침을 수립·시달하고, 위탁계약 체결 및 선정된 훈련기관의 재위탁 승인, 분기별 예산 배정, 매월 추진실적 관리 등을 담당한다.

공제회는 약정 체결, 훈련 목표인원의 달성 유도, 훈련기관 공모·선정, 훈련생 모집활동 지원, 훈련생 출결관리 등 전산시스템 운영, 훈련 실시상황 지도점검, 훈련비 등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결정, 체계적인 홍보 활동 등을 담당한다.

훈련기관은 공제회와의 훈련약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 안전교육 및 철저한 과정관리 등을 통해 훈련의 내실화를 추구하며, 무료취업지원센터와 협업 등을 통해 훈련수료자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한다.

[그림 3]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체계



2 주요 추진 사업

2021년에는 기능향상 훈련과정 다양화 및 훈련생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숙련인력 및 다기능공 양성을 위해 기본과정을 단일직종 및 혼합직종으로 구분해 운영하였고, 별도의 심화과정 운영을 통해 수준별로 맞춤 훈련을 실시했다. 기본과정(단일 및 혼합)은 공급부족 규모가 큰 12개 직종으로 공모하되 직무연관성이 크고 현장수요가 많은 직종을 대상으로 하나의 과정에서 두 가지 직종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방수+조적’, ‘타일+미장’ 등의 혼합과정을 운영했다. 공급이 부족한 건축(일반)목공과 타일 2개 직종에 대해서는 심화과정을 운영했다.

둘째, 훈련생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고 취업을 촉진하고자 노력했다. 야간과정의 1일 훈련비를 3천 원 인상하는 한편, 수료생이 건설현장 등에 취업한 경우 취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훈련생의 취업 동기를 강화해 취업률을 높이고자 했다.

셋째, 상용근로자 훈련 참여제한 폐지를 통해 건설업 이직 희망 근로자에 대한 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훈련인원의 확대 및 고령화·인력부족 문제의 해소 등을 도모하였다.

넷째, 훈련생에 대한 취업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상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구직등록 및 취업 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다.

3 추진현황

가. 고용노동부 위탁 훈련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고용노동부 위탁훈련에는 총 81,602명이 참여하고 68,160명이 수료했는데, 조기취업자를 제외하면, 87.5%의 수료율을 기록했다. 참여한 훈련인원과 수료인원은 2009년에 11,297명과 8,8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료율과 취업률은 2018년에 각각 95.4%와 72.1%로 가장 높았다. 2021년에는 훈련인원과 수료인원은 각각 7,914명, 수료인원 7,130명을 기록하였으며, 취업률은 56.0%를 기록하였다.

<표 10> 고용노동부 위탁 훈련사업 추진 실적

(21.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훈련기간	훈련인원	수료자	수료율	취업자	취업률
2009	'09.07~'09.12	11,297	8,894	78.7	2,100	38.4
2010	'10.02~'10.12	6,041	3,815	63.2	2,538	50.8
2013	'13.05~'14.01	4,670	3,608	82.2	1,593	41.1
2014	'14.03~'15.01	4,703	3,670	86.3	2,312	56.1
2015	'15.03~'15.12	7,792	6,478	89.7	3,453	49.0
2016	'16.03~'17.01	8,444	7,184	90.9	4,289	55.5
2017	'17.01~'17.12	8,406	7,317	93.5	5,645	71.5
2018	'18.01~'18.12	7,852	7,028	95.4	5,416	72.1
2019	'19.01~'19.12	7,338	6,641	94.8	4,981	71.4
2020	'20.2~'20.12	7,145	6,395	94.0	4,537	67.3
2021	'21.01~'21.01	7,914	7,130	93.3	4,146	56.0

주 : '11년, '12년은 위탁훈련 미실시(고용노동부 사업예산 미편성), 조기취업자수는 생략

수료율(%) = 수료자/(훈련인원-조기취업자)

취업률(%) = (취업자+조기취업자)/(훈련인원+조기취업자)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주요 특성별 훈련 인원 분포의 변화 중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매년 타일과 건축목공이 각각 1위와 2위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16년부터 운영된 혼합과정은 2021년에 8개 직종으로 개설되었다.

<표 11>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직종별

(‘21.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건축 목공	도장	미장	방수	배관	용접	조적	철근	타일
2013	4,670 (100.0)	1,229 (26.3)	139 (3.0)	404 (8.7)	76 (1.6)	126 (2.7)	301 (6.4)	151 (3.2)	154 (3.3)	2,090 (44.8)
2014	4,703 (100.0)	1,180 (25.1)	395 (8.4)	215 (4.6)	88 (1.9)	422 (9.0)	640 (13.6)	248 (5.3)	162 (3.4)	1,353 (28.8)
2015	7,792 (100.0)	2,145 (27.6)	539 (6.9)	669 (8.6)	-	425 (5.5)	719 (9.3)	870 (11.2)	103 (1.3)	2,322 (29.8)
2016	8,444 (100.0)	2,240 (26.5)	486 (5.8)	664 (7.9)	174 (2.1)	527 (6.2)	397 (4.7)	439 (5.2)	-	2,277 (27.0)
2017	8,406 (100.0)	1,925 (22.9)	579 (6.9)	383 (4.6)	269 (3.2)	492 (5.9)	703 (8.4)	213 (2.5)	165 (2.0)	2,801 (33.3)
2018	7,852 (100.0)	1,927 (24.5)	560 (7.1)	126 (1.6)	311 (4.0)	388 (4.9)	347 (4.4)	140 (1.8)	127 (1.6)	1,951 (24.8)
2019	7,338 (100.0)	1,671 (22.8)	588 (8.0)	300 (4.1)	332 (4.5)	406 (5.5)	356 (4.9)	208 (2.8)	122 (1.7)	1,652 (22.5)
2020	7,145 (100.0)	1,409 (19.7)	558 (7.8)	133 (1.9)	234 (3.3)	318 (4.5)	552 (7.7)	95 (1.3)	36 (0.5)	1,645 (23.0)
2021	7,914 (100.0)	1,705 (21.5)	474 (6.0)	-	52 (0.7)	156 (2.0)	840 (10.6)	-	12 (0.2)	1,673 (21.1)

구분	형틀 +철근	배관 +방수	배관 +용접	타일 +미장	타일 +조적	타일 +방수	미장 +조적	미장 +방수	도장 +방수	도장 +타일	방수 +조적	철근 +비계
2016	147 (1.7)	-	60 (0.7)	-	1,033 (12.2)	-	-	-	-	-	-	-
2017	-	-	53 (0.6)	-	823 (9.8)	-	-	-	-	-	-	-
2018	-	203 (2.6)	114 (1.5)	238 (3.0)	859 (10.9)	274 (3.5)	287 (3.7)	-	-	-	-	-
2019	-	-	-	201 (2.7)	1,076 (14.7)	320 (4.4)	106 (1.4)	-	-	-	-	-
2020	-	-	-	326 (4.6)	583 (8.2)	378 (5.3)	51 (0.7)	-	341 (4.8)	-	423 (5.9)	63 (0.9)
2021	-	-	-	174 (2.2)	553 (7.0)	528 (6.7)	143 (1.8)	95 (1.2)	997 (12.5)	110 (1.4)	402 (5.1)	-

과정별 분포의 경우 대체로 주간 과정이 약 88% 정도를 차지하는데, 주간 과정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다가 2018년의 91.3%를 정점으로 다시 낮아져 2021년에는 90.3%로 나타났다.

<표 12>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과정별

(‘21.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주간	야간
계	64,264 (100.0)	56,561 (88.0)	7,703 (12.0)
2013	4,670 (100.0)	3,876 (83.0)	794 (17.0)
2014	4,703 (100.0)	3,570 (75.9)	1,133 (24.1)
2015	7,792 (100.0)	6,565 (84.3)	1,227 (15.7)
2016	8,444 (100.0)	7,532 (89.2)	912 (10.8)
2017	8,406 (100.0)	7,591 (90.3)	815 (9.7)
2018	7,852 (100.0)	7,166 (91.3)	686 (8.7)
2019	7,338 (100.0)	6,642 (90.5)	696 (9.5)
2020	7,145 (100.0)	6,470 (90.6)	675 (9.4)
2021	7,914 (100.0)	7,149 (90.3)	765 (9.7)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해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50대였는데, 2020년에 최초로 60대 이상의 비중이 1위를 차지한 후, 2021년에도 34.5%로 2위와 격차를 더 벌이면서 1위를 유지하였고, 50대가 28.2%로 2위, 40대는 16.1%로 3위를 차지했다. 주목할 것은 20대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으로서 2021년에는 11.5%로 나타났다.

<표 13>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연령별

(‘21.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3	4,670 (100.0)	28 (0.6)	162 (3.5)	547 (11.7)	1,234 (26.4)	1,915 (41.0)	784 (16.8)
2014	4,703 (100.0)	14 (0.3)	193 (4.1)	529 (11.2)	1,229 (26.1)	1,735 (36.9)	1,003 (21.3)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5	7,792 (100.0)	45 (0.6)	404 (5.2)	823 (10.6)	1,784 (22.9)	2,907 (37.3)	1,829 (23.5)
2016	8,444 (100.0)	80 (1.0)	656 (7.8)	1,032 (12.2)	1,826 (21.6)	3,322 (39.3)	1,528 (18.1)
2017	8,406 (100.0)	172 (2.0)	889 (10.6)	1,041 (12.4)	1,812 (21.6)	3,139 (37.3)	1,353 (16.1)
2018	7,852 (100.0)	69 (0.9)	773 (9.8)	966 (12.3)	1,687 (21.5)	2,756 (35.1)	1,601 (20.4)
2019	7,338 (100.0)	79 (1.1)	734 (10.0)	773 (10.5)	1,323 (18.0)	2,385 (32.5)	2,044 (27.9)
2020	7,145 (100.0)	60 (0.8)	805 (11.3)	636 (8.9)	1,138 (15.9)	2,091 (29.3)	2,415 (33.8)
2021	7,914 (100.0)	45 (0.6)	907 (11.5)	724 (9.1)	1,279 (16.1)	2,231 (28.2)	2,728 (34.5)

성별 분포의 경우 해가 거듭되면서 남성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8년에 91.2%로 정점을 지난 후 낮아져 2021년에는 87.3%로 나타났다.

<표 14>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성별

(21.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남성	여성
2013	4,670 (100.0)	3,725 (79.8)	945 (20.2)
2014	4,703 (100.0)	4,026 (85.6)	677 (14.4)
2015	7,792 (100.0)	6,699 (86.0)	1,093 (14.0)
2016	8,444 (100.0)	7,358 (87.1)	1,086 (12.9)
2017	8,406 (100.0)	7,401 (88.0)	1,005 (12.0)
2018	7,852 (100.0)	7,163 (91.2)	689 (8.8)
2019	7,338 (100.0)	6,663 (90.8)	675 (9.2)
2020	7,145 (100.0)	6,387 (89.4)	758 (10.6)
2021	7,914 (100.0)	6,906 (87.3)	1,008 (12.7)

참여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해가 거듭되면서 경력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8년에 90.4%로 정점을 지난 후 낮아져 2021년에는 79.8%로 나타났다.

<표 15>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실적: 참여유형별

(21.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경력자	구직자
2013	4,670 (100.0)	2,799 (59.9)	1,871 (40.1)
2014	4,703 (100.0)	2,951 (62.7)	1,752 (37.3)
2015	7,792 (100.0)	5,619 (72.1)	2,173 (27.9)
2016	8,444 (100.0)	7,071 (83.7)	1,373 (16.3)
2017	8,406 (100.0)	7,322 (87.1)	1,084 (12.9)
2018	7,852 (100.0)	7,099 (90.4)	753 (9.6)
2019	7,338 (100.0)	6,236 (85.0)	1,102 (15.0)
2020	7,145 (100.0)	5,908 (82.7)	1,237 (17.3)
2021	7,914 (100.0)	6,316 (79.8)	1,598 (20.2)

• • •

무료취업지원

1 사업 개요

무료취업지원사업이란 건설현장 일자리가 필요한 근로자(구직자)와 건설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주(구인자)에게 무료로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취업지원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8월에는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전산망인 ‘건설일드림넷’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다른 취업정보 관련 사이트와 달리 건설일용근로자 중심의 건설현장 관련 일자리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2017년 2월에는 건설일드림넷의 ‘모바일 앱’을 오픈하였고, 두 차례(‘19.1., ’20.12.)에 걸쳐 건설일드림넷 기능 고도화를 진행하여 이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 밖에도,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지원 전담직원 역량 강화, 유관기관 협업, 무료노무상담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 주요 추진 사업

2021년도에는 전자카드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직자 DB관리 및 전자카드 적용사업장 알선을 추진하였고, 조달청 등과 정보연계를 통해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취업지원센터 전담직원 및 훈련기관 취업담당자, 공제회 담당 직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유관기관(국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조달청 등)과의 실시간 일자리 정보연계를 통한 공공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하여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였으며, TV광고·주요 건설신문 지면광고·온라인 이벤트 등 홍보 방법 다각화를 통해 내실 있는 취업지원사업 운영을 도모하였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노력

1) 건설일드림넷(홈페이지·모바일앱) 활성화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일드림넷’ 홈페이지(‘16.8)와 모바일앱(‘17.2)을 운영하고 있다. 건설일드림넷은 언제 어디서나 건설현장 일자리 및 인재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구인·구직 정보, 취업알선 기능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1년도에는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카드 시스템과 연계하여 GPS를 활용한 출근 체크기능을 개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직자의 전자카드 발급여부를 확인하여 전자카드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알선을 추진하였고, 취업실적 인정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GPS출근체크 기능을 개발하여 공적 취업실적 인정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건설일드림넷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매체·동영상·인쇄물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와 온라인 이벤트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신규 회원가입자 및 모바일앱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건설일드림넷 이용자의 고객만족도도 제고되어 양적·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2) 취업지원센터 역량 강화

보다 나은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직무역량교육과 직업상담 전문교육 등을 통해 취업지원센터 전담직원의 업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첫째,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해 취업지원센터의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를 도모하였다. 둘째, 공제회 지사·훈련기관·취업지원센터의 직원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 기관 간 원활한 취업지원 업무협조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셋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해 차질 없이 교육을 진행했고, 공간적 제약성을 극복하여 교육 대상자 확대 및 교과목·강사진 구성의 다양화 등을 통해 직무능력향상 기회를 제공하였다.

3)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취업지원 강화

건설근로자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했다.

첫째, 국토교통부, 조달청, 근로복지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체계를 마련·강화하여 취업지원사업을 활성화하였고, 산재노동자 또는 지역 내 일반 근로자 등의 건설업 신규 진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 건설업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둘째, 2017년부터 한국공인노무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21년도에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체 취업지원센터(17개소)에 노무사를 연계하였다. 또한, 건설일드림넷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을 새로이 시행함으로써 취업지원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만족도를 높였다.

셋째, ‘기능향상지원사업’ 운영기관과 연계하여 미숙련 근로자에게 기능향상 기회를 제공하였고, 훈련수료생에 대한 구직등록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병행함으로써 훈련·취업 연계서비스를 실시하였다.

4) 취업지원사업 홍보 다양화 추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돌파구로서 미디어 등 비대면 홍보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

첫째, 건설일드림넷의 신규 기능이 개발됨에 따라 신규 기능을 홍보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둘째, 공제회의 홍보채널과 유관기관의 홍보 협조를 통해 유튜브, 블로그, 지자체 소식지, 옥외광고(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셋째, TV 캠페인 광고, 지면 광고 및 인터넷 배너 광고 등 일반적인 대국민 매체를 통한 홍보와 건설현장·훈련기관·고용센터 등 타겟팅 홍보를 병행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였다.

3 추진현황

취업지원 전산망 정보 연계 강화, GPS 출근체크기능 개발, 유관기관(국토교통부, 근로복지공단, 지자체, 훈련기관, 공인노무사회 등)과의 협업, 취업지원센터 역량 강화, 홍보 다각화 추진 등을 통해 취업지원사업의 인프라를 확충한 결과, 취업알선 실적이 2020년도의 약 58만 일에서 2021년도에는 약 72만 일로 24.5% 증가하였다.

<표 16>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추진 실적

(21.12.31. 기준, 단위: 일, %)

구분	목표 근로일수(A)	추진실적(B)	달성을(B/A)
2015	16,980	39,464	232.4
2016	82,954	164,970	198.9
2017	154,700	268,767	173.7
2018	223,560	313,152	140.1
2019	303,280	385,013	126.9
2020	364,650	581,300	159.4
2021	574,770	715,827	124.5

제3장

•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1 사업 개요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건설현장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퇴직공제 신고누락 방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카드제가 도입되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추진경과

- (2014.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도입방안 시달(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3357)
- (2015. 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시범사업(6개소) 추진
- (2017.12) '19.11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지원대책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포함 발표
- (2020.1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2020.11.2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본격 시행

전자카드제는 2020년 11월 27일 현재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00억 원 이상, 민간 30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되었으며 2022년 7월에 2단계 확대를 거쳐 2024년에는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표 17> 공사예정금액별 전자카드제 적용 구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적용일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상	'20. 11. 27.
5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22. 7.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		'24. 1. 1.

2 주요 추진 사업

2021년 본격 시행된 전자카드제가 건설현장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의 “플랫폼”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임금직접지급제와 전자카드제 간 연계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직접 전자카드를 태그해 기록한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와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연계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사업장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다.

또한 고용보험 연계, 안전보건교육정보 연계 등 대외협력과 관련된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카드제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조달청 나라장터('21.08.23 이후 입찰공고 공사부터 적용)를 포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자체 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 발주기관의 입찰 공고문에 전자카드제 안내 문구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주가 입찰공고 확인 시점부터 전자카드제 적용공사 여부 및 의무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 적기에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카드제에 대한 적용 안내를 강화하였다.

셋째, '20년의 1개 업체 4종에서 '21년 말에는 4개 업체 20종으로 전자카드 단말기업체 및 종류를 다양화하여 사업장 단말기 선택권을 확보했고, 단말기 내용연수 및 설치된 단말기 잔존가치율을 마련하는 등 지정제도 개편을 통해 단말기 소요비용의 원활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넷째, 제도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전자카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발급기관 합동 전자카드 발급 캠페인, TV 캠페인 광고, 근로자 대상 LMS 발송, 주요 발주기관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3 추진현황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은 2021년 12월 말 현재 총 2,872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적용 사업장의 퇴직공제 신고인원 대비 전자카드 사용인원은 44.7%, 퇴직공제 신고일수 대비 전자카드 사용일수는 61.5%를 차지하고 있다.

<표 18> 전자카드제 적용·운영 사업장 현황

(21.12.31. 기준, 단위: 개소, 명, 일, %)

구분	공사수	전자카드 발급인원 비율			전자카드 사용일수 비율		
		퇴직공제 신고인원	전자카드 발급인원	카드발급 인원비율	퇴직공제 신고일수	전자카드 사용일수	카드사용 일수비율
계	2,872	417,546	186,676	44.7%	11,629,944	7,149,593	61.5%
의무	1,067	110,996	47,618	42.9%	2,650,438	1,482,351	55.9%
자율*	1,805	306,550	139,058	45.4%	8,979,506	5,667,242	63.1%

* 발주기관 및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적용 중인 공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의 누적 발급매수는 386천매이며, 2021년 한해의 전자카드 발급매수는 192천 매로 2020년 대비 169%(121천매) 증가하였다.

<표 19> 전자카드 발급 현황

(21.12.31. 기준, 단위: 매)

전체(누계)	'21년 전체 발급매수	20년	전년 동기 대비
	소계		
386,201	192,729	71,649	121,080 ↑

비적용 사업장(수기신고 사업장)에 비해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에서의 신고일수는 10.5일, 신고인 수는 1.3명이 증가하여 전자카드 사용효과가 확인되었는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신고일수는 13.2일, 신고인수는 0.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전자카드 사업장 신고 현황

(21.12.31. 기준, 단위: 개소, 명, 일, %)

구분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A)	수기신고 사업장(B)	(A) - (B)
월 평균 신고일수(일)	234.8	224.4	10.5
월 평균 신고인수(명)	27.3	26.0	1.3
내국인 월 평균 신고일수(일)	193.1	169.5	23.6
내국인 월 평균 신고인수(명)	21.2	19.4	1.8
외국인 월 평균 신고일수(일)	41.7	54.8	-13.2
외국인 월 평균 신고인수(명)	6.1	6.6	-0.5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슈페이퍼 202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효과분석」(2021.12월)

• •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1 사업 개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란 건설기능인력의 경력관리를 통해 현장경력과 기능수준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 체계를 마련해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전망을 제시하는 한편, 생산기반인 숙련인력의 풀을 확보해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제도이다.

현장경력(퇴직공제적립일수+고용보험신고이력)을 중심으로 자격, 교육·훈련, 포상 이력 등을 환산 경력연수로 산출하여 초급(3년 미만), 중급(3년 이상 9년 미만), 고급(9년 이상~21년 미만), 특급(21년 이상)의 4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근로자의 기능등급을 부여하고, 기능등급 구분·관리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경력관리시스템(건설기능플러스)을 통해 기능등급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2 주요 추진 사업

2021년도에는 기능등급제가 안정적으로 출범(2021.5.27.)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제도추진TF를 운영해 각종 기준 마련, 제도 도입기반 설계 연구용역, 하위법령 정비, 경력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적시에 추진함으로써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였고, 등급보유자에 대한 활용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경기도와 협업하여 기능등급제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밖에 등급제와 연계한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였다.

기능등급제의 안정적 출범

1) 건설 노·사·민·정이 참여한 ‘제도추진TF’ 운영(‘18.2~’21.5, 16회)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정부, 건설 노·사 단체 및 관련 유관기관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제도추진TF”를 구성하여 제도 출범에 필요한 단위 과제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기능등급제 출범 이후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기능등급제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인 “기능등급 운영위원회”를 구성(12개 기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제도 도입기반 설계 연구용역 추진

기능등급제에서는 현장경력을 중심으로 자격, 교육훈련, 포상 이력 등을 종합하여 환산경력연수로 산출하여 초급(3년 미만), 중급(3년 이상 9년 미만), 고급(9년 이상~21년 미만), 특급(21년 이상)의 4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기능등급을 부여한다.

해당 등급을 구성하는 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의 요소별 환산연수 기준 및 등급별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다. 도출된 등급의 현장 수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38개 현장, 5천 명)을 실시한 결과 기능수준 77.6%, 경력연수 73.2%, 임금수준 50% 등의 적정성을 보여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기능등급이 적정함을 확인했다.

3) 하위법령 정비(대통령령 개정, 국토교통부령·고시 제정)

제도추진TF 운영 및 제도 도입기반 설계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협의, 개정령안 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일련의 개정절차를 추진하여 개정법률이 시행(‘21.5.27.)되도록 했다.

4) 기능등급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경력정보 DB연계

2020년에는 기반시스템(정보연계, 등급산정체계)을 개발하고, 2021년에는 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시스템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기능등급 구분·관리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경력관리시스템(건설기능플러스)의 구축을 완료하였다.

해당 경력관리시스템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신고내역,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신고내역,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 보유내역과 포상이력, 한국고용정보원의 교육훈련내역, 유관단체의 기능대회 입상 이력 및 인정기능사 보유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연계하고 있다.

기능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1) 등급제 출범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 및 대국민 홍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출범에 따라 제도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기차 역사 174개, 지하철 역사 114개, 대형 건설현장 1,997개소, 안전보건공단 전광판 40개소 등을 통해 옥외광고를 진행하였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1호 발급자에 대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알려 근로자와 국민의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2) 경기도 기능등급제 적용 시범사업 추진

기능등급제 활용방안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업하여 기능등급제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총 10개소 현장(건축5, 토목5)을 대상으로 시공경험이 많은 고숙련 기능등급보유자의 하도급공사 현장대리인 배치와 공사규모별 필수보유인력 배치를 통하여 시공품질과 생산성 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기능등급제와 연계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연구용역 추진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원활하게 정착되려면 현장에서 각 등급에 요구되는 역량을 배울 수 있는 교육훈련과정이 필요하나, 아직 등급별 요구역량과 연계되는 교육훈련 체계가 없다. 따라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 및 역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종별·등급별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2021년 11월부터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훈련 체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3 | 추진현황

제도추진TF 운영, 등급기준 설계 완료와 관계법령 정비,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적시에 추진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출범시키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 '21년 한 해 동안 총 49개의 시행직종 중 45개의 직종에서 2,308건의 기능등급증명서가 발급되었다.

<표 21> 2021년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통계

(21.12.31. 기준, 단위: 건)

등급 접수방법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총 합계
방문	10	61	153	120	344
온라인	129	421	798	616	1,964
총 합계	139	482	951	736	2,308

• • •

관련 사업

1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공제회는 매년 1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요소 중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산정·발표한다. 2021년에는 종합건설업체 9,308개사에 대한 '2021년도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산정 발표했다(퇴직공제 EDI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종합심사낙찰제란 건설공사 입찰 시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발생하는 저임금, 산재, 공정거래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2016년에 도입됐다.

건설고용지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임금체별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기준)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 기업 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매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체의 기성실적 및 고용보험 신고 피보험자수, 임금체불 횟수 등 지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취합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여 업체별 점수를 산정하고 있다.

우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고용탄력성'(=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기성총액 증감률)을 구한 다음 6등급으로 나누고, 최근 3년간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여 최종 지수를 산정하게 된다. 지수의 등급이 높을수록 고용이 많이 증가하고 임금체불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지수의 등급이 낮을수록 고용은 감소하고 임금체불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도 건설고용지수 산정결과, 9,308개사 중 상위 926개사(9.9%)는 1등급을 받은 반면, 하위 935개사(10.0%)는 6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최근 3개년 건설인력 고용지수 등급별 업체분포 현황

(단위: 개사)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2018년도	8,347	825	1,257	2,073	2,083	1,256	853
2019년도	8,648	856	1,291	2,156	2,162	1,306	877
2020년도	9,026	898	1,343	2,247	2,263	1,366	909
2021년도	9,308	926	1,393	2,318	2,339	1,397	935

건설고용지수 산정대상 업체 수는 2020년도의 9,026개사에서 2021년도에는 9,308개사로 282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임금체불 명단공개로 인하여 감점을 받은 업체 수는 45개사로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했다.

<표 23> 최근 3개년 건설인력 고용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감점 업체 현황

(단위: 개사, %)

구분	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감점업체	256	128	65	63	45
증감률	-	24.3	△49.2	△3.1	△28.6

건설고용지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종합건설업체는 공제회 퇴직공제 EDI시스템(<http://wedi.cw.or.kr> → 로그인 → 건설인력 고용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 발주기관은 공제회로부터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제3부

고객복지사업

제1장 | 사업 개요

제2장 | 주요 추진 사업 및 추진현황



• • •

사업 개요

고객복지사업이란 건설근로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6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생활안정 및 금융지원이다.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수입이 불안정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본인 앞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의 일부를 대부받아 전·월세 보증금, 자녀 결혼자금, 입원·수술비 마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다. 1차 사업('09.3.2~'12.6.30), 2차 사업('12.11.1~'13.4.30) 그리고 3차 사업('16.10~'20년 현재)으로 구분되며, 건설근로자 본인 앞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 원금의 최대 50%까지 신청할 수 있고, 무이자로 지원된다. 대부기간은 대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상환방법은 일시·분할·조기상환 등이 가능하다.

둘째, 건강관리 지원이다.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단체보험 가입과 종합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직업특성 상 개인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험 상품을 구성하여 근로자의 부담 없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이며, 종합건강검진은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하지만 시간적·경제적 사정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한 건설근로자에게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서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셋째, 자녀교육 지원이다.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과 ‘고교생 인터넷 수강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에게 학습보조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고교생 인터넷 수강 지원’은 내신 및 수능을 대비하는 고교생에게 온라인 강의 무료 수강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넷째, 가족친화 지원이다. ‘결혼·출산 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건설근로자를 축하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하고자 하며,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힐링캠프’와 ‘휴가지원’ 사업으로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여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상담서비스 지원이다. 건설근로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종합지원 이동상담 버스 2대를 활용하여 주중 새벽인력시장과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퇴직공제 적립내역 및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월스톱 고용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종합상담서비스를 마련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충과 애환을 해결하고 있다.

여섯째, 건설근로자 이미지 개선이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직업 이미지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11월 22일’을 「건설기능인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기능인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또한 일반인과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한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 후, 수상작을 모아 찾아가는 ‘사진·영상 전시회’를 운영한다.

• • •

주요 추진 사업 및 추진현황

2021년도의 고객복지사업은 중장기 복지사업의 추진방향을 담은 복지로드맵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신규복지의 공급과 기존 사업의 확대·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적극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와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환류활동을 진행하였다.

1 생활안정 및 금융지원

가.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대부사업은 1차('09.3.2~'12.6.30)와 2차('12.11.1~'13.4.30) 그리고 3차 사업('16.10~'21년)으로 구분된다. 3차 대부사업은 동절기 일자리 감소와 임시·일용 고용형태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다시 시작되었다. 기존 대부사업의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통해 '신청사유'를 선정하여 목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신청 사유에는 ① 자녀 결혼자금 지원, ②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③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입원·수술비 지원, ④ 본인 명의 주택구입 및 주거 목적의 전·월세 보증금, ⑤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⑥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계한 생활안정대부의 사유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47,801건에 대해 76,442백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대부신청 사유는 주택구입·전월세, 입원·수술, 대학생 자녀 학자금 순이었다.

2021년 현재까지 시행중인 3차 생활안정 대부사업은 종전 대부사업의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 이를 상환해야지만 추가 대부가 가능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종전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건설근로자의 경우 대부 한도가 늘어나도 추가 대부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

해 2021년 10월에는 대부금 대환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에도 늘어난 대부한도만큼 상환 없이 추가 대부가 가능해졌다.

<표 24> 생활안정대부 지급현황

(‘21.12.31. 기준, 단위: 건, 백만 원, 천 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 수	47,801	11,217	11,554	10,099	6,968	7,963
지 급 액	76,442	16,861	19,153	16,825	12,001	11,602
평균지급액	1,599	1,503	1,658	1,666	1,722	1,457

나. 건설근로자 맞춤형 금융상품

건설근로자는 대출을 받고 싶어도 고정적으로 소속된 회사가 없어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고금리의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기존 제2금융권의 고금리대출을 중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상품(전북은행 체인지업론, 2016년)과 별도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서가 없어도 퇴직공제 적립내역 확인만으로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상품(하나은행 새희망홀씨, 2017년)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제1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해 건설근로자를 위한 ‘최초’의 전세자금대출 상품(하나은행 전세 대출상품)을 마련하여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제공하여 목돈이 필요한 건설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2021년 말 현재 대환대출상품과 신용대출상품은 각각 571건(62억 원)과 1,010건(60억 원)이 발생하였고, 전세자금대출상품은 18명(29억 원)에게 제공되었다.

2 건강관리 지원

가.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직업특성 상 위험도가 높아 개인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해 그 특성에 맞는 보험 상품을 구성하여 현장근로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불의의 사고 등에 대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해 왔다. 가입 신청 등을 통해 피보험자를 선발하여 단체보험에 가입시키고 골절, 상해,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보장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1년에 3,000명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11년간 피보험자 59,231명을 가입시켰고 5,231건에 대해 약 5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2018년에는 가입방식을 변경하여 전년대비 수혜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2017년의 상해통월의로비, 2018년의 다중골절진단과 깁스치료비, 2020년에는 화상진단과 일생생활 배상을 추가하는 등 해마다 보장항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25>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추진 현황

('21.12.31.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총계	2011~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피보험자	59,231	26,000	6,000	5,013	6,471	7,553	8,194
보험료	7,526	3,155	730	660	770	1,049	1,162
보험기간	-	매년 3.1부터 1년간	'17.3.31 ~'18.3.30		분기별 가입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험금 지급실적	5,231건 (5,313백만 원)	1,399건 (2,332백만 원)	447건 (346백만 원)	815건 (773백만 원)	1,030건 (843백만 원)	1,147건 (793백만 원)	393건 (226백만 원)

나.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하지만 시간적·경제적 사정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한 건설근로자에게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다. 2017년 전국 16개 검진기관에서 2021년 59개 검진기관으로 확대 운영하여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였고, x선 촬영, 혈액검사, 위장 검사 등 기본검사와 MRI, 저선량 CT, 특수초음파검사, 위내시경 등 선택검진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현재까지 총 5,746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표 26>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추진 현황

('21.12.31. 기준, 단위: 명, 천 원, 백만 원)

구분	총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피보험자	5,746	958	944	1,140	1,309	1,395
1인당 지원금	-	153	173	234	250	250
총 지원금	1,253	146	164	267	327	349

3 | 자녀교육 지원

가.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건설근로자의 자녀에게 학습보조비 성격의 장학금을 지급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복지서비스다.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 후 가계소득, 자녀의 성적, 근로자의 적립일수 등을 토대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1인당 금액은 2014년과 2015년에는 2백만 원이었는데, 2016년부터 1인당 금액을 1백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지급인원을 늘렸다. 2020년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에 장학금을 기탁하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외부 단체의 기탁금 모집을 통해 수혜인원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지급인원은 총 3,440명이었고 지급금액은 총 34억 6천만 원이었다.

<표 27>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추진 현황

(21.12.31.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총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급인원	3,440	30	60	160	220	315	615	1,020	1,020
1인당 금액	-	2	2	1	1	1	1	1	1
총 지급금액	3,460	60	120	160	220	300	600	1,000	1,000

주 : 1.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고등학생 자녀 1,304명을 대상으로 872백만 원을 지급하였음

2. ’18년 15명, ’19년 15명, ’20년 20명, ’21년 20명은 외부단체의 장학지원으로 공제회 예산에는 미포함

나.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협성장학금’ 추천

동 장학금은 (재)협성문화재단의 재원으로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된다. 소득수준과 성적 등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선발된 대학생에게 (재)협성문화재단에서 등록금 전액 및 학기당 학습보조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어 2021년까지 11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총 478명에게 약 26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21년에는 48명에게 3억 여 원이 지급되었다.

<표 28> 건설근로자 협성장학금 추진 현황

(21.12.31.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총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급인원	478	48	62	56	32	29	39	36	33	46	49	48
1인당 금액	-	등록금 전액					등록금 + 학습보조금(학기당 50만 원)					
총 지급금액	2,659	307	206	223	177	170	232	230	206	267	318	323

다. 건설근로자 ‘고교생자녀 인터넷 수강’ 지원

건설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업체를 통해 고등학생 자녀에게 온라인 무료 수강권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수강과목을 전과목과 단일과목으로 다양화하여 300명에게 제공하였다.

<표 29> 고등학생 자녀 무료 인터넷 수강 지원 추진 현황

(21.12.31.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강인원	900	37	65	100	100	100	100	98	300

주 : 수강인원은 매월 수강 중복인원을 포함하여 산정

4 가족친화 지원

가.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축하하고, 유산을 위로하는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혼, 출산, 유산한 피공제자 중 사유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에 100일 이상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다. 결혼지원금은 50만 원이고, 출산지원금은 첫째 30만 원, 둘째 40만 원, 셋째 50만 원, 넷째 60만 원, 다섯째 이상 70만 원으로 출생순위별 차등 지급되며, 유산위로금은 30만 원이 지원된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결혼지원금 4,408명과 출산지원금 6,945명 등 총 11,385명에게 약 40.9억 원이 지원되었고, 2021년에는 여성근로자 대상 유산위로금이 신설되어 총 32명에게 960만 원이 지원되었다.

<표 30> 결혼·출산 지원금 지원 추진 현황

(21.12.31.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예산	종류							
		계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		유산위로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4,520	11,385	4,099.6	4,408	1,877	6,945	2,222.6	32	9.6
2010	300	28	8.4	8	2.4	20	6.0	-	-
2011	30	42	12.6	13	3.9	29	8.7	-	-
2012	18	34	10.2	9	2.7	25	7.5	-	-
2013	255	850	255.0	232	69.6	618	185.4	-	-
2014	127	414	124.2	174	52.2	240	72.0	-	-
2015	180	616	180.0	278	83.4	338	96.6	-	-
2016	180	624	179.9	278	83.4	346	96.5	-	-
2017	210	887	196.5	359	107.7	528	88.8	-	-
2018	456	1,354	436.0	568	227.2	786	208.8	-	-
2019	772	1,883	786.8	763	381.5	1,120	405.3	-	-
2020	935	2,265	934.8	871	435.5	1,394	499.3	-	-
2021	1,057	2,388	975.2	855	427.5	1,501	547.7	32	9.6

나. 건설근로자 ‘가족 힐링캠프’ 운영

건설현장의 특성 상 상대적으로 가족여행 기회가 적은 건설근로자에게 가족 1인을 동반한 2박 3일의 여행기회를 제공했다. 여행 중 공제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소개하기도 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수렴하기도 했으며, 참여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동 사업이 시작됐던 초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퇴직공제 적립 근로자 중 8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받거나 노동단체 추천 근로자의 경우 건설노조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근래에는 공모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사연이 담긴 참가신청을 받아 참가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쉽게도 추진하지 못했지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총 898명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했다.

<표 31> 가족 힐링캠프 추진 현황

(‘21.12.31. 기준, 단위: 명, 천 원)

구분	총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참가인원	898	104	54	109	74	38	76	86	80	90	187
인당 소요액	610	482	422	544	528	480	536	647	835	898	939
행사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1차) 상해(2차)		일본 규슈	일본 오사카	대만 타이 페이

주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2021년 추진실적 없음

다.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복지사업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가족 힐링캠프’ 사업(해외·단체 여행)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에서, 여행·여가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써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도입하였다. ‘휴가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공제회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건설근로자의 여행·여가에 대한 니즈(Needs)를 충족하고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휴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받아 원하는 일정의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2021년에는 건설근로자 및 동반 가족 총 1,047명에게 혜택을 제공하였다.

<표 32>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추진 현황

(‘21.12.31. 기준, 단위: 명, 천 원)

구분	총계	2020	2021
이용인원	2,004	957	1,047
소요예산	587,100	287,100	300,000

라.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신규 추진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을 덜어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소속감 부여 및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을 유도하고자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사업을 신

설하였다.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입학 자녀을 둔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건설근로자 1,000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하여 가방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총 2억 원을 제공하였다.

<표 33>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추진 현황

(‘21.12.31. 기준, 단위: 명, 천 원)

구분	이용인원	지원금액
2021	1,000	200,000

5 상담서비스 지원

가. 종합지원 이동상담버스 운영

종합지원 이동상담 버스 2대를 활용하여 주중 매일 새벽인력시장과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퇴직공제 적립내역 및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2021년에는 새벽인력시장 93개소와 건설현장 316개소에서 총 6,508명의 근로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기존의 단순 적립내역 안내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는 퇴직공제 근로내역 축소신고를 받는 심층상담으로 개편하여 2021년까지 272 건의 축소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1년의 이용인원이 2020년에 비해 줄어 아쉬움이 있다.

<표 34> 종합지원 이동상담버스 운영 현황

(‘21.12.31. 기준, 단위: 명, 개소)

구분	계	2011~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이용인원	145,556	21,958	19,782	19,885	19,327	20,412	15,452	14,348	7,884	6,508
퇴직공제 축소신고 접수 건수	272	-	-	-	-	-	123	66	42	41
방문 현장	새벽시장	2,946	628	471	462	466	250	242	196	138
	건설현장	3,368	520	380	379	380	404	349	368	272
										316

나. 상담환경 개선 및 다양한 홍보활동

상담의 깊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담환경을 개선하였다. 전국 지사·센터에 상담전용 노트북 및 전화기를 설치하였고,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상담전용 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내 전광판 및 공공시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여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5,792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35> 노무·건강 등 건설근로자 상담서비스 실시 현황

(21.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노무	건강(심리)	재무	외국인	취업
누계 ('14~'21)	5,792 (100.0)	3,137 (54.2)	1,609 (27.8)	156 (2.7)	806 (13.9)	84 (1.5)

6 건설근로자 이미지 개선

가.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개최

건설기능인은 주택, 공장, 사무실, 병원, 도로, 댐 등 사회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건축 및 기반 시설을 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고용 불안과 임금 체불 그리고 잦은 산재 등으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많았고 사기도 낮았다. 그 결과 생산물의 품질과 안전은 악화되었고, 젊은 층의 건설업 기피현상으로 고령화가 심해졌다.

따라서 건설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킬 계기가 필요했는데, 건설기능인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기능인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0년에 ‘건설기능인의 날’을 제정했다. ‘11월 22일’을 건설기능인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유공자를 표창함으로써 건설기능인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자 했다. ‘11월 22일’의 ‘11’은 건설근로자가 ‘서서 일하는 모습’을, 그리고 ‘22’는 ‘앉아서 일하는 모습’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나. 정부포상 수여

기념식의 하이라이트인 정부포상 수여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기능인, 퇴직공제업무 담당자, 직업훈련교사 등의 개인분야와 퇴직공제 이행우수 사업주 등 단체분야로 나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개인 및 단체에게 훈장, 포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2010년 제1회 기념식에서는

25점의 표창이 수여됐으나, 2011년부터는 훈장 및 포장이 추가됐고, 2021년에는 39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표 36>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여 현황

(21.12.31. 기준, 단위: 명)

구분	소계	정부포상					장관포상	
		산업 훈장	산업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총계	419	92	11	11	35	35	144	183
2010	25	6	-	-	3	3	9	10
2011	34	8	1	1	3	3	9	17
2012	36	8	1	1	3	3	12	16
2013	35	8	1	1	3	3	12	15
2014	35	8	1	1	3	3	12	15
2015	35	8	1	1	3	3	12	15
2016	36	8	1	1	3	3	12	16
2017	35	8	1	1	3	3	12	15
2018	34	6	1	1	2	2	12	16
2019	35	8	1	1	3	3	12	15
2020	40	8	1	1	3	3	15	17
2021	39	8	1	1	3	3	15	16

다. 사진·영상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일반인과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한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 후, 수상작을 모아 찾아가는 ‘사진·영상 전시회’를 개최했다. 2010년에서 2018년까지는 사진공모전을 개최하다가 2019년부터 영상 분야를 추가하여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사진·영상 공모전이 개최된 것은 2019년부터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작품은 총 3,753건인데 그중에서 210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2021년에는 16점의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전시회 대신 온라인 전시회를 열었다.

<표 37> 사진·영상 공모전 추진 현황

(21.12.31. 기준, 단위: 건)

구분	총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	3,753	264	183	341	207	240	143	468	335	290	307	571	404
수상작	210	19	20	17	17	20	19	18	19	16	14	15	16

<표 38> 2021년 온라인 사진·영상 전시회 실시 현황

구분	
일정	2021.10.12. ~ 2022.10.11.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작 VR 전시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제회 홈페이지 및 하나로서서비스,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하여 온라인 전시회 실시 - 서울고용청,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안전보건공단 외부 전광판 등 유관기관을 통한 송출 - 온라인 전시회에 방문하여 수상작 관람 후 감상평 댓글 이벤트 진행(참여자 157명)
행사전경	

라. 수기공모전 개최

건설근로자의 현장 경험과 가족 간의 사랑, 공제회 추진사업의 체험 등 ‘건설근로자 일상을 담은 수기’를 제작하여 건설근로자의 삶을 이해하고 직업이미지를 개선하고자 건설근로자 수기공모전을 개최했다. 공제회는 2012년 건설근로자의 ‘삶의 애환’을 주제로 시작하여 2~3년 주기로 각종 수기집을 발간하여 기관 홍보자료로 활용하였다. 2021년에 총 접수된 작품은 317점인데, 그 중에서 10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당선작은 사외보 ‘늘품’에 게재하고 온라인 ‘e-Book’ 형태의 수기집으로도 발간하였다.

역대 수기집 발간 현황

- (2012. 11월) 건설근로자의 「삶의 애환」
- (2015. 5월)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금
- (2017. 2월) 건설근로자 복지사업 체험 수기
- (2017. 11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고용, 복지사업」수혜자 생활수기 공모전
- (2019. 12월)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체험 수기

<표 39> 2021년 건설근로자 수기공모전 실시 현황

구분	
일정(발간)	2021.12.~
공모전 홍보 및 E-book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건설근로자 수기 공모전 -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모주제 : 현장 에피소드, 가족간 사랑, 공제회 사업 체험·혜택 (등)</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청자격 :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된 건설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 * 퇴직공제 적립내역 1일 이상 또는 퇴직자 * 공제회에 등록된 건설근로자는 하나로서비스 로그인 가능</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출품 작품 : 건설근로자 1인당 총 1점 (가족 포함)</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청기간 : '21.10.12.(화) 9시 ~ '21.10.29.(금) 18시</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상내역 : 대상(1인 - 상금 200만), 최우수상(2인 - 상금 100만), 우수상(3인 - 상금 50만), 장려상(5인 - 상금 30만원) * 수상자 외에도 참가자 100명에게 모바일 기프티콘(1만원) 증정</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당선자 발표 : 2021년 11월 말 (예정)</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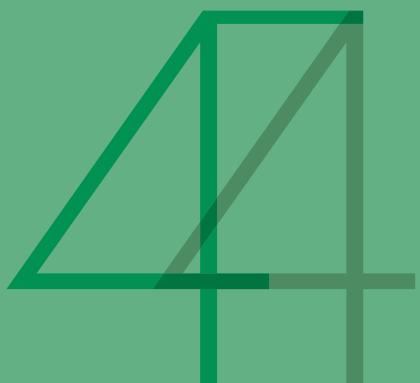
제4부

자산운용사업

제1장 | 사업 개요

제2장 | 주요 추진 사업

제3장 | 추진현황



제1장

• • •

사업 개요

자산운용사업이란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공제부금의 효율적인 자산 운용과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공제부금을 증식하는 사업이다.

채권 위주로 자산을 구성해 안정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산운용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로 자산운용체계를 구축해 공제부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다.

자산운용은 크게 4가지 원칙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첫째는 ‘안정성’으로 자산의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손실위험을 최소화해야 하고, 둘째는 ‘유동성’으로 퇴직공제금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는 ‘공공성’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공제부금의 설치목적과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하고, 넷째, ‘수익성’으로서 공공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도모하며 공제부금의 확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다.

• • •

주요 추진 사업

2021년도에 추진한 자산운용사업의 주안점은 공제부금 자산 증식을 통해 퇴직공제금의 실질가치를 제고하는 것이었다. 세부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산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 변화된 투자환경을 반영한 중장기(5개년)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구축 및 전술적 자산배분 활성화, 국내외 증시 및 금리 변동에 대응한 주식·채권의 탄력적 시장대응과 안정적 포트폴리오 구축,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였다. 둘째, 자산운용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개선하였다. 기 수립한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수립하고, 분기별 신용위험량 측정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2년도 공제부금 신용리스크 한도 설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신규 도입하였다.

1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운영

공제회는 자산운용의 전문성·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규정 및 자산운용지침(IPS)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수의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하고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인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 설정, 연간 부금운용계획(전략적 자산배분안 포함)의 수립 및 변경, 자산운용지침(IPS)의 제·개정,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이다.

자산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는 있으나, 위원회 간의 독립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위원회와 겸임할 수는 없다.

나.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는 개별 투자 건을 심의하고 투자상품을 선정하는 등 투자 의사결정 전반을 담당한다. 심의·의결 사항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자산 관련 상품에 대한 결정 및 변경, 국내외 SOC 및 부동산 등 실물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국내외 M&A 관련 사모펀드 및 기타 대체투자에 대한 결정 및 변경 등이며, 공제회 투자의 대부분은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임하며,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외부 위원의 경우 전문가 집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참석대상 위원을 지명하고 있다. 재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투자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활용할 수 있다.

다.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자산운용의 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주요 심의사항은 위험관리정책 및 전략, 위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지침 및 성과평가지침의 제·개정, 자산운용 성과평가정책 및 기준, 자산운용 성과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리스크관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사장은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재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2 | 효율적인 자산운용

가. 코로나19 투자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5개년)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구축 및 전술적 자산배분 활성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손익 변동성의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중장

기적 관점의 운용전략에 기반을 둔 효율적 자산배분과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적정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투자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5개년)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전술적 자산배분 기능을 활성화 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전(2019년)에 수립한 중장기 자산배분계획에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투자환경을 반영하여, 2026년까지의 중장기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또한, 연간 부금운용계획·세부운용전략(각 1회)과 분기·월별 운용계획을 마련(분기 4회 / 월별 12회)하였고,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2021년도 하반기 운용수익률 제고 방안”(2021.7월)을 수립하였다. 또한 신규 투자트렌드 발굴 노력의 일환으로 ESG 등 신규 투자 트렌드 리서치, 자산운용본부 워크숍 개최(2회), 금융시장 관련 외부 전문가 세미나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산운용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려(‘20년 3회 → ’21년 5회) 외부위원의 제언사항을 적극 수렴하였다. 이 외에, 매월 부금운용현황을 점검(12회)했고, 격주 단위의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통해 자산운용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표 40> 2021년도 부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자산배분 및 허용범위

자산군	'20년 계획 비중	'21년 계획 비중	'21년 실제 비중	허용범위
국내주식	4.3%	3.4%	3.4%	±6.0%p
해외주식	5.2%	4.8%	4.2%	
국내채권	55.9%	52.4%	56.1%	±10.0%p
해외채권	4.0%	6.8%	3.7%	
대체투자	26.7%	29.6%	24.3%	±6.0%p
단기자산	3.9%	3.0%	8.3%	±6.0%p

<표 41>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전술적 자산배분 강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비	▶ 2021년도 하반기 운용수익률 제고 방안 보고	
주기적 운용계획 수립	분기	▶ 매분기 부금운용계획 ⇨ 연간 부금운용계획 구체화 및 시장대응
	매월	▶ 월별 부금운용계획 ⇨ 분기 운용계획 구체화 및 시장대응
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운용현황 점검	분기	▶ 분기별 부금운용현황 ⇨ 연간 운용계획 대비 자산배분 및 성과 점검
	매월	▶ 월별 부금운용현황 ⇨ 분기 운용계획 대비 자산배분 및 성과 점검
	매주	▶ 주간 금융시장 동향 및 수익률 점검 ⇨ 월별 운용계획 점검 및 시장대응

한편, 신규 투자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내부 운용역 간 브레인스토밍을 갖고 시장조사도 실시했고, 금융시장 전망 세미나 등을 통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반기별 자산운용 본부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산군별 운용방안 등의 토의 과정을 거쳐, 2022년도 연간 부금운용계획 및 자산별 세부운용전략을 수립하였다.

나. 주식·채권·대체투자 자산별 포트폴리오 다변화

2021년도 금융시장은 코로나19 변이 확산과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하였고, 미 연준의 긴축적 입장에 힘입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채권의 탄력적 시장 대응 및 유형별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고, 대체투자는 신규 대체상품 발굴 및 투자 집행을 통해 사모투자, 해외 인프라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였다.

첫째, 주식의 경우 국내와 해외증시 간 차별적 상승에 대응하여 국내주식은 상반기 증시 상승 구간에서 운용펀드 차익실현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주력하면서, 액티브운용 및 ESG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였고, 해외주식은 하반기 단계적 차익 실현과 동시에 지역별 리밸런싱을 실시하고 글로벌 ESG 및 미국주식 EMP 투자로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다.

둘째, 채권의 경우 국내채권은 경제 개선 및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금리 급등에 대응하여 시가 채권형 펀드 비중을 축소하고 만기보유채권 등 장부가 자산 투자 확대로 운용수익 안정화에 주력하면서, 구조화 공사채 및 높은 신용등급의 우량채권 발굴 및 투자를 통해 고이원 이자수익 기반을 마련하였고, 해외채권은 배분계획 대비 축소 운용하는 등 탄력적 포트폴리오 운용을 강화하였다.

셋째, 대체투자의 경우 해외 전기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ESG 투자 등을 통한 신규 대체투자 비중 확대 및 대체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였다. 2021년의 신규 투자 상품은 7건이고, 총 1,930억 원의 투자를 약정하였다. 대체투자 규모는 2020년 10,385억 원에서 2021년 10,449억 원으로 64억 원 증가하였다. 2020~2021년 중 대체자산 내 기업·인프라 비중은 46.0%에서 54.9%로 확대되었으며, 부동산 비중은 54.0%에서 45.1%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진행되었다.

다.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성·수익성 제고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 점검·보고 등 사후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해 투자상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2021년에는 대체투자 위탁운용 상품에 대한 정기 평가와 대출자산에 대한 자산건전성 점검을 실시하여 투자 상품 상시 모니터링과 집중관리 체계 운영으로 보유상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전기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ESG 투자를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투자자

산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상품에 대하여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배당금 수취를 바탕으로 수익률 10.61%, 목표 대비 6.1%p 상회하는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3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가.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방안 개선을 통한 시장모니터링 체계 강화

작년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증가로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방안」에 의한 대응 체계에 따라 위기관리T/F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 환류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에 반영하여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방안 개선안」을 수립하였다.

기 수립한 대응방안에서 개선사항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다. 첫 번째는 금융시장 위기상황을 판단하는 「위기상황 판단지표」를 재구성했다. 국내지표 및 시장리스크 위주의 개별지표에서 MSCI ACWI 지수, 미국채 10년물 금리 등 해외 주식·채권 관련 해외지표를 포함시키고, 금리 스프레드 지표 보완을 통해 신용리스크 관련 지표도 포함시켰다. 또한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VKOSPI 및 VIX를 지표 구성에 포함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조기인식 가능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두 번째는 위기인식지수(종합점수) 방식으로 개선했다. 구성된 개별지표에 대한 점수부여 기준, 기준점수, 구간별 점수, 최대점수를 부여하여 위기인식지수(종합점수) 모니터링 방식으로 개선하여 현 금융시장의 위기상황 심화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통한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방안 개선안」의 수립은 안정적인 공제부금 자산운용을 위한 상시적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에 기여하였다.

나. 신용리스크 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리스크관리 체계 개선

시가주식 및 시가채권의 일부 자산군에 대한 시장리스크 관리 중심에서 나아가 단기자산, 채권(장부가자산 포함) 및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분기별로 신용리스크 산출 기준안에 따라 단기, 채권 및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신용위험량을 산출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1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22년도 신용리스크 한도(10.61%) 설정 및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았다.

채권 및 대체투자의 점진적인 투자규모 증가로 신용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기존 시장리스크 중심 관리체계에서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자산운용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다. 투자상품 사전/사후 관리강화

투자상품에 대한 사전리스크 검토 시 세미나를 개최하여 업황·전망에 대한 분석과 각종 실사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고, 직원 역량강화 등을 통해 사전 심사기능을 제고하였으며,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매월 투자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잠재적 위험요인이 많은 자산 등의 경우 현황파악을 위해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의 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관리팀에서 투자심의위원회 전문가집단(Pool) 관리 및 위원 선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선임 업무를 수행하면서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변호사, 회계사, 감평사 및 연기금·공제회 투자담당자 등 분야별 전문가 추가위촉을 통해 투자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라.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대체투자상품 공정가치 평가

연초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2020년도 공제부금 운용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공제부금 운용 성과평가는 리스크관리위원회 환류체계를 거쳐 운용 및 투자전략 부서와 공유하여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자상품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분기단위로 공제부금 운용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공제회 정관 제42조(부금의 조성 및 관리)에 의거하여 자산운용성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성과분석을 통해 공제부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간 성과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연간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대체투자자산의 경우 장기투자자산이면서 상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적절한 가치의 측정 및 부실화 가능성의 조기 인식 등이 어렵다. 이에 공제회는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 결산 시 반영하고 있다. 또한 보유 중인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화 가능성을 조기에 인식하는 등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 •

추진현황

1 자산운용 현황

2021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부금 운용 수익률은 4.02%로 목표수익률 2.00% 대비 2.02%p를 상회하며, 수익금 1,657억 원 및 달성을 201%를 시현하였다.

2021년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주식 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였고, 안정적 수익 기반 자산의 비중 확대를 통해 손익 변동성 축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21년은 주식 내 해외비중 확대와 대체투자의 지속적인 비중 확대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다. 자산별 수익률은 현금성 1.00%, 주식 13.19%, 채권 0.42%, 대체투자 10.61%를 기록하였다.

투자 자산별 성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주식의 경우 코로나19 변이 확산에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하여, 국내 8.97%, 해외 15.69% 수익률을 기록하며 목표수익률(국내 4.71%, 해외 4.68%)을 초과달성 하였다.

채권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대응하여, 채권 보유이원 증대 및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국내 채권 0.55%, 해외채권 △1.35%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그 외 단기현금성 자산의 경우 수시물 운용기간 조정과 우수상품 발굴을 통해 1.00% 수익률을 기록해, 목표수익률(0.5%)을 초과달성 하였다.

대체투자는 신규 상품의 발굴 투자 및 기존 자산에 대한 매각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10.61%의 수익률을 기록해, 목표수익률(4.5%)을 초과달성 하였다.

<표 42> 공제부금 자산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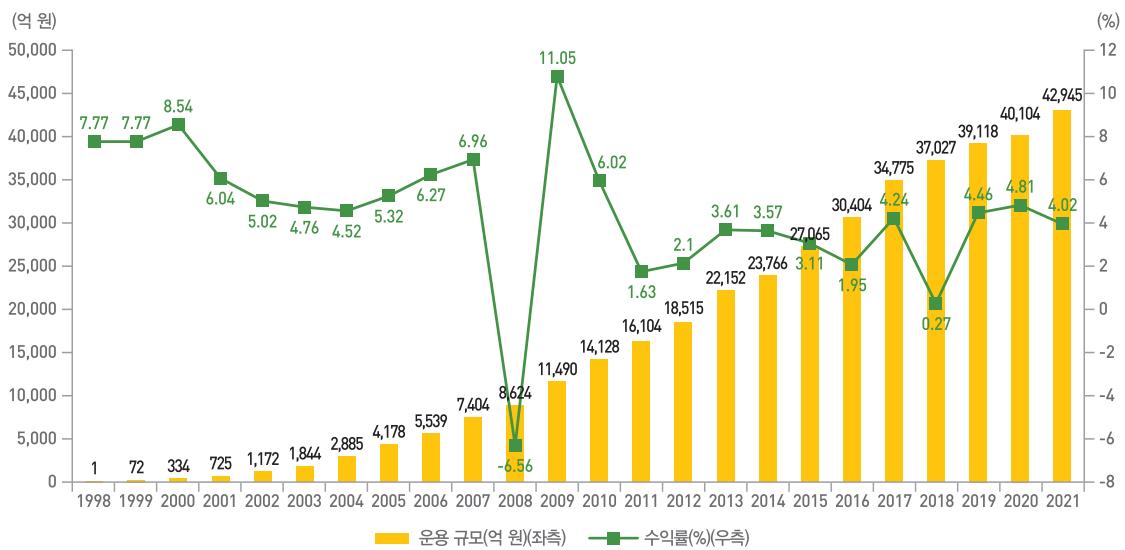
(‘21.12.31. 기준, 단위: 억 원, %)

구분	투자자산	운용규모			투자비중 (평가액기준)	운용수익	수익률	
		투자원금	평가액	평잔				
중장기	주식	국내	1,450	1,436	1,175	3.4	129	8.97
		해외	1,450	1,810	1,818	4.2	298	15.69
	계		2,900	3,246	2,993	7.6	427	13.19
	채권	국내	23,790	24,108	22,727	56.1	127	0.55
		해외	1,500	1,570	1,592	3.7	△21	△1.35
	계		25,290	25,678	24,319	59.8	106	0.42
대체투자		9,966	10,449	10,465	24.3	1,093	10.61	
계		38,156	39,373	37,777	91.7	1,626	4.25	
단기	현금성	3,565	3,572	3,091	8.3	31	1.00	
	계	3,565	3,572	3,091	8.3	31	1.00	
자산총계		41,721	42,945	40,868	100.0	1,657	4.02	

2 운용 규모 및 수익률

공제회의 자산운용 규모는 설립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2년 1천억 원 달성을 시작으로 2007년 및 2008년 공제부금 일액 증가, 2010년 민간공사 등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에 따른 부금납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09년 최초로 운용규모 1조 원을 돌파한 후, 2013년 2조 원 도달에 이어 2016년 3조 원, 2020년 4조원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2021년에는 운용규모 4조 2,945억 원을 달성하였고, 4.02%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그림 4] 공제부금 운용 규모 및 수익률 추이



<표 43> 공제부금 운용 규모 및 수익률 추이

(21.12.31. 기준, 단위: 억 원, %)

연도	운용 규모	수익률	연도	운용 규모	수익률
1998	1	7.77	2010	14,128	6.02
1999	72	7.77	2011	16,104	1.63
2000	334	8.54	2012	18,515	2.10
2001	725	6.04	2013	22,152	3.61
2002	1,172	5.02	2014	23,766	3.57
2003	1,844	4.76	2015	27,065	3.11
2004	2,885	4.52	2016	30,404	1.95
2005	4,178	5.32	2017	34,775	4.24
2006	5,539	6.27	2018	37,027	0.27
2007	7,404	6.96	2019	39,118	4.46
2008	8,624	△6.56	2020	40,104	4.81
2009	11,490	11.05	2021	42,945	4.02

또한, 부금회계로 운용해 온 공제부금은 「미확인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운영수익」 특별회계가 2014년 1월 1일부로 설치됨에 따라 미회수공제증지 판매원금과 이자적립금 등을 분리하여 특별회계로 운용하게 되었다. 2021년의 특별회계의 운용 규모는 2,308억 원이다.

<표 44> 특별회계 운용 규모 추이

(21.12.31. 기준, 단위: 억 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운용 규모	2,034	2,070	2,114	2,188	2,180	2,242	2,320	2,308



PART
03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통계**

제 1장 | 건설경기 및 건설노동시장 동향

제 2장 | 퇴직공제사업 운영실적



이용자 안내

1. 본 자료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에서 수행하는 퇴직공제사업으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집계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공제회에 신고된 내용만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전체 건설현장에 대한 통계 수치로는 한계를 지니므로, 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 상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가 당해연도 건설현장에서 일한 모든 날이 아니라,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일한 날만을 의미합니다.

(예시) 근로자 A씨가 2021년도에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50일을 일한 후 퇴직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건설현장으로 이동하여 100일을 일한 경우 2021년도 A씨의 적립일수는 50일이 됩니다.

- 또한, 적립일수는 근로자의 실제 작업시간을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예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인 B씨가 2021 5월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10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B씨의 퇴직공제 적립일수는 하루에 1.5일로 환산하여 15일이 되며, 달력으로 하는 날짜 계산법과는 다릅니다.

2. 자료 추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매월 EDI와 서면신고를 통해 공제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근로 연월’ 기준으로 추출하였습니다.
- 직종은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공제회에 신고한 적립일수 자료를 근로자 별로 집계한 후 가장 많은 적립일수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 하나만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자료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사업장의 특성은 공사 유형별, 지역별, 규모별, 공종별, 발주자별 가입 현황을 중심으로 시계열로 분류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특성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종별 현황을 중심으로 시계열로 분류하였습니다.
- 분류가 불가능한 자료는 ‘기타’에 포함하여 표시하였습니다.

3. 동 자료집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 건설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은 자
- 건설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
- 퇴직공제: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 또는 65세 도달(252일 미만일 경우) 등의 경우에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 피공제자: 퇴직공제에 가입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 적립일수와 짹을 이뤄 기술할 때 ‘적립근로자’라고도 표기함
- 공제부금: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할 경우 건설사업주가 1인 1일당 6,500원*씩 계산하여 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
* 1일 공제부금액: 6,500원(근로자 적립분 6,200원 + 사업·운영비 300원)
- 퇴직공제금: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 또는 65세(252일 미만일 경우)에 이른 경우, 공제회가 퇴직공제에 가입된 기간 동안 납부된 퇴직공제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
- 적립일수: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건설사업주가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 그 명의로 적립된 공제부금 납부일수
- 근무기간: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적립일수가 처음 신고된 때부터 마지막 신고된 때까지 역법에 따라 계산한 기간
- 투입인원: 건설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그 날의 인원 수
- 직종: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며, 그 복잡함과 책임의 정도가 다른 직무의 계열
- 공종: 건설공사의 내역을 구성하는 주요한 공사의 종목

4. 퇴직공제금 청구 관련, 최소한의 요건이 되는 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 기준이 되는 공제부금 납부월수는 납부 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 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은 공제부금 납부월수 12개월에 해당됨

-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단, 법 개정('19.11.27) 이후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이더라도 사망 또는 만65세에 도달한 경우 청구권이 발생함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건설업에 종사한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해야 함

5. 자료 추출 결과 지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유량(flow) 지표에는 적립일수, 신규가입자수, 퇴직자수, 근무기간, 퇴직공제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 적립일수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근로자에게 공제부금을 납부한 일수 기준임
 - 신규가입자수는 당해 연도에 처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일한 사람의 수를, 퇴직자수는 근로자가 그 동안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더 이상 건설 일을 하지 않게 된 사람의 수를 의미함
 - 근무기간은 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적립일수가 신고된 때부터 마지막으로 신고된 때까지의 기간 기준임
 - 퇴직공제금 지급현황은 당해 연도 1년 동안 퇴직공제금을 접수한 후 지급까지 완료한 사안을 기준으로 함
- 저량(stock) 지표에는 피공제자 현황,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현황 및 준공사업장 현황이 있습니다.
 - 피공제자는 당해 연도에 퇴직공제 가입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를 기준으로 함
 -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현황은 당해 연도에 시공중인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준공사업장 현황은 당해 연도 말 현재 준공처리가 완료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6. 통계 수치는 향후 자료 보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본 사업연보는 발간과 동시에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장

• • •

건설경기 및 건설노동시장 동향

1 건설경기 동향

고찰의 필요성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로 한다)가 운영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크게 퇴직공제, 고용지원, 복지지원, 자산운용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본 공제회 사업연보는 2021년도에 공제회가 수행한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각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건설경기 및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업의 정책대상이자 출발점 그리고 추진 실적을 좌우하는 것이 ‘건설근로자의 고용’이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상황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건설경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력의 수요를 생산물에 대한 파생수요(derived demand)라고 부른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건설생산물에 대한 수요로부터 파생되어 나온다는 의미다.

요컨대, 공제회의 사업이 활성화될지 여부 또는 추진 실적의 증감은 기본적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 상황에 따라 규정되며, 건설근로자의 고용은 다시 건설경기 상황에 따라 규정된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공제회가 수행한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를 둘러싼 건설경기 동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¹⁾

가. 개요

건설생산물의 수요 및 공급의 활성화 정도를 건설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건설경기의 상승 또는 하강을 알려주는 건설경기지수를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로 구분할 수 있다.²⁾

동행지수(Coincident Index)란 현재의 경기 상태 및 동향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지수를 의미하고, 선행지수(Leading Index)란 앞으로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지수를 의미한다.

건설관련 지표 중 건축허가나 건설수주 활동이 건설시공 활동에 앞서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허가면

• • •

1) 주요 통계는 박철한(2021.11), 2022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2) 시사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2017.7.11. 검색)

적 통계나 건설수주 통계가 건설투자의 선행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건설공사 실적을 측정한 건설기성액은 건설투자의 동행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건설수주란 발주자가 제시하는 건설공사물을 건설업체가 완공해주기로 한 것에 대한 쌍방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금액과 납기 등으로 표현된다.³⁾

건설투자란 넓은 의미로는 자본으로서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 또는 건축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의 각 측면에서의 자본 투자를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건축 생산에 있어서의 투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건설기성이란 건설업체의 국내공사 현장별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조사하여 집계한 통계로서 조사대상 기간인 한 달 동안 시공한 공사실적을 조사한 것이므로 해당 월에 실행된 건설투자를 의미한다.

퇴직공제사업과 관련해 예를 들어본다면, 피공제자수의 동행지수는 건설투자·건설기성·건설업취업자수 등이고, 선행지수는 건설수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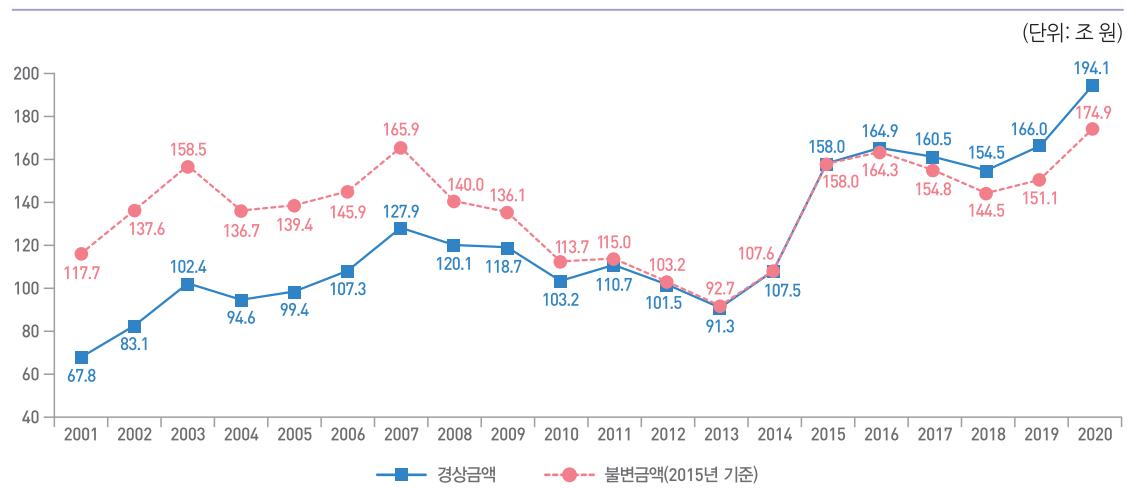
나. 건설수주 동향 : 선행지수

최근 20년간 건설수주의 중장기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네 번의 정점과 세 번의 저점을 볼 수 있다. 1990년대의 상승세로 1997년에 정점에 이른 후 1998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저점까지 하락한 후 회복되어 2007년에 다시 정점에 도달했다.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의 영향으로 2013년에는 저점에 이르게 되고 다시 상승해 2016년에 정점에 이르렀다. 이후 2018년까지 하락한 후 다시 상승세를 회복하여 2020년에 경상금액 194.1조 원, 불변금액(2015년 기준) 174.9조 원으로 모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선행지수인 건설수주의 2020년 호조세는 동행지수인 건설투자의 호조세를 선도하게 된다.

● ● ●

3) 건설수주, 건설투자, 건설기성 등의 정의에 대해 참조함. 통계용어,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2017.7.1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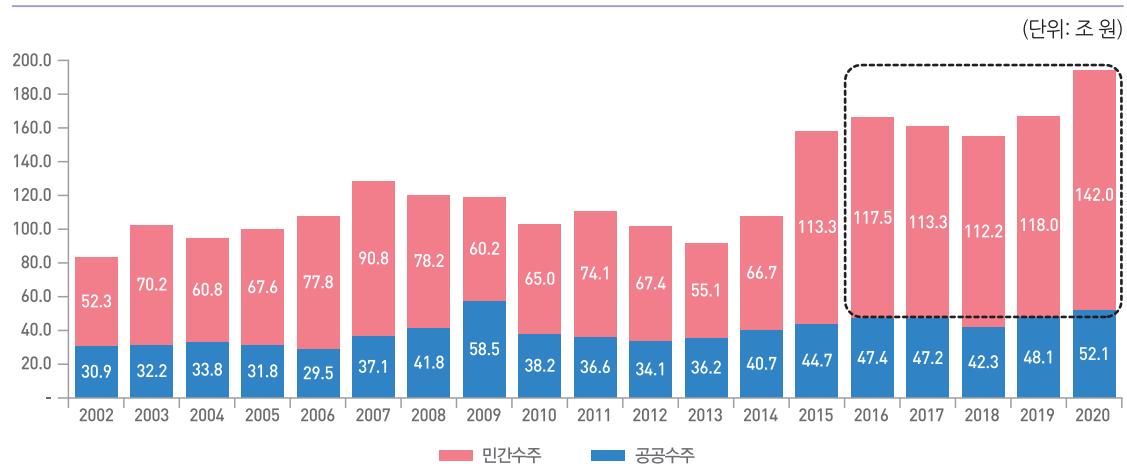
[그림 5] 국내 건설수주 중장기 추이



주 : 불변금액은 2015년 기준

자료 : 박철한(2021.11), 2022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림 6] 발주 부문별 국내 건설수주 추이



자료 : 박철한(2021.11), 2022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다. 건설투자 동향 : 동행지수

2021년의 건설투자는 264.1조 원(2015년 연쇄가격 기준, 전망치)으로 2020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년 동기에 비해 상반기에는 1.5% 감소했으나 하반기에는 1.4% 증가하였다.

<표 45> 건설투자 추이

(단위: 조 원, 전년 동기비 %)

구분	2019			2020			2021			2022(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연간
건설투자	125.3	140.0	265.2	127.3	136.8	264.1	125.4	138.7	264.1	270.4
증감률	-4.4	0.9	-1.7	1.6	-2.3	-0.4	-1.5	1.4	0.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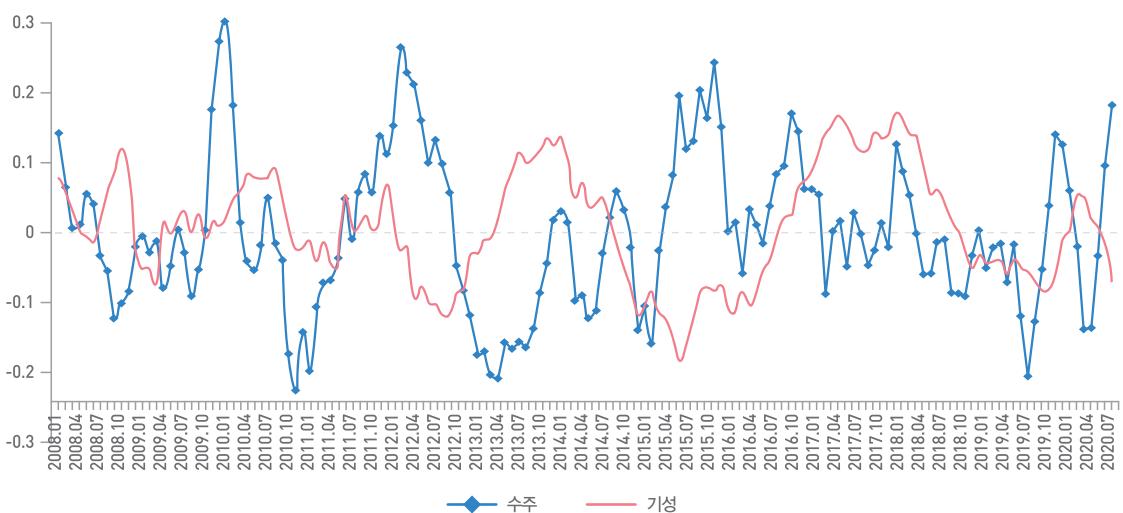
주 : 건설투자액은 2015년 연쇄가격 기준. e :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호 ; 박철한(2021.11), 2022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라.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간 시차

선행지수인 건설수주와 동행지수인 건설기성 간에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양자 간의 시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면 공제회의 각 사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으므로, 그 시차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림 7]에서 보듯이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간에는 시차가 보이는데,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간의 시차는 약 1년 반 수준이다. 즉, 건설수주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5년 6월경에 최고조에 이르렀다면, 건설투자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2017년 1월경에 정점에 이를 것임을 미리 전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0년 1분기 이후 수주 증가세로 전환하려는 흐름이 감지되는데, 이것은 2021년 하반기부터 건설투자 증가세가 예상됨을 짐작케 한다.

[그림 7] 건설수주와 건설기성의 순환변동 추이



자료 : 박철한(2021.11), 2022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 건설노동시장 동향

가. 건설업취업자 동향

건설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건설업의 임금근로자와 비 임금근로자(자영자 등)까지 모두 포함해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업취업자다. 건설업취업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 9개의 직종으로 분류된다.

대체로 건설업취업자는 건설경기의 동행지수인 건설투자와 동일한 증감 추이를 보인다. 양자는 건설업의 생산물 수요와 그 생산물의 파생수요 간의 관계이므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이전과 2013년 이후에는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나 2009년에서 2012년까지 그리고 2021년에도 양자의 흐름이 괴리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된 정설은 없다.

[그림 8] 건설투자 및 건설업취업자 추이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각각 연간 자료)

건설업취업자의 직종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인원수 구성비가 높은 직종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1,021천 명, 48.8%), 단순노무종사자(327천 명, 15.7%), 사무종사자(290천 명, 13.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92천 명, 9.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77천 명, 8.4%) 등이다.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 3개 직종을 아우르는 건설기능인력은 1,525천 명으로 전체 건설업취업자 중 72.9%를 차지하였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 총 20천 명이 감소했는데 절대 인원수 측면에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43천 명), 사무종사자(19천 명), 판매종사자(8천 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천 명)가 증가한 반면, 단순노무종사자(-52천 명), 관리자(-18천 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6천 명) 등의 순으로 감소하였다. 그에 비해 2021년과 2020년 1년간의 변화만을 살펴보면, 총 74천 명이 증가했는데 절대 인원수 측면에서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50천 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6천 명), 사무종사자(16천 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6천 명)의 증가 규모가 커으며, 단순노무종사자는 26천 명 감소하였다.

<표 46> 건설업취업자의 직종별 구성 변화: 최근 10년간

인원 수(천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1-'14
전체	2,110	1,854	1,869	1,988	2,034	2,020	2,016	2,090	-20
관리자	76	70	64	53	66	71	55	58	-1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0	163	175	184	180	168	176	192	2
사무종사자	271	235	225	244	254	252	274	290	19
서비스종사자	2	2	3	1	2	1	2	1	-1
판매종사자	14	15	20	20	22	22	22	22	8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7	3	2	3	2	4	3	3	-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978	924	915	950	969	990	971	1,021	4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93	192	186	190	174	169	161	177	-16
단순노무종사자	379	250	281	342	364	342	353	327	-52
소계(기능인력)	1,550	1,366	1,381	1,482	1,508	1,501	1,485	1,525	-25
구성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1-'1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관리자	3.6	3.8	3.4	2.7	3.2	3.5	2.7	2.8	-0.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0	8.8	9.3	9.3	8.9	8.3	8.7	9.2	0.2
사무종사자	12.9	12.7	12.0	12.3	12.5	12.5	13.6	13.9	1.0
서비스종사자	0.1	0.1	0.1	0.1	0.1	0.1	0.1	0.1	-0.0

구분	구성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1-'14
판매종사자	0.7	0.8	1.1	1.0	1.1	1.1	1.1	1.0	0.3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0.3	0.2	0.1	0.2	0.1	0.2	0.1	0.2	-0.1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46.3	49.8	48.9	47.8	47.7	49.0	48.2	48.8	2.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2	10.4	9.9	9.6	8.6	8.4	8.0	8.4	-0.8
단순노무종사자	18.0	13.5	15.0	17.2	17.9	16.9	17.5	15.7	-2.3
소계(기능인력)	73.5	73.7	73.9	74.5	74.1	74.3	73.7	72.9	-0.6

주 : 건설기능인력은 건설현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 합한 개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평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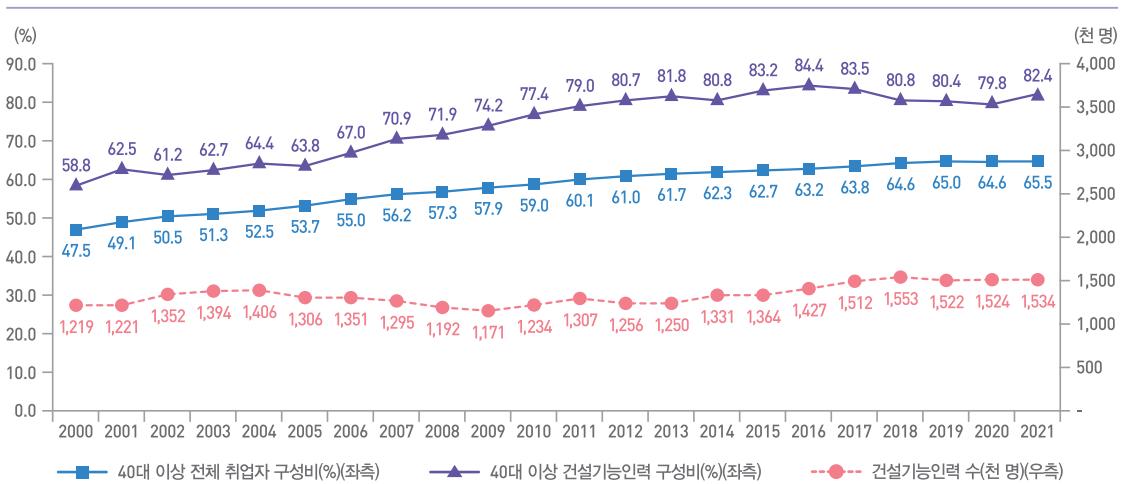
나. 건설기능인력의 규모 및 고령화 추이

건설업취업자의 9개 직종 중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의 3개 직종이 대체로 건설현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인데, 건설기술인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건설기능인력'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건설일용근로자'로 불린다. 이들은 대체로 동일 현장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아 퇴직공제사업을 비롯한 공제회 제반 사업의 정책대상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본 사업연보에서도 건설업취업자 중 특히 건설기능인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돼 왔다. 인원수는 2000년에 1,219천 명이던 것이 2009년에 1,171천 명으로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21년에는 1,534천 명으로 증가했다.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정도는 40대 이상 구성비를 전체 취업자와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2000년에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구성비는 58.8%이고 전체 취업자의 경우 그것이 47.5%로 나타나 양자 간의 격차가 11.3%p였는데, 2021년에는 각각 82.4%와 65.5%로 그 격차가 16.9%p로 크게 벌어졌다. 2017년의 19.7%p 격차에 비해 약간 축소되기는 했으나, 이것은 향후 건설현장 숙련인력 확보의 지속 가능성 또는 공제회 제반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위험한 요소다. 건설투자를 통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더라도 이를 수행할 내국인 건설근로자가 부족해질 경우 퇴직공제사업을 비롯한 훈련, 취업, 복지 등 공제회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7년 이래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구성비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긴 했으나, 2021년에는 다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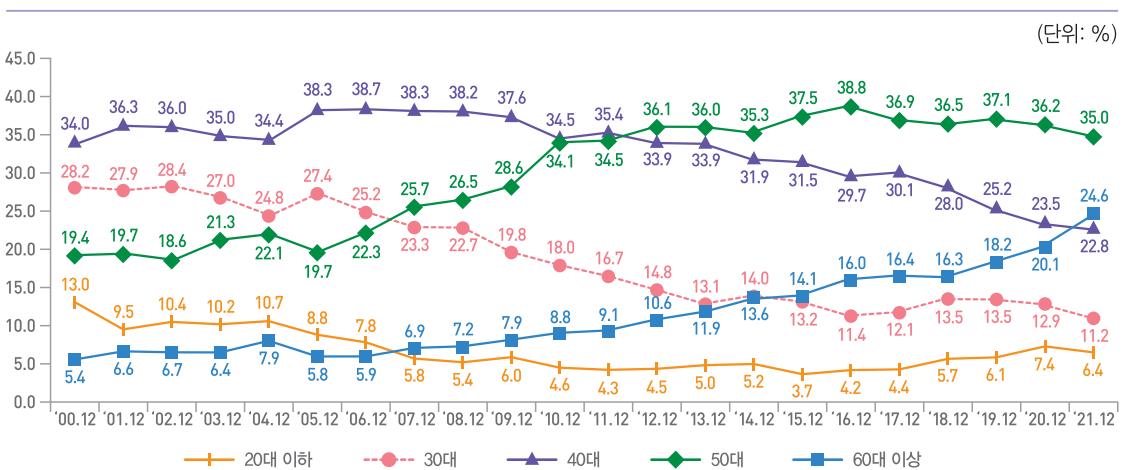
[그림 9] 건설기능인력의 규모 및 고령화 추이



주 : 건설기능인력은 건설업취업자 중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 3개 직종을 합한 개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2월 기준

지난 21년 간 60대 이상(19.2%p)과 50대(15.6%p)의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30대(-17.0%p), 40대(-11.2%p), 20대 이하(-6.6%p)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눈여겨볼 것은 2021년에 최초로 60대 이상의 비중이 40대 비중을 추월했다는 점이다. 짊은 층의 진입과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그림 10] 건설기능인력의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



주 : 건설기능인력은 건설업취업자 중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 3개 직종을 합한 개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2월 기준

제2장

• • •

퇴직공제사업 운영실적

퇴직공제사업은 공제회의 주된 사업인 만큼 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2021년까지의 운영 실적을 개관하고 각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특성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다. 공제부금 적립 일수, 수납액, 퇴직공제금 지급 등에 관한 특성별 분석은 2020년과 2021년 2개 연도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증감 정도를 비교했다.

1 개요

가. 총괄

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된 1998년 이래 2021년까지의 운영 실적을 개관해보면, 2021년 현재 퇴직자를 제외한 피공제자 누계는 5,293,851명이고, 퇴직자 누계는 1,880,906명이며, 퇴직공제금 지급액을 제외한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치는 3조 7,826억 원이다.

2021년도 한 해 동안의 공제부금 적립근로자는 1,555,037명이고 연간 적립일수는 125,179천 일이다. 2021년도의 공제부금 납부사업장은 72,258개소이고 연간 공제부금 납부액은 6,784억 원으로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9,389천 원이다. 1998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제부금 납부액 총계는 7조 621억 원이다.

그리고 2021년도의 퇴직공제금 지급인원은 460,561명이고 퇴직공제금 지급액은 5,31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154천 원이다. 1998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급인원은 1,874,421명이고 퇴직공제금 지급액 총계는 3조 2,795억 원으로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750천 원이다.

<표 47> 퇴직공제사업 운영 현황(1998~2021)

구분		합계	1998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주요 항목 누계	피공제자 누계(명) (퇴직자 제외)	5,293,851	4,461,589	4,753,845	5,104,017	5,362,531	5,532,722	5,384,967	5,293,851
	퇴직자 누계(명)	1,880,906	396,095	482,454	582,948	708,333	911,656	1,417,447	1,880,906
	공제부금 누계(억 원) (지급액 제외)(D-F)	37,826	26,761	2,897	3,376	2,442	702	180	1,469
연도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적립근로자수(명)(A)	-	-	1,545,052	1,701,588	1,667,664	1,617,765	1,579,607	1,555,037
	적립일수(천 일)(B)	-	-	127,116	144,023	138,179	134,509	129,624	125,179
연도별 공제부금 납부	납부사업장(개소)(C)	524,413	262,593	32,599	34,767	36,516	39,354	46,326	72,258
	납부액(억 원)(D)	70,621	34,408	5,114	6,043	5,950	6,096	6,226	6,784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천 원)(D/C)	13,467	13,103	15,687	17,381	16,293	15,491	13,440	9,389
연도별 퇴직 공제금 지급	지급인원(명)(E)	1,874,421	395,171	86,457	100,541	123,884	204,391	503,416	460,561
	지급액(억 원)(F)	32,795	7,647	2,217	2,667	3,508	5,395	6,046	5,315
	1인당 평균 지급액 (천 원)(F/E)	1,750	1,935	2,564	2,653	2,831	2,639	1,201	1,154

- 주 : 1) 연도별 적립근로자의 경우 동일 근로자가 다른 해에도 중복되므로 일정 기간에 걸친 누계는 실적으로서의 의미가 없어 생략함
 2) 지급인원은 실제 퇴직금이 지급된 시점 기준으로 산출(지급액 산정을 위해)된 인원으로 퇴직자 수와 수치가 다름(이하 동일)
 3) '추가지급'은 '지급액'에서 제외되어 'Part2. 주요사업 현황'의 수치와 차이가 있음(이하 동일)
 4)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나. 퇴직공제 피공제자 및 퇴직자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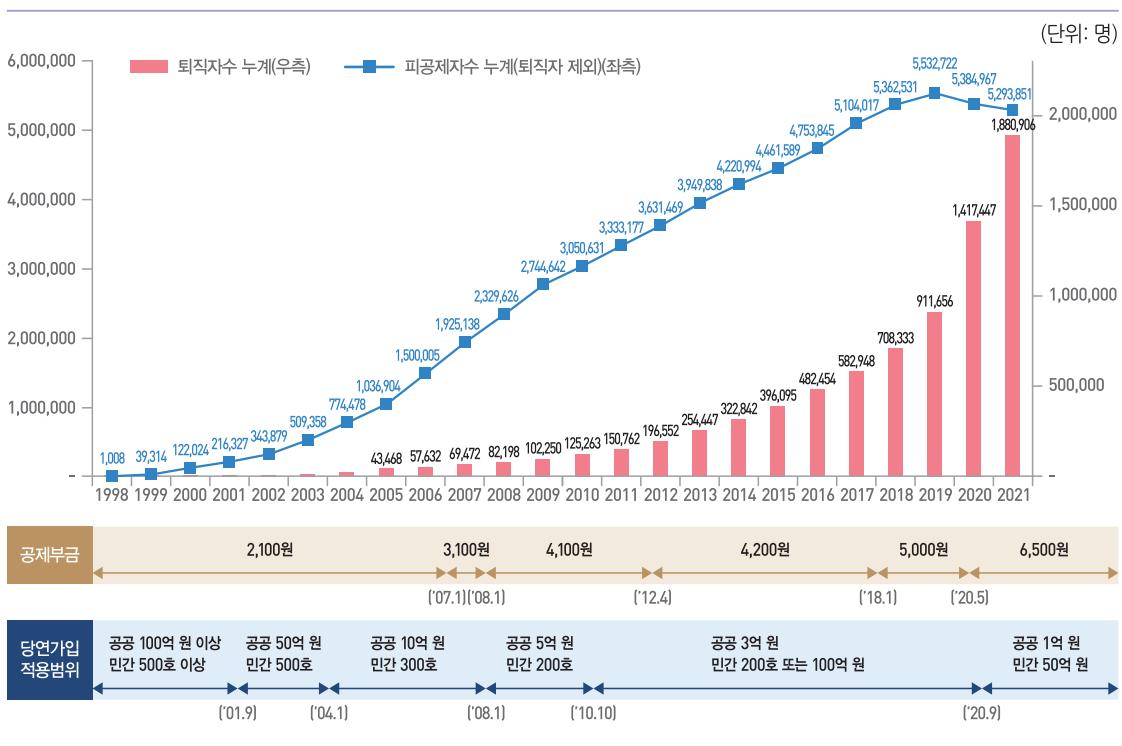
퇴직공제제도가 시작된 1998년에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피공제자가 1,008명에 그쳤다. 당시 당연가입 적용대상 공사의 범위는 공공공사 100억 원 이상 그리고 민간공사 500호 이상이었는데 2001년 이후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0년 5월(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대상의 경우 9월)에는 공공공사 1억 원,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공제부금 일액의 인상과 당연가입 적용범위 확대와 더불어 퇴직공제제도가 정착하는 데 큰 계기가 된 것은 2002년에 시행된 퇴직공제 가입 의무화 및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한 것 그리고 2006년에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방식을 종전의 공제증지 첨부방식에서 전산망을 통한 신고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피공제자 누계(퇴직자 제외)가 처음으로 백만 명을 넘어선 시점은 2005년이었고, 2008년에는 약 233만 명, 2010년에는 약 305만 명, 2014년에는 약 400만 명을 넘어섰고, 2019년 약 553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2020년에 최초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는 529만 명을 기록하였다.

퇴직자수는 초기에는 미미하게 증가하다가 2005년 이후 속도가 붙기 시작해, 2009년에는 누적 퇴직자수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2014년부터는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된 2020년 이후 한 해 퇴직공제금 지급인원이 크게 늘어 2021년 한해에만 460,561명에 달했고, 누적 퇴직자수는 1,880,906명에 달했다. 2020년 이후 피공제자 누계(퇴직자 제외)가 감소한 것은 건설근로자법 개정(252일 미만의 경우에도 공제금 지급)에 따라 퇴직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1] 퇴직공제 피공제자 및 퇴직자 누계 추이(199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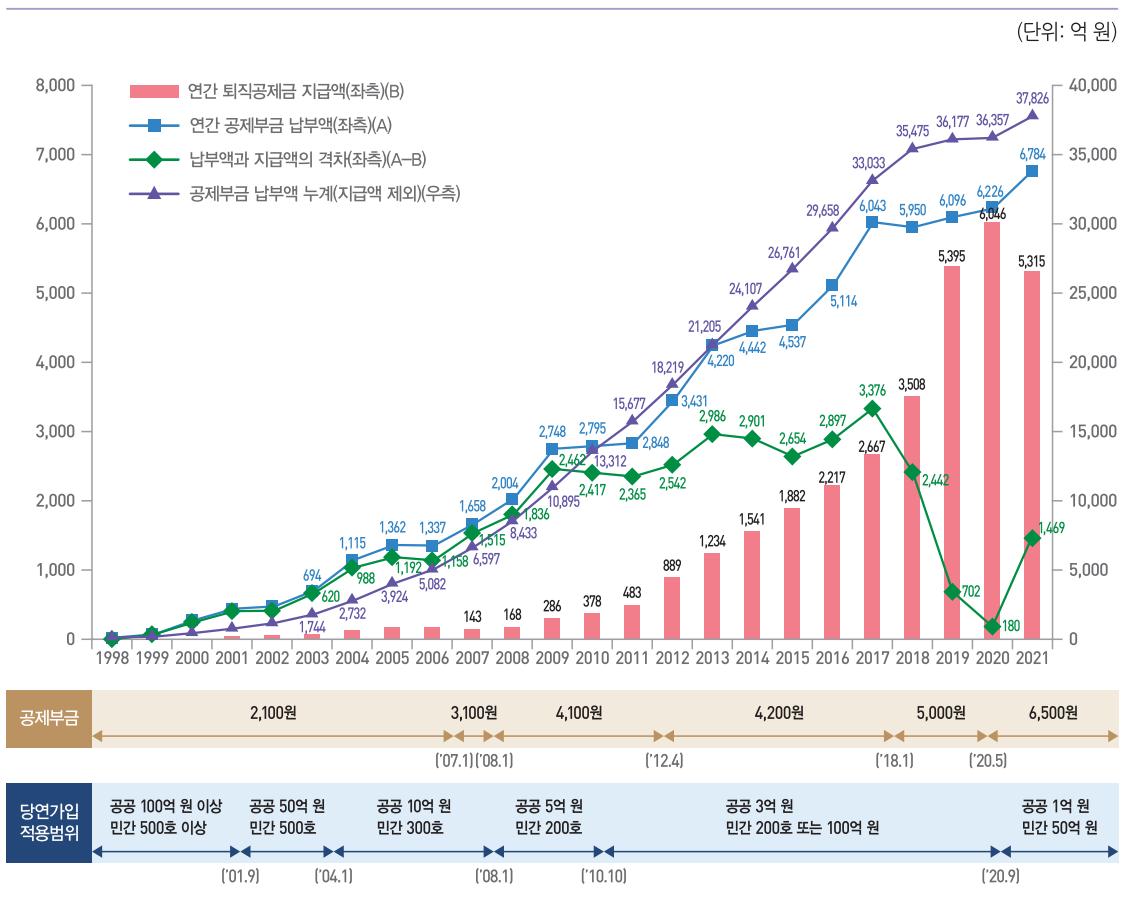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다.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 및 연도별 수지 추이

연간 공제부금 납부액은 제도가 도입된 지 9년차인 2004년에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선 1,115억 원을 기록했고, 그로부터 4년 후인 2008년에는 2,004억 원, 다시 4년 후인 2012년에는 3,431억

원, 이듬해인 2013년에는 4,220억 원, 2021년에는 6,784억 원에 이르렀다. 퇴직공제금 지급액도 2004년에는 128억 원이던 것이 2013년에는 1,234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6,046억 원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2021년에는 5,315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림 12]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 및 연도별 수지 추이(1998~2021)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향후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치의 증가 속도는 공제부금 납부액과 퇴직공제금 지급액 간의 격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가 후자에 비해 클 경우 공제부금 누계치는 계속 증가할 텐데 격차가 클수록 증가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격차가 준다면 증가 속도는 느려질 것이다. 반대로 후자가 더 커진다면 그때부터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치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양자 간의 격차가 증가 추세를 지속하던 중 2017년에는 3,376억 원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지급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442억 원으로 낮아졌는데, 2020년에는 지급액이 더욱 급증해 양자 간의 격차가 180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2019년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2020년 5월 27일 이후부터 적용일수가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도 만 65세가 넘거나 사망하면 퇴직공제금이 지급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수급권 찾아주기 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퇴직공제금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21년에는 수급권 확대로 인한 퇴직금 청구건수 증가율이 점차 안정화 되면서 납부액과 지급액의 격차는 1,46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21년 현재 지급액을 제외한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는 3조 7,826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2019년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퇴직공제금 지급액이 급격히 늘면서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치의 증가 속도는 앞으로도 크게 둔화되거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제부금 납부액의 증가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당연 적용 대상 공사범위의 확대 또는 공제부금 일액을 증액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 공제부금 적립일수

근로자의 근로내역과 관련된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의 시계열 통계는 2005년까지는 연도별로 집계하지 못해 2006년 이후의 실적만을 살펴볼 수 있다. 2005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고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2006년에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방식을 전산망으로 전환한 후로는 피공제자의 근로내역이 발생한 시점을 알 수 있지만,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복지수첩에 근로일수만큼의 공제증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근로내역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근로자별 증지 매수에 대한 정보만 존재할 뿐 근로내역이 발생했던 시점에 대한 정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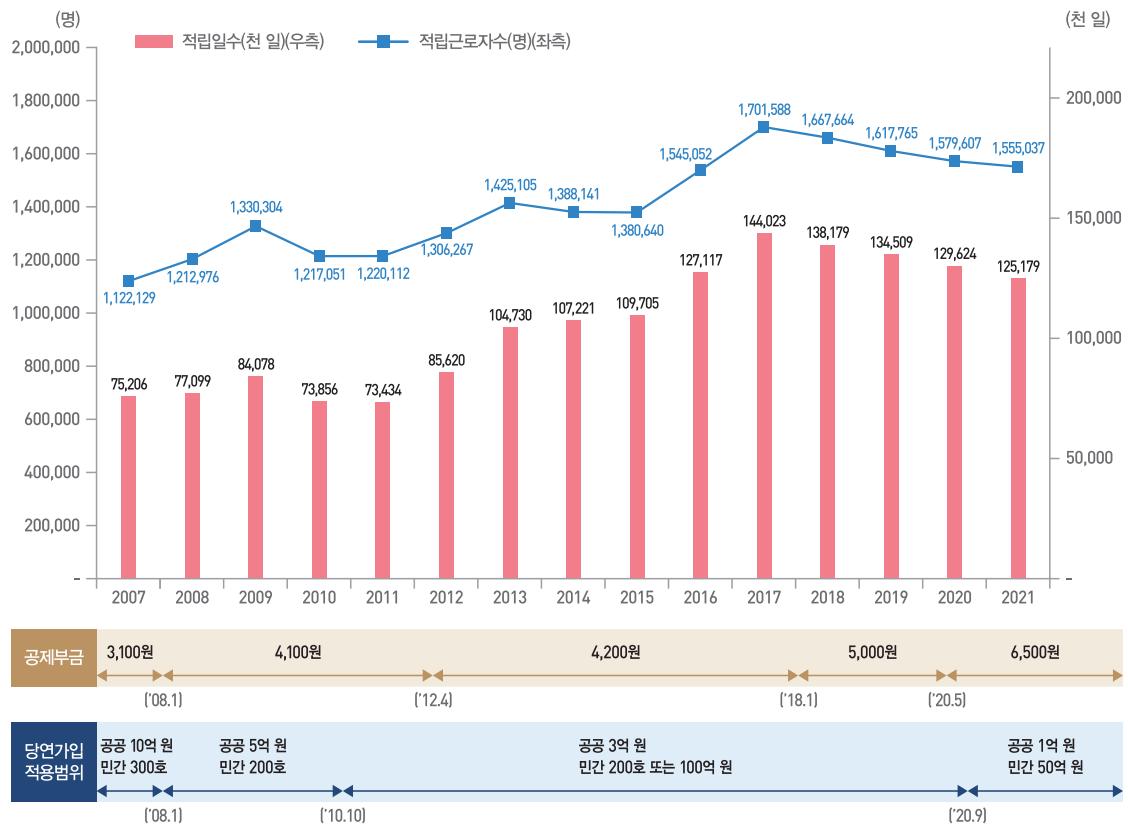
따라서 근로자가 복지수첩을 공제회로 반납해 전산망에 입력할 때 근로자별로 수첩에 첨부된 총 매수만 입력됐고, 2005년까지의 적립근로자수 또는 적립일수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근로자의 근로내역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고방식을 전산화한 것이 큰 의미를 지니는 이유다.

적립근로자는 2007년에 1,122,129명에서 2021년에는 1,555,037명으로 38.6% 증가했으며, 동 기간 중 적립일수는 75,206천 일에서 125,179천 일로 66.4% 증가했다. 전자에 비해 후자의 증가 배율이 더 큰 이유는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적용범위 확대로 현장 간 이동이 잦은 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대체로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2014년과 2015년에 적립근로자는 약간 줄어드는데 반해 적립일수는 증가세를 이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동 기간 중 앞에서 본 건설기성은 2014년 일시적으로 약간 감소하나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아래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따라서 적립일수의 증가 추세가 건설노동시장의 실제 흐름과 더 잘 부합하는 모습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적립일수가 감소세를 보였는데 동 시기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국내 건설기성의 흐름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3] 연도별 퇴직공제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추이(2007~2021)



주 :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복지수첩에 증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근로내역 신고가 이루어져 근로자별 총 매수는 알 수 있지만 각 근로내역이 발생했던 시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연도별로 구분할 수 없음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표 48> 연도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추이(2007~2021)

연도	적립근로자수(명)	적립일수(천 일)
평균	1,417,963	105,972
2007	1,122,129	75,206
2008	1,212,976	77,099
2009	1,330,304	84,078
2010	1,217,051	73,856

연도	적립근로자수(명)	적립일수(천 일)
2011	1,220,112	73,434
2012	1,306,267	85,620
2013	1,425,105	104,730
2014	1,388,141	107,221
2015	1,380,640	109,705
2016	1,545,052	127,117
2017	1,701,588	144,023
2018	1,667,664	138,179
2019	1,617,765	134,509
2020	1,579,607	129,624
2021	1,555,037	125,179

- 주 : 1)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복지수첩에 증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근로내역 신고가 이루어져 근로자별 총 매수는 알 수 있지만 각 근로내역이 발생했던 시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연도별로 구분할 수 없음
 2) 또한, 연간 1일 이상 적립일수가 있는 연단위의 근로자 및 적립일수의 집계에 대한 통계와 아래에서 기술하는 월별 1일 이상 적립 일수가 있는 월단위의 집계에 의한 통계는 다를 수 있음
 3) 건설사업주의 삭감(소급)신고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가. 기본 특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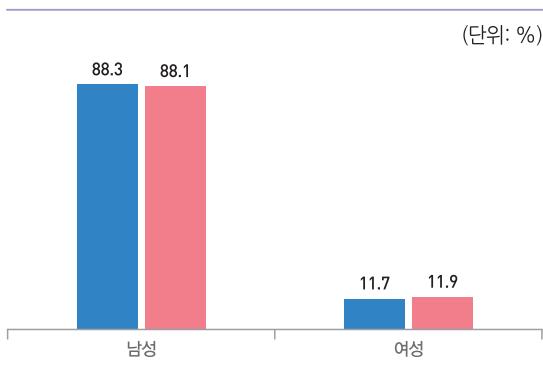
2021년의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는 1,555,037명으로서 2020년의 1,579,607명에 비해 1.6%가 감소했고, 적립일수는 125,178,829일로 전년도의 129,623,959일 대비 3.4% 감소했다.

1) 성별

2021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남성 88.1%(1,369,824명), 여성 11.9%(185,213명)로 나타났고, 적립일수의 경우 남성 90.1%(112,786,605일), 여성 9.9%(12,392,224일)로 나타났다. 매년 남성이 차지하는 적립근로자수의 비중에 비해 적립일수의 비중이 미미하나마 더 크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의 순으로 남성의 경우 1.8%와 3.2% 감소했고, 여성의 경우에는 적립일수는 5.2% 감소한 반면 적립근로자수는 0.6% 증가하였다.

[그림 14] 성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그림 15]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표 49> 성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구분		2020		2021		전년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579,607	100.0	1,555,037	100.0	-1.6
	적립일수(일, %)	129,623,959	100.0	125,178,829	100.0	-3.4
남성	적립근로자수(명, %)	1,395,524	88.3	1,369,824	88.1	-1.8
	적립일수(일, %)	116,547,434	89.9	112,786,605	90.1	-3.2
여성	적립근로자수(명, %)	184,083	11.7	185,213	11.9	0.6
	적립일수(일, %)	13,076,525	10.1	12,392,224	9.9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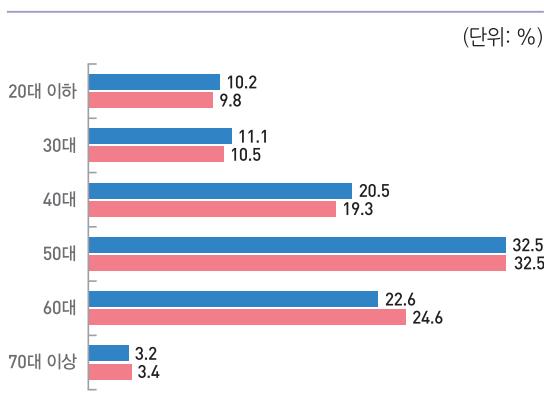
주 : 적립근로자수(적립일수)는 건설사업주의 삭감(소급)신고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이하동일)

2)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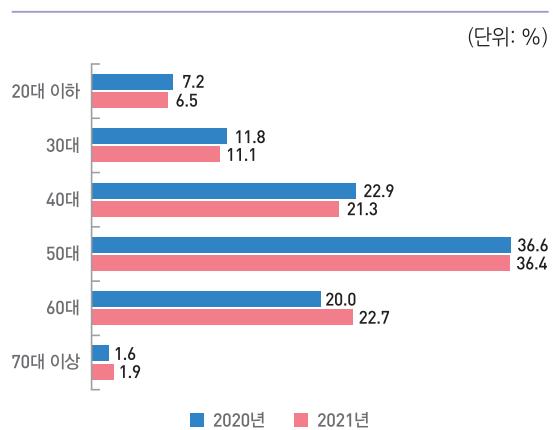
2021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50대 32.5%(504,852명), 60대 24.6%(382,765명), 40대 19.3%(299,588명) 순이고, 적립일수는 50대 36.4%(45,618,717일), 60대 22.7%(28,400,130일), 40대 21.3%(26,718,751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 모두 60대(7.1%, 9.7%)와 70대 이상(6.4%, 13.3%)에서 증가했으며, 그 이외 연령에서는 모두 감소했는데 특히, 20대 이하(-5.7%, -12.1%)와 40대(-7.4%, -9.8%)의 감소가 컸다.

[그림 16]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그림 17]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표 50>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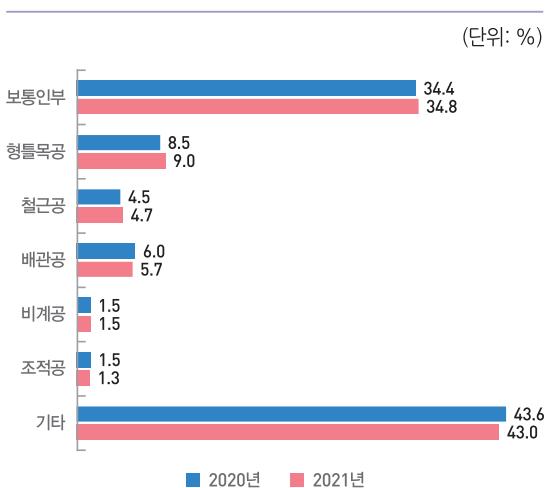
구분		2020		2021		전년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579,607	100.0	1,555,037	100.0	-1.6
	적립일수(일, %)	129,623,959	100.0	125,178,829	100.0	-3.4
20대 이하	적립근로자수(명, %)	161,265	10.2	152,146	9.8	-5.7
	적립일수(일, %)	9,280,972	7.2	8,155,046	6.5	-12.1
30대	적립근로자수(명, %)	174,859	11.1	162,607	10.5	-7.0
	적립일수(일, %)	15,341,441	11.8	13,916,869	11.1	-9.3
40대	적립근로자수(명, %)	323,545	20.5	299,588	19.3	-7.4
	적립일수(일, %)	29,619,426	22.9	26,718,751	21.3	-9.8
50대	적립근로자수(명, %)	512,737	32.5	504,852	32.5	-1.5
	적립일수(일, %)	47,404,466	36.6	45,618,717	36.4	-3.8
60대	적립근로자수(명, %)	357,331	22.6	382,765	24.6	7.1
	적립일수(일, %)	25,887,314	20.0	28,400,130	22.7	9.7
70대 이상	적립근로자수(명, %)	49,870	3.2	53,079	3.4	6.4
	적립일수(일, %)	2,090,340	1.6	2,369,316	1.9	13.3

3) 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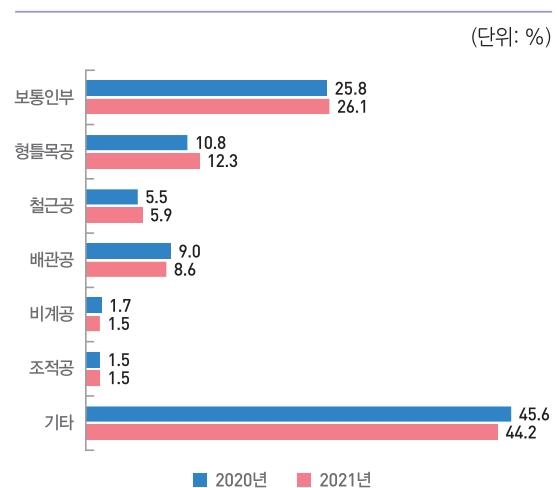
2021년도 공제부금 적립과 관련해 주요 6개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보통인부 34.8%(541,385명), 형틀목공 9.0%(139,739명), 배관공 5.7%(88,944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 역시 보통인부 26.1%(32,611,000일), 형틀목공 12.3%(15,336,513일), 배관공 8.6%(10,750,233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 순으로 형틀목공(4.2%, 9.2%), 철근공(3.8%, 3.9%)에서 증가하였고, 나머지 직종에서는 모두 감소하였다.

[그림 18]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그림 19]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표 51>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579,607	100.0	1,555,037	100.0	-1.6
	적립일수(일, %)	129,623,959	100.0	125,178,829	100.0	-3.4
보통인부	적립근로자수(명, %)	543,738	34.4	541,385	34.8	-0.4
	적립일수(일, %)	33,486,291	25.8	32,611,000	26.1	-2.6
형틀목공	적립근로자수(명, %)	134,050	8.5	139,739	9.0	4.2
	적립일수(일, %)	14,045,003	10.8	15,336,513	12.3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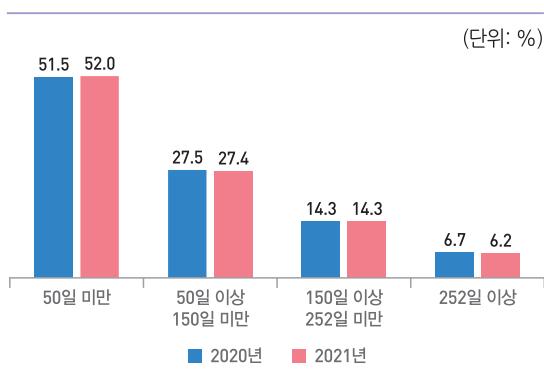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철근공	적립근로자수(명, %)	70,777	4.5	73,494	4.7	3.8
	적립일수(일, %)	7,141,978	5.5	7,417,511	5.9	3.9
배관공	적립근로자수(명, %)	94,779	6.0	88,944	5.7	-6.2
	적립일수(일, %)	11,696,574	9.0	10,750,233	8.6	-8.1
비계공	적립근로자수(명, %)	24,160	1.5	22,737	1.5	-5.9
	적립일수(일, %)	2,147,179	1.7	1,918,888	1.5	-10.6
조작공	적립근로자수(명, %)	23,332	1.5	20,841	1.3	-10.7
	적립일수(일, %)	1,958,688	1.5	1,849,463	1.5	-5.6
기타	적립근로자수(명, %)	688,771	43.6	667,897	43.0	-3.0
	적립일수(일, %)	59,148,246	45.6	55,295,221	44.2	-6.5

4) 적립일수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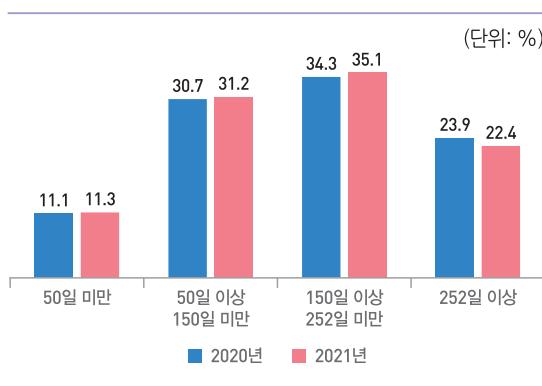
2021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적립일수 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50일 미만 52.0%(808,966명), 50일 이상 150일 미만 27.4%(426,023명), 150일 이상 252일 미만 14.3%(222,961명) 등의 순이고, 퇴직공제금 청구요건 중 하나인 252일 이상을 적립한 근로자는 6.2%(97,087명)다. 각 구간 적립일수 합계의 경우에는 150일 이상 252일 미만 35.1%(43,934,712일), 50일 이상 150일 미만 31.2%(39,009,040일), 252일 이상 22.4%(28,093,715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 모두 감소하였는데 252일 이상에서 (-7.7%, -9.4%)의 감소가 비교적 커졌다.

[그림 20] 적립일수 규모별 적립근로자수



[그림 21] 적립일수 규모별 적립일수



<표 52> 적립일수 규모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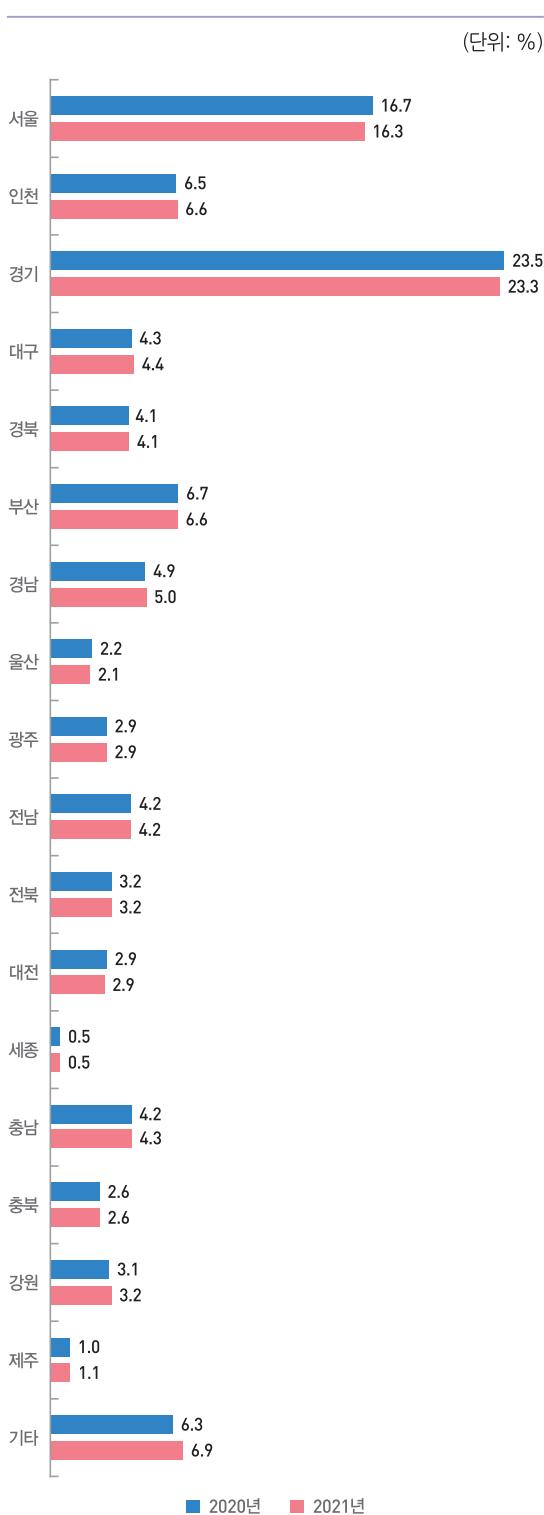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579,607	100.0	1,555,037	100.0	-1.6
	적립일수(일, %)	129,623,959	100.0	125,178,829	100.0	-3.4
50일 미만	적립근로자수(명, %)	813,485	51.5	808,966	52.0	-0.6
	적립일수(일, %)	14,333,177	11.1	14,141,362	11.3	-1.3
50일 이상 150일 미만	적립근로자수(명, %)	434,956	27.5	426,023	27.4	-2.1
	적립일수(일, %)	39,803,796	30.7	39,009,040	31.2	-2.0
150일 이상 252일 미만	적립근로자수(명, %)	225,964	14.3	222,961	14.3	-1.3
	적립일수(일, %)	44,472,944	34.3	43,934,712	35.1	-1.2
252일 이상	적립근로자수(명, %)	105,202	6.7	97,087	6.2	-7.7
	적립일수(일, %)	31,014,042	23.9	28,093,715	22.4	-9.4

5)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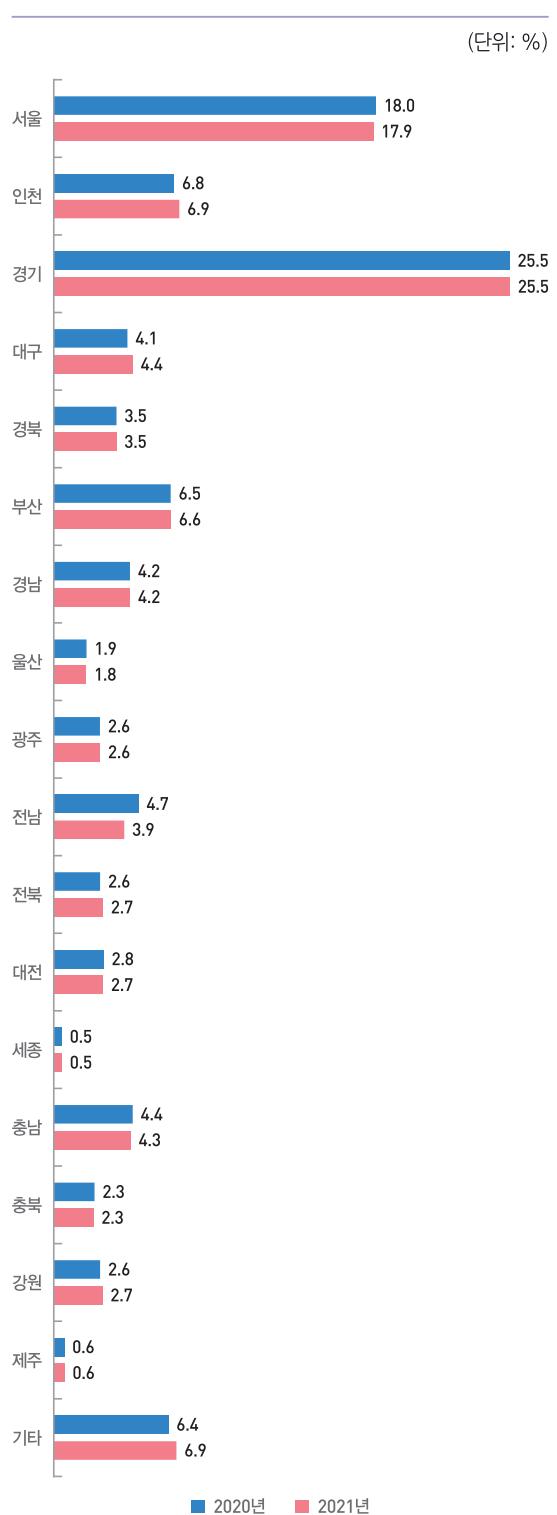
2021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경기 23.3%(362천 명), 서울 16.3%(253천 명), 부산 6.6%(103천 명), 인천 6.6%(102천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적립일수는 경기 25.5%(3,190만 일), 서울 17.9%(2,243만 일), 인천 6.9%(870만 일), 부산 6.6%(828만 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대구(1.8%)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는데 울산(-6.2%), 서울(-4.4%), 경기(-2.6%) 등의 순이었다. 적립일수의 경우에도 대구(4.3%)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였는데 전남(-19.2%), 울산(-10.0%) 세종(-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지역별 적립근로자수



[그림 23] 지역별 적립일수



<표 53>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적립근로자수 (명, %)		적립일수 (만 일, %)		적립근로자수 (명, %)		적립일수 (만 일, %)		적립 근로자수 (%)	적립일수 (%)
계	1,579,607	100.0	12,962	100.0	1,555,037	100.0	12,518	100.0	-1.6	-3.4
서울	264,281	16.7	2,329	18.0	252,767	16.3	2,243	17.9	-4.4	-3.7
인천	103,284	6.5	875	6.8	102,292	6.6	870	6.9	-1.0	-0.6
경기	371,628	23.5	3,311	25.5	362,080	23.3	3,190	25.5	-2.6	-3.7
대구	67,435	4.3	531	4.1	68,658	4.4	554	4.4	1.8	4.3
경북	64,253	4.1	454	3.5	63,626	4.1	440	3.5	-1.0	-3.1
부산	105,214	6.7	837	6.5	102,725	6.6	828	6.6	-2.4	-1.1
경남	77,842	4.9	549	4.2	77,324	5.0	531	4.2	-0.7	-3.3
울산	34,388	2.2	249	1.9	32,241	2.1	224	1.8	-6.2	-10.0
광주	46,459	2.9	337	2.6	45,825	2.9	320	2.6	-1.4	-5.0
전남	66,445	4.2	604	4.7	64,830	4.2	488	3.9	-2.4	-19.2
전북	50,059	3.2	339	2.6	49,200	3.2	334	2.7	-1.7	-1.5
대전	45,987	2.9	361	2.8	44,844	2.9	344	2.7	-2.5	-4.7
세종	7,822	0.5	65	0.5	7,681	0.5	60	0.5	-1.8	-7.7
충남	66,995	4.2	573	4.4	66,386	4.3	539	4.3	-0.9	-5.9
충북	41,422	2.6	298	2.3	40,942	2.6	282	2.3	-1.2	-5.4
강원	49,438	3.1	341	2.6	49,249	3.2	336	2.7	-0.4	-1.5
제주	16,426	1.0	80	0.6	16,399	1.1	77	0.6	-0.2	-3.8
기타	100,229	6.3	828	6.4	107,968	6.9	858	6.9	7.7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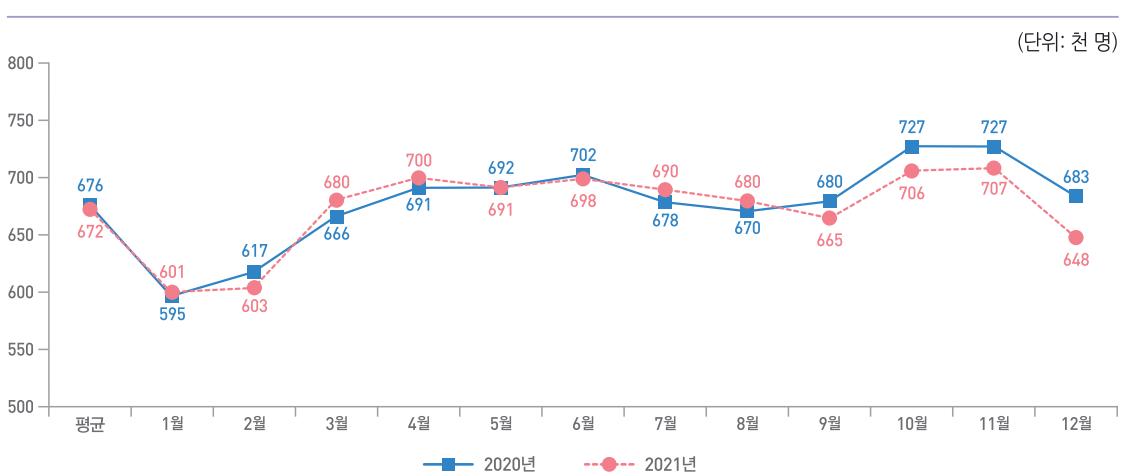
6) 월별(실제 근로 발생월 기준)

2021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월별 추이(실제 근로 발생월 기준)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는 월평균 672,389명과 10,431천 일이다. 적립근로자의 경우 11월(706,917명), 10월(706,043명), 4월(699,583명) 등의 순으로 많은 반면, 1월(601,222명)에는 최저 수준에 이른다. 적립일수의 경우 10월(11,290천 일), 11월(11,268천 일), 4월(11,263천 일) 등의 순으로 많은 반면, 2월(8,430천 일)과 1월(9,276천 일), 9월(9,413천 일)에는 최저 수준에 이른다.

이것은 옥외에서 생산이 이루어져 기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매월 일하는 근로자는 동일인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는 1월(1.0%, 2.9%), 3월(2.2%, 1.1%), 7월(1.7%, 1.5%), 8월(1.5%, 3.7%)에 증가하였고, 그 외에는 대부분 감소하였다.

[그림 24] 월별 적립근로자수



주 : 추출 시점이 달라 연간 적립근로자 합계와 적립일수 합계가 다른 자료와 다를 수 있음

[그림 25] 월별 적립일수



주 : 추출 시점이 달라 연간 적립근로자 합계와 적립일수 합계가 다른 자료와 다를 수 있음

<표 54> 월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적립근로자수(명)	적립일수(천 일)	적립근로자수(명)	적립일수(천 일)	적립근로자수(%)	적립일수(%)
평균	676,117	10,801	672,389	10,431	-0.6	-3.4
1월	595,446	9,017	601,222	9,276	1.0	2.9
2월	616,920	9,682	603,224	8,430	-2.2	-12.9
3월	665,661	11,000	680,225	11,122	2.2	1.1
4월	690,602	11,340	699,583	11,263	1.3	-0.7
5월	691,596	10,910	691,286	10,559	0.0	-3.2
6월	702,232	11,402	697,689	10,966	-0.6	-3.8
7월	678,370	10,896	689,617	11,060	1.7	1.5
8월	670,226	9,743	680,459	10,104	1.5	3.7
9월	679,973	10,797	664,690	9,413	-2.2	-12.8
10월	727,143	11,500	706,043	11,290	-2.9	-1.8
11월	727,143	11,914	706,917	11,268	-2.8	-5.4
12월	683,212	11,417	647,723	10,424	-5.2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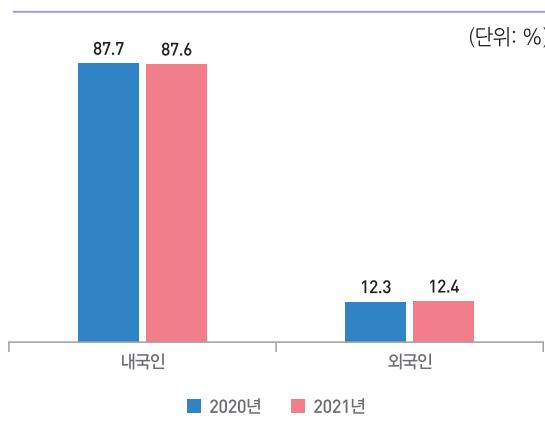
주 : 월별 1일 이상 적립일수가 있는 월단위의 집계에 의한 통계와 위에서 기술한 연간 1일 이상 적립일수가 있는 연단위의 근로자 및 적립일수의 집계에 대한 통계는 다를 수 있음

7) 내·외국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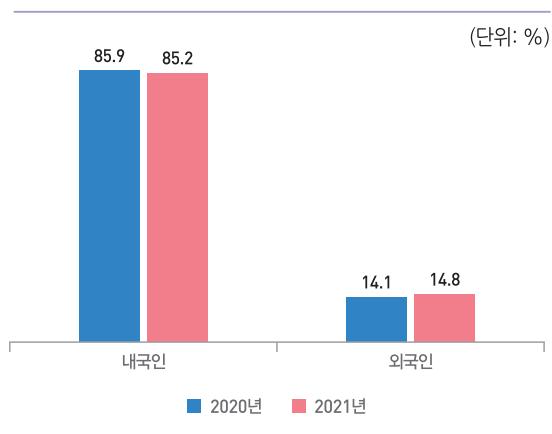
2021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내·외국인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내국인 87.6% (1,361,452명)과 외국인 12.4%(193,585명) 그리고 적립일수의 경우 내국인 85.2%(106,621,517일)과 외국인 14.8%(18,557,312일)로 나타나, 외국인의 적립일수 비중이 적립근로자수 비중에 비해 더 크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내국인의 경우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는 모두 감소(-1.7%, -4.3%) 하였고, 외국인은 적립근로자수는 0.6% 감소한 것에 비해 적립일수는 1.8% 증가하였다.

[그림 26] 내·외국인별 적립근로자수



[그림 27] 내·외국인별 적립일수



<표 55> 내·외국인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579,607	100.0	1,555,037	100.0	-1.6
	적립일수(일, %)	129,623,959	100.0	125,178,829	100.0	-3.4
내국인	적립근로자수(명, %)	1,384,761	87.7	1,361,452	87.6	-1.7
	적립일수(일, %)	111,398,596	85.9	106,621,517	85.2	-4.3
외국인	적립근로자수(명, %)	194,846	12.3	193,585	12.4	-0.6
	적립일수(일, %)	18,225,363	14.1	18,557,312	14.8	1.8

나. 신규 가입 피공제자

2021년의 신규 가입 적립근로자수는 356,922명으로서 2020년의 343,645명에 비해 3.9%가 증가했고, 적립일수는 17,390,621일로 전년도의 18,268,540일 대비 4.8% 감소했다. 그 결과 2021년도의 신규 가입 피공제자의 평균 적립일수는 48.7일로 2020년도의 53.2일에 비해 4.4일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신규 진입자들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로 나타났고 2021년에 건설기성액이 감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건설기능인력의 수는 증가하는 비동조화 현상을 가져왔던 저변의 요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 성별

2021년도 신규 가입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남성 81.9% (292,474명), 여성

18.1%(64,448명)로 나타났고, 적립일수의 경우 남성 83.8%(14,565,324일), 여성 16.2%(2,825,297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적립근로자수는 증가했으나 적립일수는 감소하였는데, 순서대로 남성의 경우 2.8% 증가, 5.6% 감소, 여성의 경우 9.2% 증가, 0.2% 감소하였다.

[그림 28] 성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그림 29] 성별 신규 적립일수



<표 56> 성별 신규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343,645	100.0	356,922	100.0	3.9
	적립일수(일, %)	18,268,540	100.0	17,390,621	100.0	-4.8
남성	적립근로자수(명, %)	284,611	82.8	292,474	81.9	2.8
	적립일수(일, %)	15,436,239	84.5	14,565,324	83.8	-5.6
여성	적립근로자수(명, %)	59,034	17.2	64,448	18.1	9.2
	적립일수(일, %)	2,832,301	15.5	2,825,297	16.2	-0.2

주 : 신규 적립근로자수는 적립일수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계가 추출되어 Part2, Part4의 신규 피공제자수와 차이가 있음. 건설 사업주의 파산으로 인한 적립불가, 삭감(소급)신고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이하동일)

2)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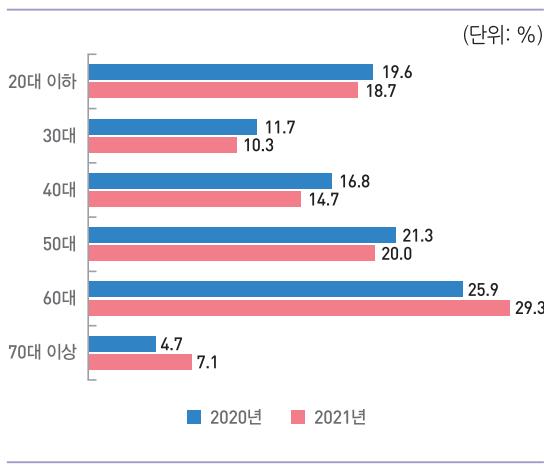
2021년도 신규 가입 피공제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60대 29.3%(104,442명), 50대 20.0%(71,357명), 20대 이하 18.7%(66,583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 60

대 31.0%(5,383,287일), 50대 21.4%(3,729,925일), 40대 16.5%(2,863,909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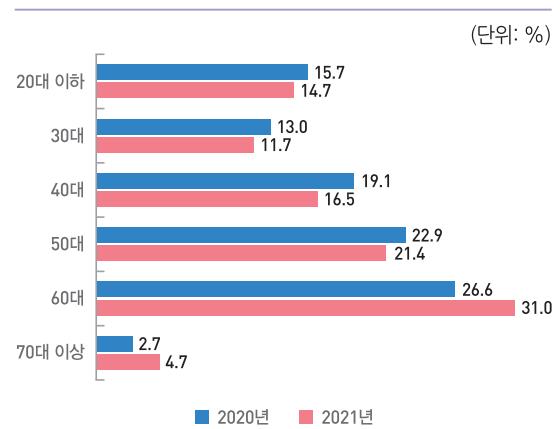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70대 이상(59.0%)과 60대(17.1%)에서 증가한 반면 40대(-9.4%), 30대(-8.4%) 등에서 감소가 커고, 적립일수의 경우 70대 이상(64.7%)과 60대(10.9%)에서만 증가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40대(-18.1%)에서의 감소가 커다.

앞에서 2021년도의 신규 가입 피공제자의 평균 적립일수는 48.7일로 2021년에 나타난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 간 비동조화 현상을 가져왔던 저변의 요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는데, 70대 이상의 경우 평균 적립일수가 32.0일에 불과해 이들의 증가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30] 연령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그림 31] 연령별 신규 적립일수



<표 57> 연령별 신규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343,645	100.0	356,922	100.0	3.9
	적립일수(일, %)	18,268,540	100.0	17,390,621	100.0	-4.8
20대 이하	적립근로자수(명, %)	67,381	19.6	66,583	18.7	-1.2
	적립일수(일, %)	2,863,973	15.7	2,563,199	14.7	-10.5
30대	적립근로자수(명, %)	40,060	11.7	36,680	10.3	-8.4
	적립일수(일, %)	2,367,794	13.0	2,035,432	11.7	-14.0
40대	적립근로자수(명, %)	57,817	16.8	52,406	14.7	-9.4
	적립일수(일, %)	3,495,141	19.1	2,863,909	16.5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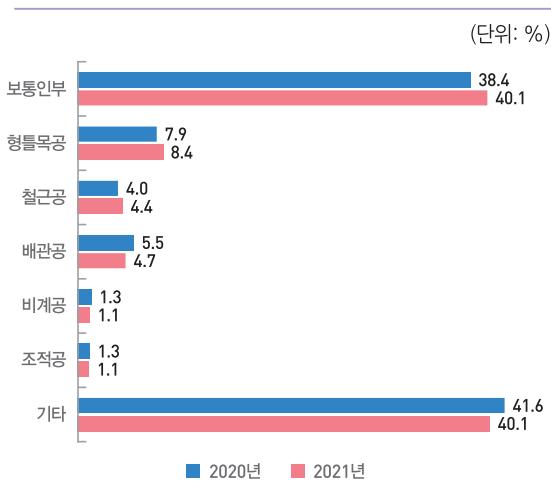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50대	적립근로자수(명, %)	73,204	21.3	71,357	20.0	-2.5
	적립일수(일, %)	4,190,780	22.9	3,729,925	21.4	-11.0
60대	적립근로자수(명, %)	89,174	25.9	104,442	29.3	17.1
	적립일수(일, %)	4,856,180	26.6	5,383,287	31.0	10.9
70대 이상	적립근로자수(명, %)	16,009	4.7	25,454	7.1	59.0
	적립일수(일, %)	494,672	2.7	814,869	4.7	64.7

3) 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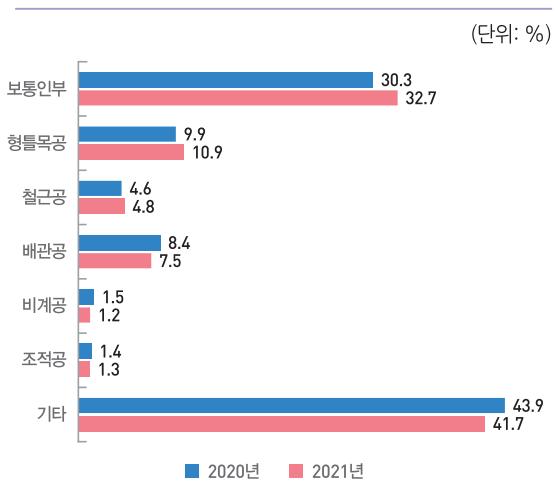
2021년도 신규 가입 피공제자의 주요 6개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보통인부 40.1%(143,256명), 형틀목공 8.4%(29,919명), 배관공 4.7%(16,852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 역시 보통인부 32.7%(5,687,045일), 형틀목공 10.9%(1,901,240일), 배관공 7.5%(1,298,791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철근공(14.3%), 형틀목공(10.0%), 보통인부(8.7%)의 순으로 증가하였고, 나머지 직종에서는 감소하였다. 적립일수는 형틀목공(5.0%)과 보통인부(2.8%)만 약간 증가했을 뿐, 비계공(-27.5%), 배관공(-15.6%), 조적공(-10.2%)의 순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32] 직종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그림 33] 직종별 신규 적립일수



<표 58> 직종별 신규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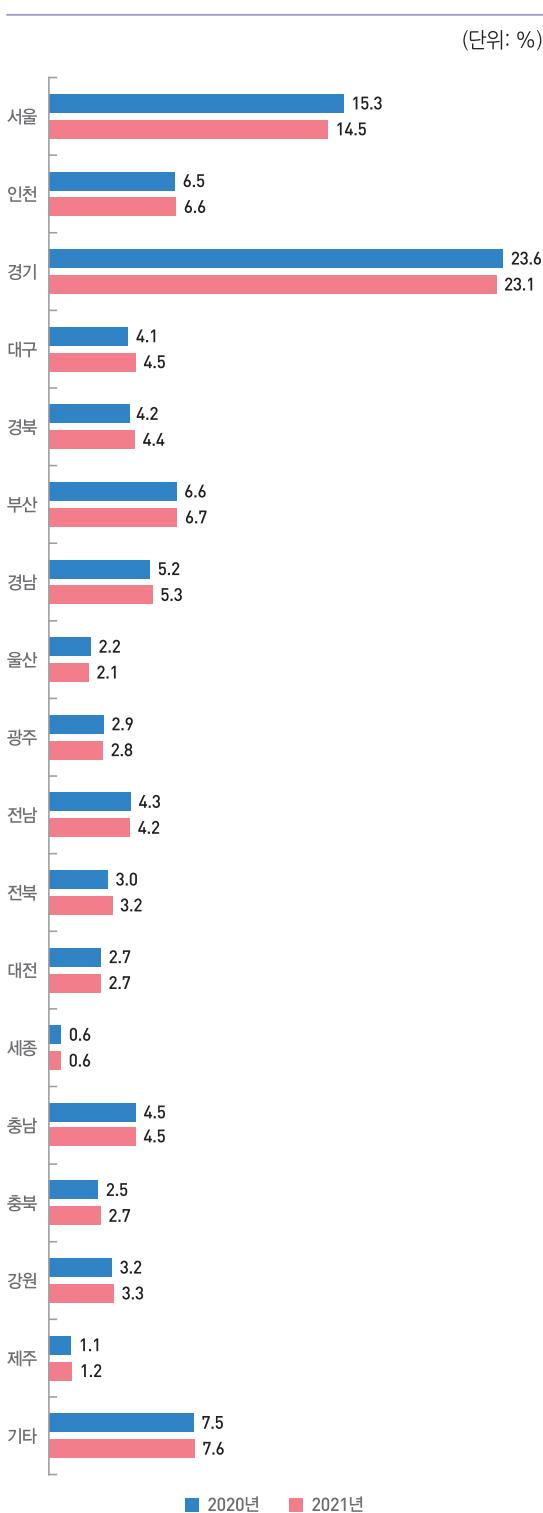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343,645	100.0	356,922	100.0	3.9
	적립일수(일, %)	18,268,540	100.0	17,390,621	100.0	-4.8
보통인부	적립근로자수(명, %)	131,797	38.4	143,256	40.1	8.7
	적립일수(일, %)	5,533,384	30.3	5,687,045	32.7	2.8
형틀목공	적립근로자수(명, %)	27,190	7.9	29,919	8.4	10.0
	적립일수(일, %)	1,810,453	9.9	1,901,240	10.9	5.0
철근공	적립근로자수(명, %)	13,706	4.0	15,660	4.4	14.3
	적립일수(일, %)	833,286	4.6	830,064	4.8	-0.4
배관공	적립근로자수(명, %)	18,969	5.5	16,852	4.7	-11.2
	적립일수(일, %)	1,539,167	8.4	1,298,791	7.5	-15.6
비계공	적립근로자수(명, %)	4,593	1.3	4,036	1.1	-12.1
	적립일수(일, %)	281,155	1.5	203,930	1.2	-27.5
조적공	적립근로자수(명, %)	4,453	1.3	3,988	1.1	-10.4
	적립일수(일, %)	250,211	1.4	224,574	1.3	-10.2
기타	적립근로자수(명, %)	142,937	41.6	143,211	40.1	0.2
	적립일수(일, %)	8,020,884	43.9	7,244,977	41.7	-9.7

4)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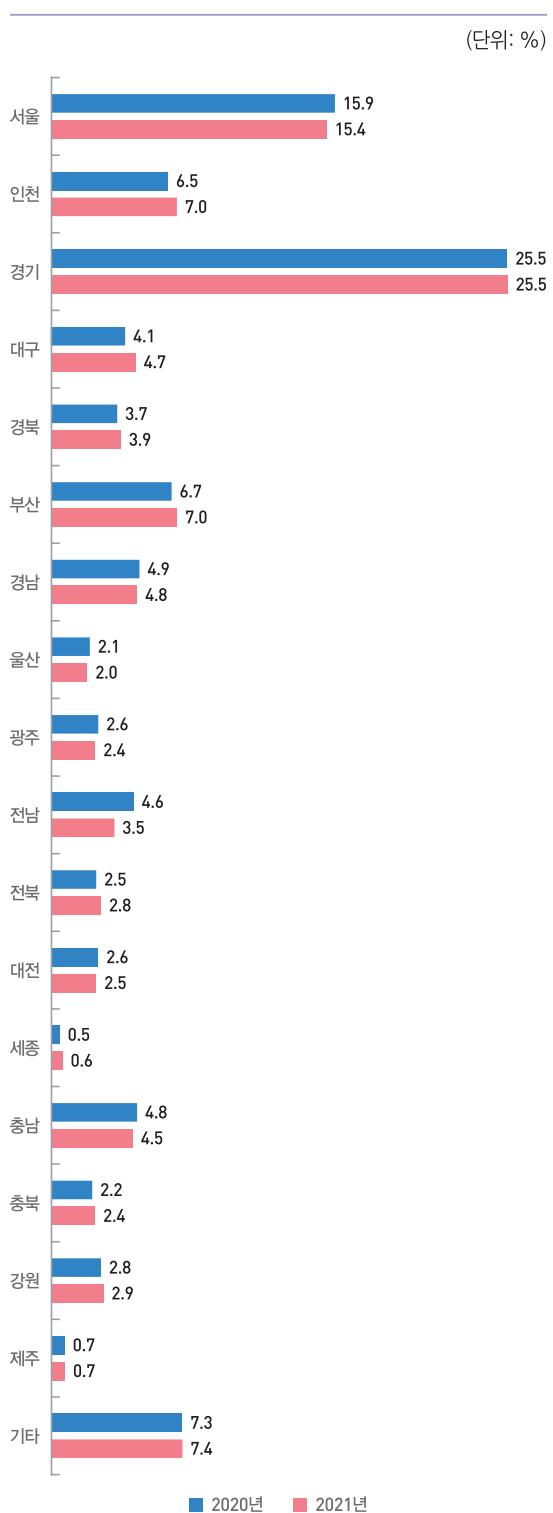
2021년도 신규 가입 피공제자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경기 23.1%(82,551명), 서울 14.5%(51,703명), 부산 6.7%(23,888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 역시 경기 25.5%(444만 일), 서울 15.4%(268만 일), 부산 7.0%(122만 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대구(12.5%)와 제주(11.7%), 충북(10.4%), 전북(10.2%) 등의 순으로 증가하였고, 울산(-3.1%)과 서울(-1.6%)에서 감소하였다. 적립일수는 대구(9.5%), 전북(6.5%), 인천(2.5%), 경북(1.5%)등 순으로 증가하였고, 전남(-27.4%)과 광주(-10.6%), 울산(-10.5%)등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34] 지역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그림 35] 지역별 신규 적립일수



<표 59> 지역별 신규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적립근로자수 (명, %)		적립일수 (만 일, %)		적립근로자수 (명, %)		적립일수 (만 일, %)		적립 근로자수 (%)	적립일수 (%)
계	343,645	100.0	1,827	100.0	356,922	100.0	1,739	100.0	3.9	-4.8
서울	52,569	15.3	290	15.9	51,703	14.5	268	15.4	-1.6	-7.6
인천	22,349	6.5	119	6.5	23,576	6.6	122	7.0	5.5	2.5
경기	81,019	23.6	466	25.5	82,551	23.1	444	25.5	1.9	-4.7
대구	14,174	4.1	74	4.1	15,952	4.5	81	4.7	12.5	9.5
경북	14,455	4.2	67	3.7	15,703	4.4	68	3.9	8.6	1.5
부산	22,559	6.6	123	6.7	23,888	6.7	122	7.0	5.9	-0.8
경남	17,959	5.2	89	4.9	19,014	5.3	83	4.8	5.9	-6.7
울산	7,606	2.2	38	2.1	7,371	2.1	34	2.0	-3.1	-10.5
광주	9,818	2.9	47	2.6	9,910	2.8	42	2.4	0.9	-10.6
전남	14,733	4.3	84	4.6	15,137	4.2	61	3.5	2.7	-27.4
전북	10,475	3.0	46	2.5	11,548	3.2	49	2.8	10.2	6.5
대전	9,274	2.7	47	2.6	9,484	2.7	43	2.5	2.3	-8.5
세종	2,011	0.6	10	0.5	2,171	0.6	10	0.6	8.0	0.0
충남	15,439	4.5	87	4.8	16,174	4.5	78	4.5	4.8	-10.3
충북	8,660	2.5	41	2.2	9,563	2.7	41	2.4	10.4	0.0
강원	11,082	3.2	51	2.8	11,813	3.3	51	2.9	6.6	0.0
제주	3,778	1.1	13	0.7	4,220	1.2	13	0.7	11.7	0.0
기타	25,685	7.5	133	7.3	27,144	7.6	129	7.4	5.7	-3.0

다. 외국인 피공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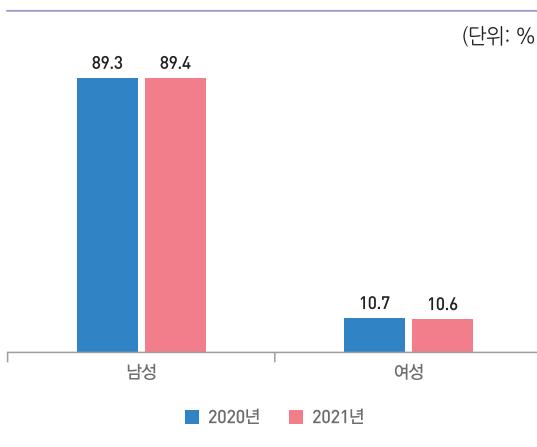
2021년의 외국인 적립근로자수는 193,585명으로서 2020년의 194,846명에 비해 0.6%가 감소했고, 적립일수는 18,557,312일로 전년도의 18,225,363일에 비해 1.8% 증가했다.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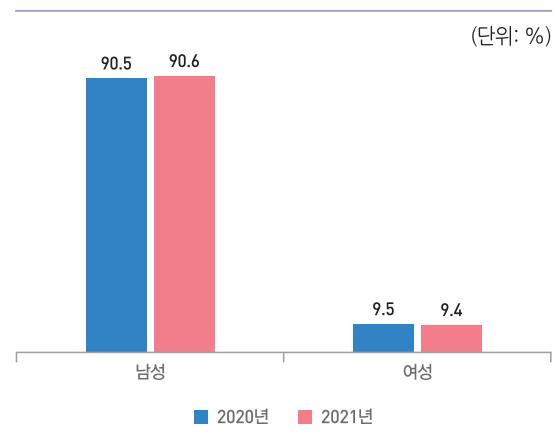
2021년도 외국인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남성 89.4%(173,090명), 여성 10.6%(20,495명)로 나타났고, 적립일수의 경우 남성 90.6%(16,809,607일), 여성 9.4%(1,747,705

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적립근로자수의 비중에 비해 적립일수의 비중이 미미하나마 더 크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0.6%, -1.3%)하였고, 적립일수는 모두 증가(1.9%, 0.7%) 하였다.

[그림 36] 성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그림 37] 성별 외국인 적립일수



<표 60>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94,846	100.0	193,585	100.0	-0.6
	적립일수(일, %)	18,225,363	100.0	18,557,312	100.0	1.8
남성	적립근로자수(명, %)	174,071	89.3	173,090	89.4	-0.6
	적립일수(일, %)	16,490,091	90.5	16,809,607	90.6	1.9
여성	적립근로자수(명, %)	20,775	10.7	20,495	10.6	-1.3
	적립일수(일, %)	1,735,272	9.5	1,747,705	9.4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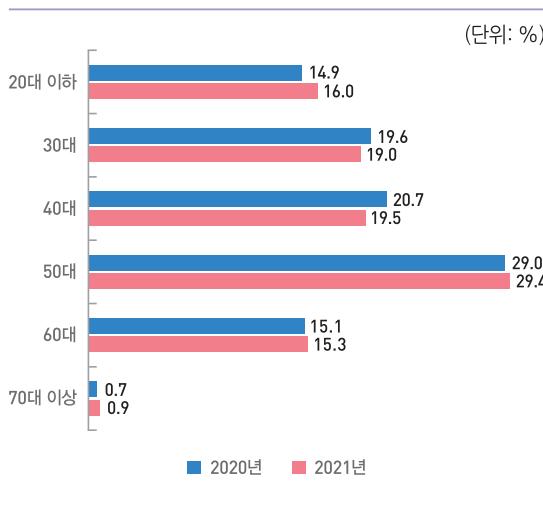
주 : 적립근로자수(적립일수)는 건설사업주의 삭감(소급)신고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이하동일)

2)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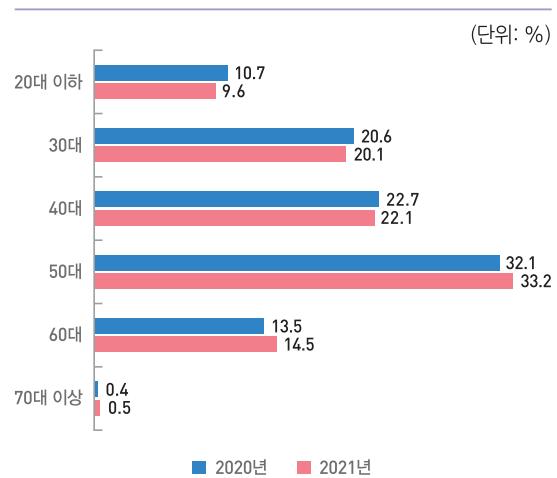
2021년도 외국인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50대 29.4% (56,888명), 40대 19.5%(37,667명), 30대 19.0%(36,789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에도 역시 50대 33.2%(6,168,521일), 40대 22.1%(4,101,533일), 30대 20.1%(3,721,168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는 5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모두 증가했고, 그 이외에서 대부분 감소하였다.(20대 이하 적립근로자수 6.4% 증가). 특히, 70대 이상(31.4%, 43.5%)에서의 증가율이 컸다.

[그림 38] 연령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그림 39] 연령별 외국인 적립일수



<표 61>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94,846	100.0	193,585	100.0	-0.6
	적립일수(일, %)	18,225,363	100.0	18,557,312	100.0	1.8
20대 이하	적립근로자수(명, %)	29,057	14.9	30,903	16.0	6.4
	적립일수(일, %)	1,953,713	10.7	1,781,530	9.6	-8.8
30대	적립근로자수(명, %)	38,223	19.6	36,789	19.0	-3.8
	적립일수(일, %)	3,751,671	20.6	3,721,168	20.1	-0.8
40대	적립근로자수(명, %)	40,382	20.7	37,667	19.5	-6.7
	적립일수(일, %)	4,141,042	22.7	4,101,533	22.1	-1.0
50대	적립근로자수(명, %)	56,434	29.0	56,888	29.4	0.8
	적립일수(일, %)	5,858,583	32.1	6,168,521	33.2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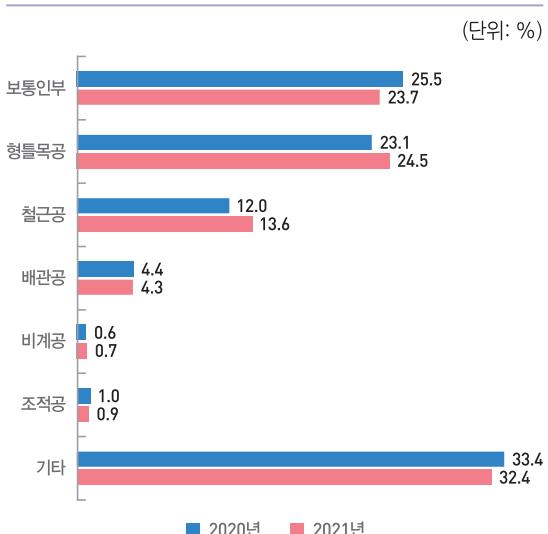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60대	적립근로자수(명, %)	29,435	15.1	29,610	15.3	0.6
	적립일수(일, %)	2,453,618	13.5	2,688,767	14.5	9.6
70대 이상	적립근로자수(명, %)	1,315	0.7	1,728	0.9	31.4
	적립일수(일, %)	66,736	0.4	95,793	0.5	43.5

3) 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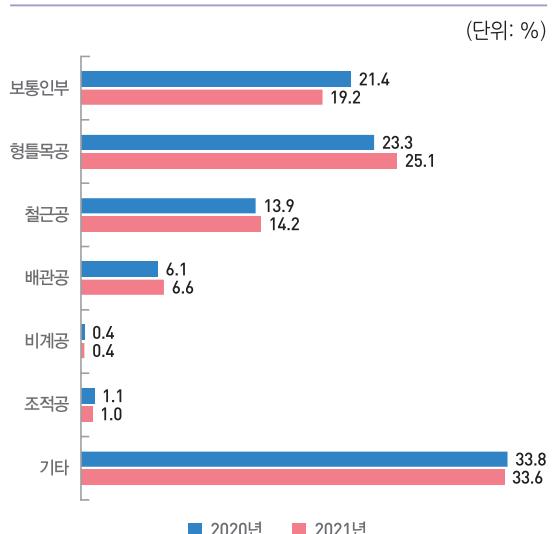
2021년도 외국인의 주요 6개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형틀목공 24.5%(47,338명), 보통인부 23.7%(45,868명), 철근공 13.6%(26,353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 형틀목공 25.1% (4,651,398일), 보통인부 19.2%(3,559,663일), 철근공 14.2%(2,638,333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철근공(13.0%), 비계공(11.2%), 형틀목공(5.4%) 등의 순으로 증가했고, 적립일수의 경우 형틀목공(9.5%), 배관공(9.5%), 비계공(4.8%)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그림 40] 직종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그림 41] 직종별 외국인 적립일수



<표 62>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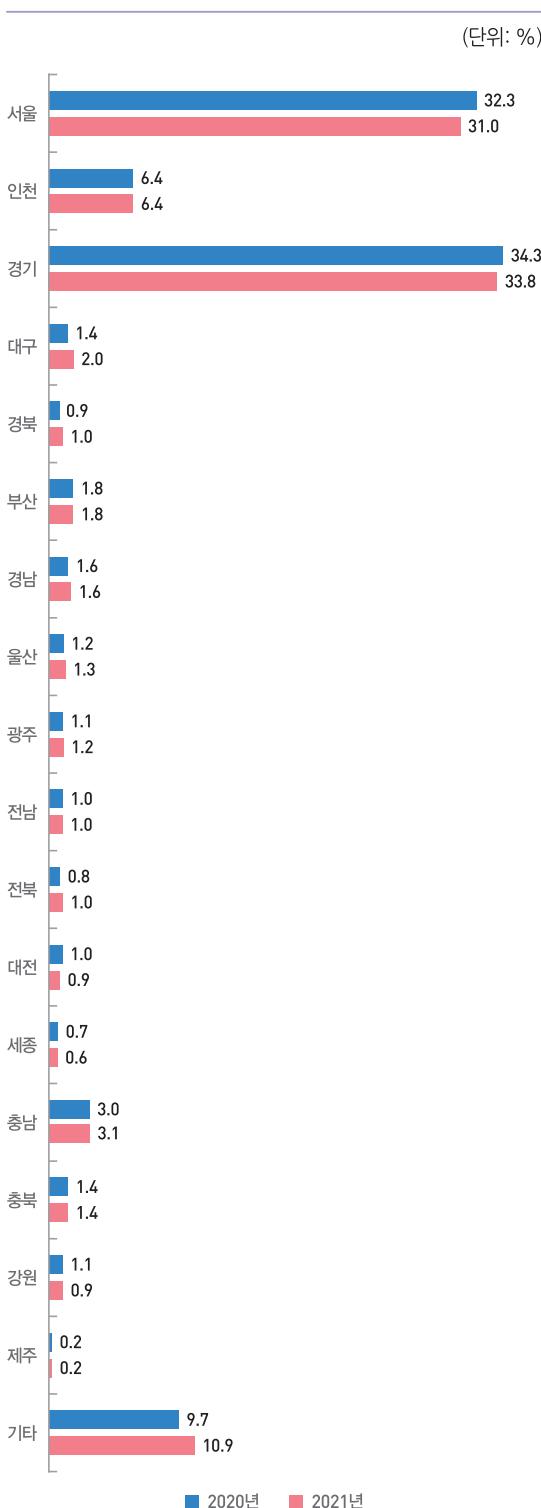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94,846	100.0	193,585	100.0	-0.6
	적립일수(일, %)	18,225,363	100.0	18,557,312	100.0	1.8
보통인부	적립근로자수(명, %)	49,742	25.5	45,868	23.7	-7.8
	적립일수(일, %)	3,906,873	21.4	3,559,663	19.2	-8.9
형틀목공	적립근로자수(명, %)	44,931	23.1	47,338	24.5	5.4
	적립일수(일, %)	4,249,090	23.3	4,651,398	25.1	9.5
철근공	적립근로자수(명, %)	23,324	12.0	26,353	13.6	13.0
	적립일수(일, %)	2,524,952	13.9	2,638,333	14.2	4.5
배관공	적립근로자수(명, %)	8,614	4.4	8,352	4.3	-3.0
	적립일수(일, %)	1,112,942	6.1	1,218,485	6.6	9.5
비계공	적립근로자수(명, %)	1,219	0.6	1,355	0.7	11.2
	적립일수(일, %)	69,411	0.4	72,771	0.4	4.8
조작공	적립근로자수(명, %)	1,913	1.0	1,681	0.9	-12.1
	적립일수(일, %)	196,122	1.1	185,501	1.0	-5.4
기타	적립근로자수(명, %)	65,103	33.4	62,638	32.4	-3.8
	적립일수(일, %)	6,165,973	33.8	6,231,161	33.6	1.1

4)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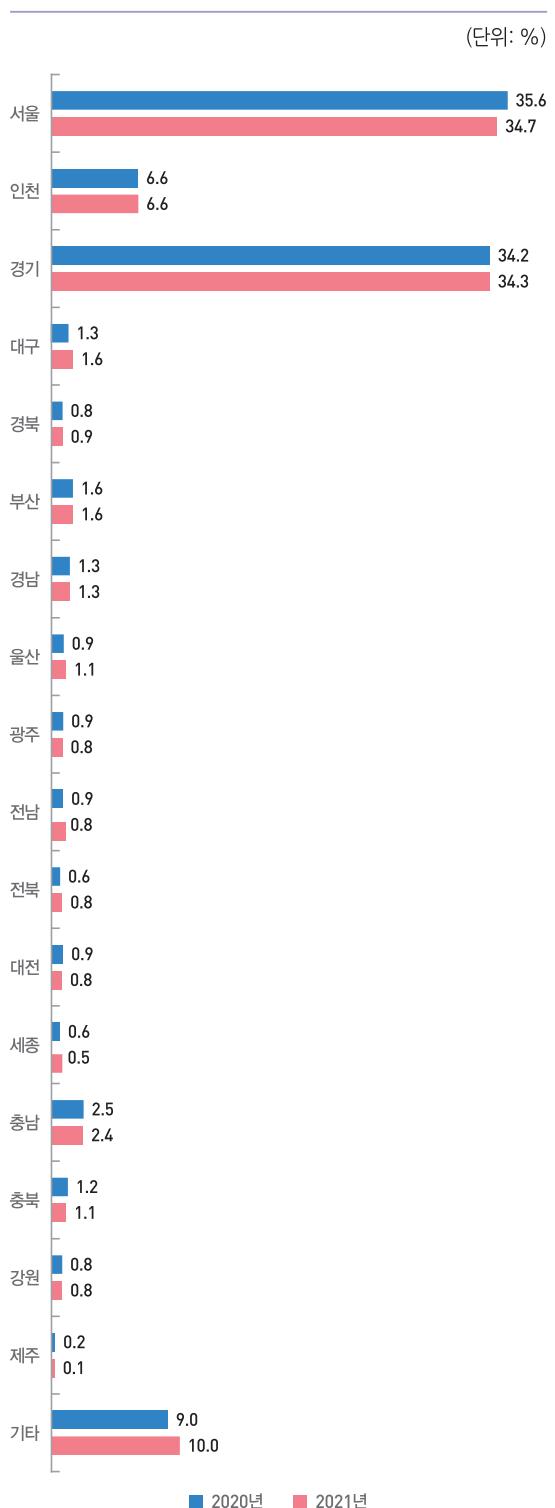
2021년도 외국인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경기 33.8%(65,366명), 서울 31.0%(59,969명), 인천 6.4%(12,400명), 충남 3.1%(5,98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적립일수의 경우 서울 34.7%(644만 일), 경기 34.3%(636만 일), 인천 6.6%(123만 일), 충남 2.4%(45만 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대구(35.9%), 전북(24.3%), 경북(12.7%) 등에서의 증가가 커졌고, 적립일수는 전북(27.3%), 대구(26.1%), 울산(23.5%)에서의 증가가 커졌다.

[그림 42] 지역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그림 43] 지역별 외국인 적립일수



<표 63>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적립근로자수 (명, %)		적립일수 (만 일, %)		적립근로자수 (명, %)		적립일수 (만 일, %)		적립 근로자수 (%)	적립일수 (%)
계	194,846	100.0	1,823	100.0	193,585	100.0	1,856	100.0	-0.6	1.8
서울	62,939	32.3	649	35.6	59,969	31.0	644	34.7	-4.7	-0.8
인천	12,563	6.4	121	6.6	12,400	6.4	123	6.6	-1.3	1.7
경기	66,749	34.3	624	34.2	65,366	33.8	636	34.3	-2.1	1.9
대구	2,822	1.4	23	1.3	3,834	2.0	29	1.6	35.9	26.1
경북	1,763	0.9	15	0.8	1,987	1.0	16	0.9	12.7	6.7
부산	3,456	1.8	30	1.6	3,440	1.8	29	1.6	-0.5	-3.3
경남	3,077	1.6	24	1.3	3,087	1.6	24	1.3	0.3	0.0
울산	2,271	1.2	17	0.9	2,477	1.3	21	1.1	9.1	23.5
광주	2,192	1.1	16	0.9	2,242	1.2	15	0.8	2.3	-6.3
전남	1,928	1.0	16	0.9	1,939	1.0	14	0.8	0.6	-12.5
전북	1,554	0.8	11	0.6	1,931	1.0	14	0.8	24.3	27.3
대전	2,020	1.0	16	0.9	1,689	0.9	14	0.8	-16.4	-12.5
세종	1,364	0.7	11	0.6	1,255	0.6	10	0.5	-8.0	-9.1
충남	5,903	3.0	45	2.5	5,989	3.1	45	2.4	1.5	0.0
충북	2,779	1.4	21	1.2	2,681	1.4	20	1.1	-3.5	-4.8
강원	2,051	1.1	15	0.8	1,804	0.9	14	0.8	-12.0	-6.7
제주	457	0.2	3	0.2	355	0.2	2	0.1	-22.3	-33.3
기타	18,958	9.7	164	9.0	21,140	10.9	185	10.0	11.5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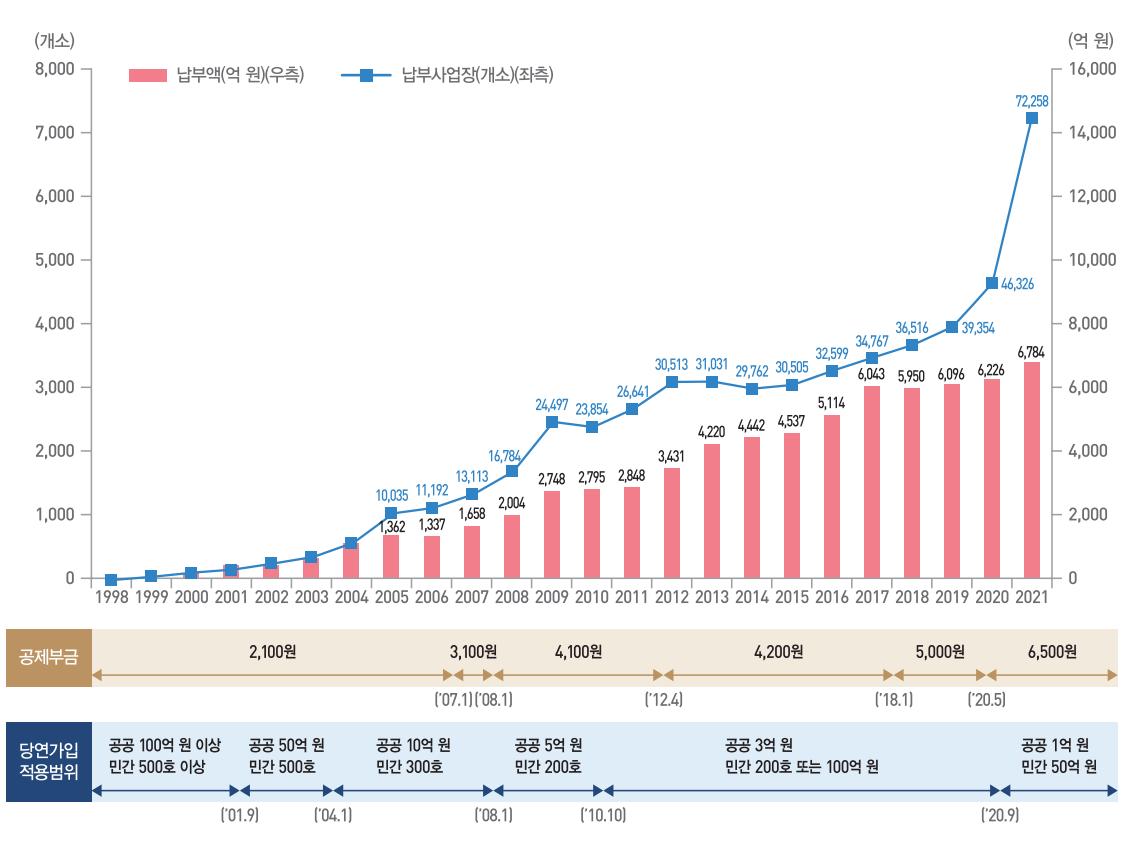
3 공제부금 납부

1998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도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흐름 중 납부사업장 수와 납부액 규모가 이전 흐름에 비해 크게 비약하는 시점이 2009년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적용범위 확대와 공제부금의 인상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에 16,784개소이던 사업장 수가 2009년에는 24,497개소로 전년 대비 46.0%가 증가했고, 동 시기에 납부액은 2,004억 원에서 2,748억 원으로 37.1%가 급증했다.

2013년 이후에는 대체로 건설기성의 증가에 따라 납부사업장과 납부액이 동반 증가했는데 다만, 2014년의 경우 사업장 수는 줄었는데 납부액은 늘었고, 2018년에는 사업장 수는 늘었으나 납부액은 감소했다. 2021년에는 사업장 수가 72,258개소로 전년대비 55.9%나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납부액은 6,784억 원으로 9.0%로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사(공공 1억 원 이상, 민간 50억 원 이상)로까지 확대되어 사업장은 많이 증가한 대신 사업장당 납부액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누계는 각각 524,413개소와 7조 621억 원이고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3백만 원이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998년의 3백만 원에서 시작해 2000년에는 25백만 원까지 상승했으나,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친 중소규모 현장으로까지의 당연가입 적용범위 확대와 경기부진의 여파 등이 겹치면서 2011년에는 11백만 원까지 감소했고, 다시 제도의 정착과 공제부금 일액의 인상으로 증가해 2017년에는 17백만 원에 이르렀다. 2021년에는 또 다시 당연가입 적용범위의 확대로 소규모 현장 가입이 늘면서 9백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44] 연도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1998~2021)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표 64> 연도별 퇴직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1998~2021)

연도	납부사업장 (개소)(A)	납부액 (억 원)(B)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 (백만 원)(B/A)
총합계	524,413	70,621	13
1998	32	1	3
1999	443	72	16
2000	1,074	266	25
2001	1,661	409	25
2002	2,352	470	20
2003	3,296	694	21
2004	5,808	1,115	19
2005	10,035	1,362	14
2006	11,192	1,337	12
2007	13,113	1,658	13
2008	16,784	2,004	12
2009	24,497	2,748	11
2010	23,854	2,795	12
2011	26,641	2,848	11
2012	30,513	3,431	11
2013	31,031	4,220	14
2014	29,762	4,442	15
2015	30,505	4,537	15
2016	32,599	5,114	16
2017	34,767	6,043	17
2018	36,516	5,950	16
2019	39,354	6,096	15
2020	46,326	6,226	13
2021	72,258	6,784	9

가. 기본 특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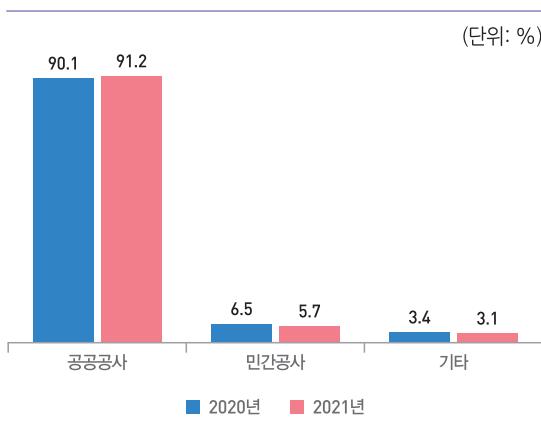
2021년의 퇴직공제부금 납부사업장은 72,258개소로서 2020년의 46,326개소에 비해 크게 증가(56.0%)한 것에 비해, 납부액은 6,784억 원으로 전년도의 6,226억 원 대비 9.0%증가했으며,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9.4백만 원으로 전년도의 13.4백만 원 대비 30.1% 감소했다.

1) 공사유형별(공공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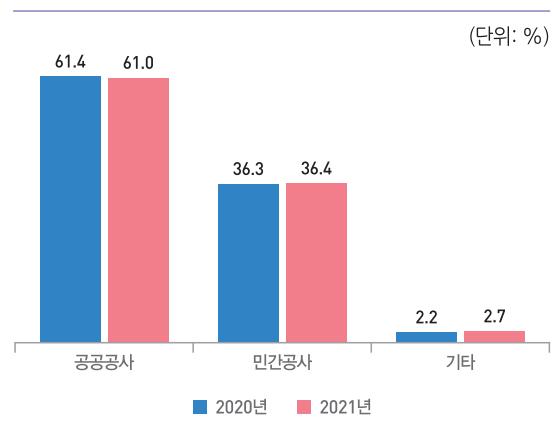
2021년도 퇴직공제부금 납부의 공사유형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공공공사 91.2%(65,924개소), 민간공사 5.7%(4,101개소)로 나타났고, 납부액의 경우 공공공사 61.0%(4,135 억 원), 민간공사 36.4%(2,469억 원)로 나타났다. 공공공사의 경우 납부사업장은 많으나 상대적으로 납부액이 적은 것은 소규모 현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납부사업장과 납부액 순으로 살펴보면, 공공공사의 경우 각각 58.0%와 8.2% 증가했고, 그리고 민간공사의 경우 36.8%와 9.1% 증가하였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공공공사의 경우 31.5% 감소했고, 민간공사의 경우 20.2% 감소했다.

[그림 45] 공사유형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그림 46] 공사유형별 공제부금 납부액



<표 65> 공사유형별 퇴직공제부금 납부 현황

구분		2020		2021		전년대비 증감률(%)
계	납부사업장(개소, %)	46,326	100.0	72,258	100.0	56.0
	납부액(억 원, %)	6,226	100.0	6,784	100.0	9.0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3.4		9.4	-30.1
공공공사	납부사업장(개소, %)	41,731	90.1	65,924	91.2	58.0
	납부액(억 원, %)	3,823	61.4	4,135	61.0	8.2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9.2		6.3	-31.5
민간공사	납부사업장(개소, %)	2,998	6.5	4,101	5.7	36.8
	납부액(억 원, %)	2,263	36.3	2,469	36.4	9.1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75.5		60.2	-20.2
기타	납부사업장(개소, %)	1,597	3.4	2,233	3.1	39.8
	납부액(억 원, %)	140	2.2	180	2.7	28.4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8.8		8.1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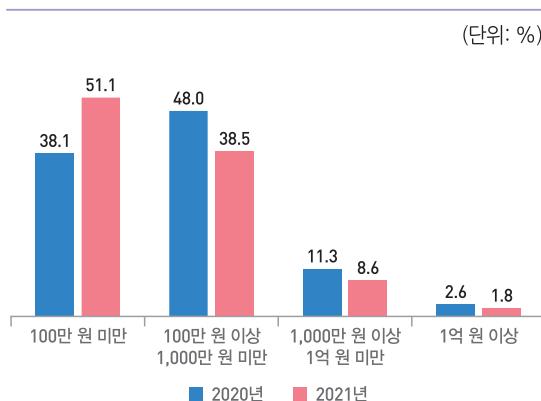
주 : 추출기준의 변경으로 2019년 전·후를 시계열로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이하동일)

2) 납부액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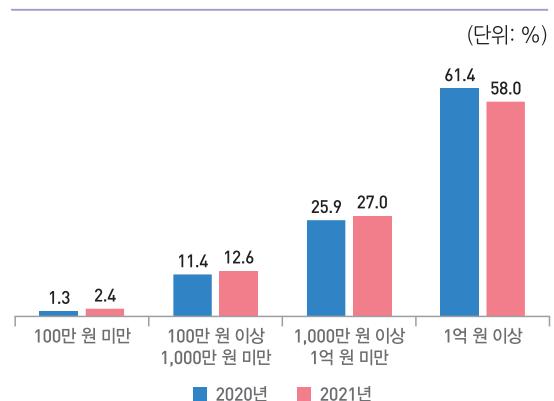
2021년도 퇴직공제부금의 납부액 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100만 원 미만 51.1%(36,904개소),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38.5%(27,810개소),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8.6%(6,208개소)로 나타났고, 납부액의 경우 1억 원 이상 58.0%(3,932억 원),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7.0%(1,835억 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12.6%(857억 원)로 나타났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억 원 이상 2억 94.3백만 원,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9.6백만 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3.1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납부사업장과 납부액 모두 증가하였는데 100만 원 미만 (109.0%, 102.2%)에서의 증가율이 가장 컸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모두 감소하였는데 1억 원 이상(-8.1%)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그림 47] 납부액 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그림 48] 납부액 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액



<표 66> 납부액 규모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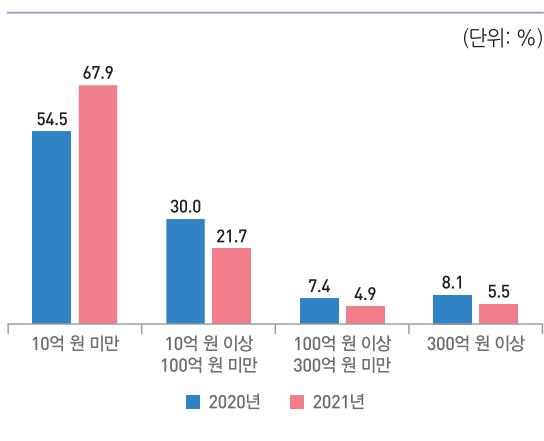
구분		2020		2021		전년대비 증감률(%)
계	납부사업장(개소, %)	46,326	100.0	72,258	100.0	56.0
	납부액(억 원, %)	6,226	100.0	6,784	100.0	9.0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3.4		9.4	-30.1
100만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17,660	38.1	36,904	51.1	109.0
	납부액(억 원, %)	79	1.3	160	2.4	102.2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0.4		0.4	-3.2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22,245	48.0	27,810	38.5	25.0
	납부액(억 원, %)	712	11.4	857	12.6	20.4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3.2		3.1	-3.7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5,228	11.3	6,208	8.6	18.7
	납부액(억 원, %)	1,613	25.9	1,835	27.0	13.8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30.9		29.6	-4.2
1억 원 이상	납부사업장(개소, %)	1,193	2.6	1,336	1.8	12.0
	납부액(억 원, %)	3,823	61.4	3,932	58.0	2.9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320.4		294.3	-8.1

3) 공사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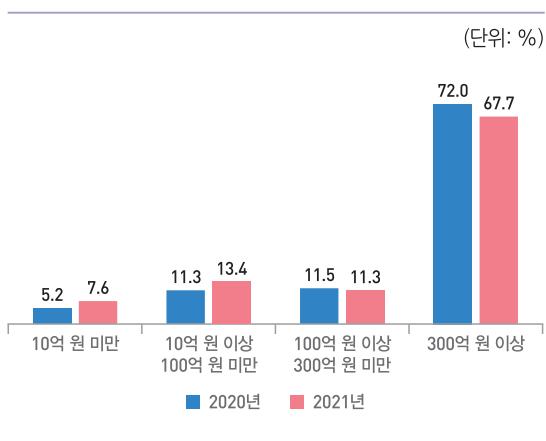
2021년도 퇴직공제부금 납부의 공사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10억 원 미만 67.9%(49,028개소),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21.7%(15,658개소), 300억 원 이상 5.5%(3,998 개소)로 나타났고, 납부액의 경우 300억 원 이상 67.7%(4,594억 원),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3.4%(910억 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1.3%(764억 원)로 나타났다. 대체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개수는 많으나 납부액은 적다. 이러한 경향은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에 명확히 드러나는데, 300억 원 이상 114.9백만 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1.4백만 원,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5.8백만 원 등으로 나타나 격차가 컸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납부사업장과 납부액 모두 10억 원 미만(94.3%, 59.8%), 10 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12.6%, 29.6%)에서 증가가 컸다. 사업장 평균 납부액의 경우 10억 원 이 상 100억 원 미만(15.1%)과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2.4%)에서 증가한 반면, 10억 원 미만 (-17.8%)과 300억 원 이상(-3.8%)에서는 감소하였다.

[그림 49]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그림 50]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액



<표 67>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계	납부사업장(개소, %)	46,326	100.0	72,258	100.0	56.0
	납부액(억 원, %)	6,226	100.0	6,784	100.0	9.0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3.4		9.4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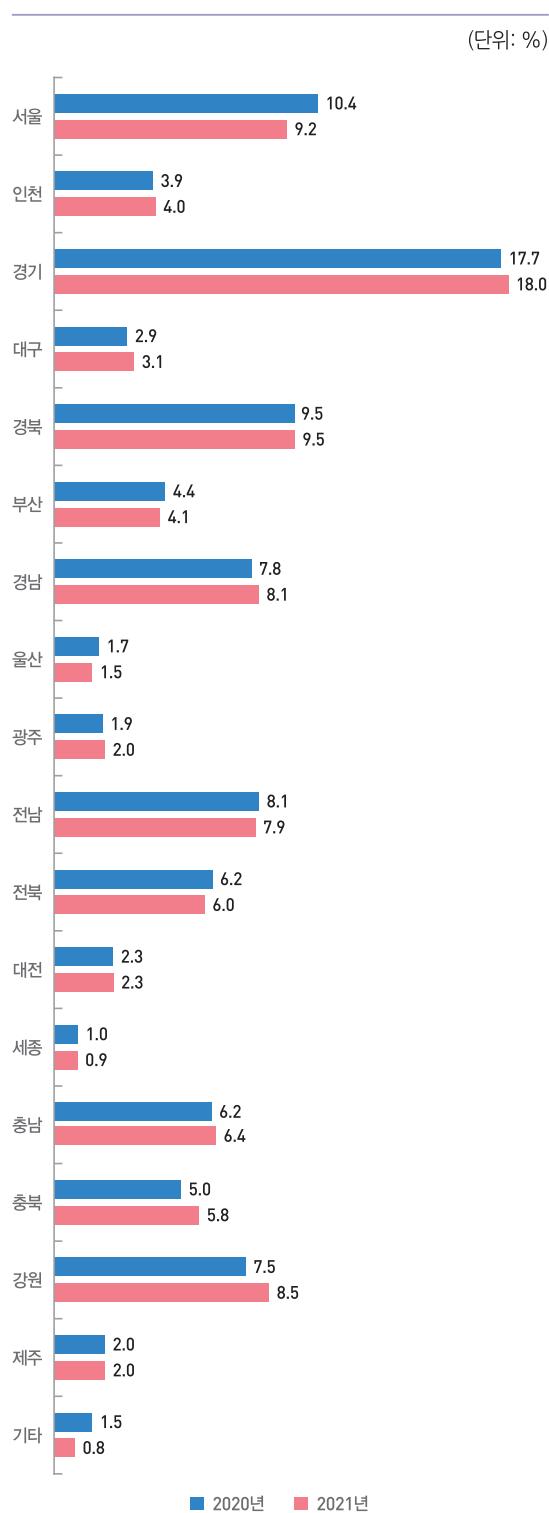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10억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25,228	54.5	49,028	67.9	94.3
	납부액(억 원, %)	323	5.2	516	7.6	59.8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3		1.1	-17.8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13,908	30.0	15,658	21.7	12.6
	납부액(억 원, %)	702	11.3	910	13.4	29.6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5.0		5.8	15.1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3,437	7.4	3,574	4.9	4.0
	납부액(억 원, %)	718	11.5	764	11.3	6.5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20.9		21.4	2.4
300억 원 이상	납부사업장(개소, %)	3,753	8.1	3,998	5.5	6.5
	납부액(억 원, %)	4,484	72.0	4,594	67.7	2.5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19.5		114.9	-3.8

4)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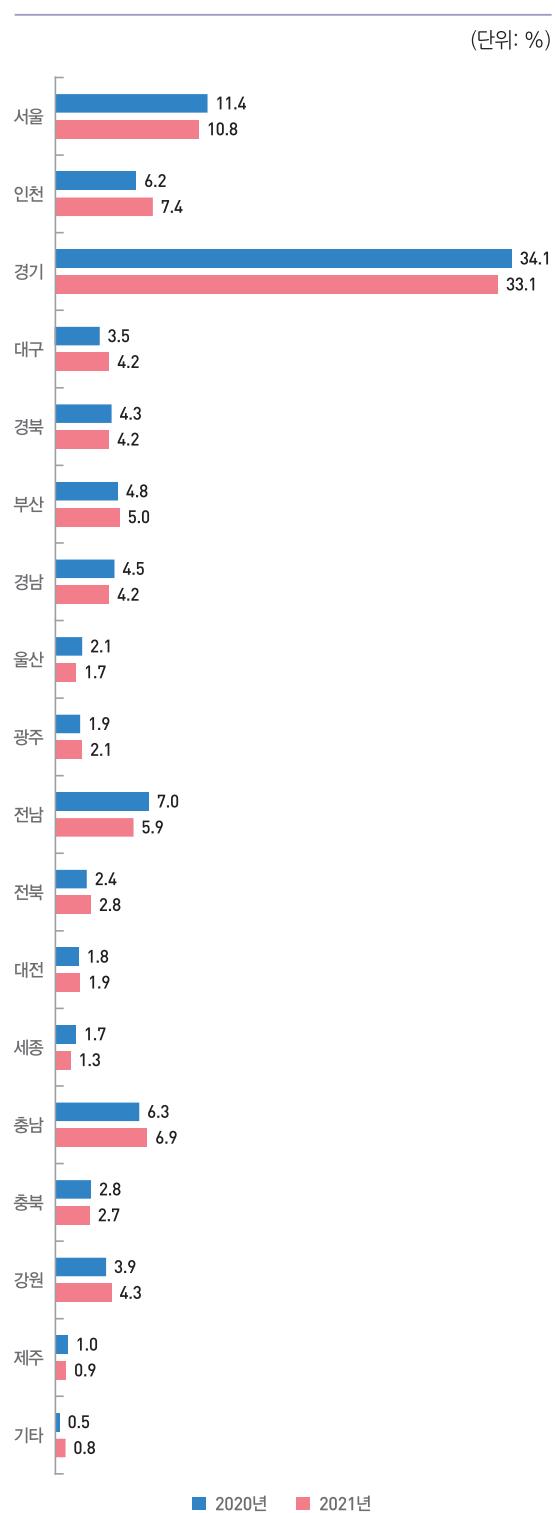
2021년도 퇴직공제부금 납부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경기 18.8%(12,978 개소), 경북 9.5%(6,871개소), 서울 9.2%(6,655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납부액의 경우 경기 33.1%(224십억 원), 서울 10.8%(73십억 원), 인천 7.4%(50십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당 평균 납부액의 순위는 달라지는데, 인천 17.5백만 원, 경기 17.3백만 원, 세종 13.8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충북(79.9%), 강원(75.2%), 대구(70.1%)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컼고, 납부액의 경우에는 대구(33.1%), 인천(30.2%), 전북(24.8%)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모두 감소하였는데 제주(-41.7%)의 감소가 가장 컸다.

[그림 51]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그림 52]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액



<표 68>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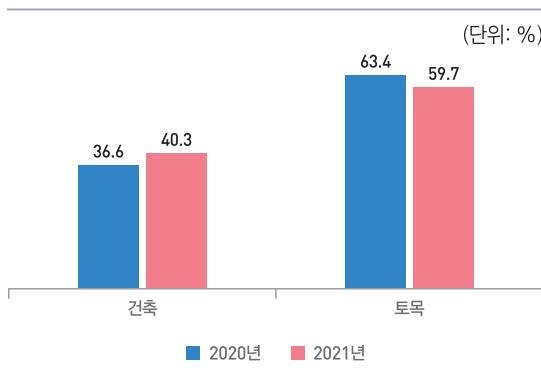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납부사업장 (개소,%)	납부액 (십억 원, %)	평균 납부액 (백만 원)	납부사업장 (개소,%)	납부액 (십억 원, %)	평균 납부액 (백만 원)	납부 사업장 (%)	납부액 (%)	평균 납부액 (%)				
계	46,326	100.0	623	100.0	13.4	72,258	100.0	678	100.0	9.4	56.0	9.0	-30.1
서울	4,815	10.4	71	11.4	14.8	6,655	9.2	73	10.8	11.0	38.2	2.4	-25.9
인천	1,820	3.9	38	6.2	21.1	2,855	4.0	50	7.4	17.5	56.9	30.2	-17.0
경기	8,187	17.7	212	34.1	25.9	12,978	18.0	224	33.1	17.3	58.5	5.6	-33.4
대구	1,332	2.9	22	3.5	16.2	2,266	3.1	29	4.2	12.6	70.1	33.1	-21.8
경북	4,420	9.5	26	4.3	6.0	6,871	9.5	28	4.2	4.1	55.5	7.3	-31.0
부산	2,022	4.4	30	4.8	14.8	2,982	4.1	34	5.0	11.4	47.5	13.2	-23.3
경남	3,608	7.8	28	4.5	7.7	5,817	8.1	28	4.2	4.8	61.2	1.0	-37.3
울산	808	1.7	13	2.1	15.9	1,071	1.5	11	1.7	10.6	32.5	-11.9	-33.5
광주	875	1.9	12	1.9	13.2	1,437	2.0	14	2.1	9.9	64.2	22.8	-25.3
전남	3,743	8.1	44	7.0	11.6	5,744	7.9	40	5.9	6.9	53.5	-8.3	-40.2
전북	2,870	6.2	15	2.4	5.2	4,311	6.0	19	2.8	4.3	50.2	24.8	-16.9
대전	1,063	2.3	11	1.8	10.7	1,679	2.3	13	1.9	7.9	57.9	16.4	-26.3
세종	458	1.0	11	1.7	23.2	649	0.9	9	1.3	13.8	41.7	-15.3	-40.3
충남	2,851	6.2	39	6.3	13.8	4,628	6.4	47	6.9	10.1	62.3	19.2	-26.6
충북	2,312	5.0	17	2.8	7.4	4,160	5.8	19	2.7	4.5	79.9	7.6	-40.2
강원	3,493	7.5	24	3.9	6.9	6,119	8.5	29	4.3	4.8	75.2	21.6	-30.6
제주	935	2.0	6	1.0	6.8	1,462	2.0	6	0.9	4.0	56.4	-8.8	-41.7
기타	714	1.5	3	0.5	4.2	574	0.8	5	0.8	9.3	-19.6	77.2	120.4

5) 공사종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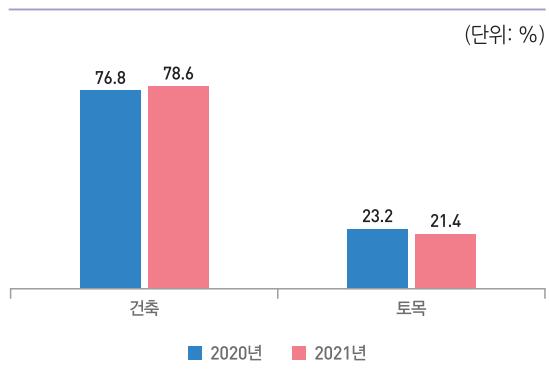
2021년도 퇴직공제부금 납부의 공사종류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토목 59.7% (43,173개소), 건축 40.3%(29,085개소)로 나타났고, 납부액의 경우 건축 78.6%(5,335억 원), 토목 21.4%(1,449억 원)로 나타났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의 경우, 건축 18.3백만 원, 토목 3.4백만 원으로 나타나 격차가 컸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납부사업장과 납부액 모두 건축(71.4%, 11.6%)과 토목(47.0%, 0.3%)에서 증가하였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의 경우 건축(-34.9%)과 토목(-31.8%) 모두에서 감소했다.

[그림 53]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그림 54]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액



<표 69>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계	납부사업장(개소, %)	46,326	100.0	72,258	100.0	56.0
	납부액(억 원, %)	6,226	100.0	6,784	100.0	9.0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3.4		9.4	-30.1
건축	납부사업장(개소, %)	16,965	36.6	29,085	40.3	71.4
	납부액(억 원, %)	4,781	76.8	5,335	78.6	11.6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28.2		18.3	-34.9
토목	납부사업장(개소, %)	29,361	63.4	43,173	59.7	47.0
	납부액(억 원, %)	1,445	23.2	1,449	21.4	0.3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4.9		3.4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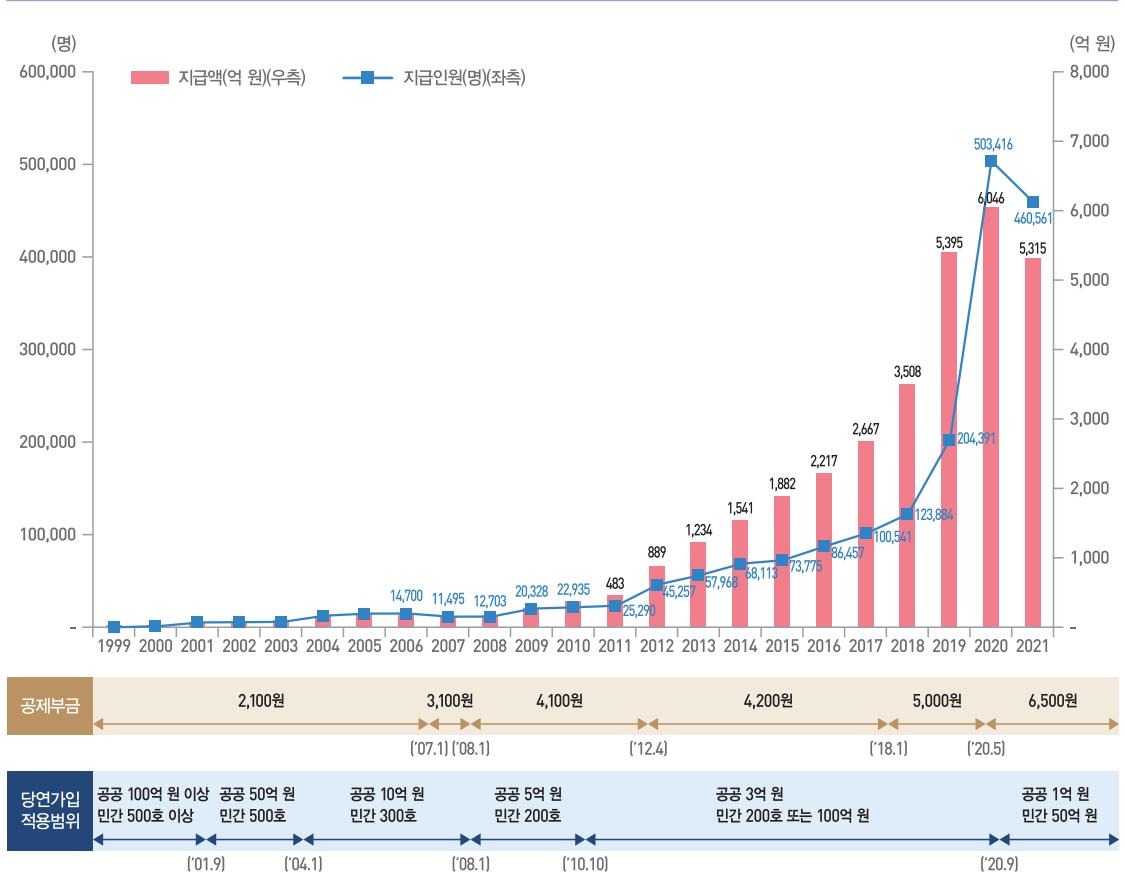
4 | 퇴직공제금 지급

1999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흐름 중 지급인원 수와 지급액 규모가 이전 흐름에 비해 크게 비약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2012년으로 보이는

데, 이것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적용범위 확대로 근로내역 신고일수의 적립이 촉진된 것과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심화 등의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에 25,290명이던 지급인원 수가 2012년에는 45,257명으로 전년 대비 79.0%가 증가했고, 동시에 지급액은 483억 원에서 889억 원으로 84.1%가 급증했다. 2021년에는 지급인원은 460,561명, 지급액은 5,315억 원으로 2020년 대비 각각 8.5%, 12.1% 감소하였다.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이 완화되어 2020년에 크게 증가한 이후 점차 안정화 되어가는 모습이다.

1999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누계는 각각 1,874,421명과 3조 2,795억 원이고, 퇴직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750천 원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999년의 558천 원으로 시작해 2002년에는 1,044천 원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고 2013년에는 2,129천 원으로 200만 원을 돌파했으며, 2018년에는 2,831천 원까지 상승했다. 2021년에는 수급요건 완화에 따라 소액의 지급인원 수가 급증해 평균 지급액은 1,154천 원으로 감소했다.

[그림 55]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1999~2021)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표 70>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1999~2021)

구분	지급인원(명)	지급액(백만 원)	평균 지급액(천 원)
총합계	1,874,421	3,279,463	1,750
1999	3	2	558
2000	638	512	803
2001	3,836	3,599	938
2002	5,046	5,268	1,044
2003	6,621	7,323	1,106
2004	11,419	12,775	1,119
2005	15,044	17,046	1,133
2006	14,700	17,905	1,218
2007	11,495	14,259	1,240
2008	12,703	16,779	1,321
2009	20,328	28,602	1,407
2010	22,935	37,773	1,647
2011	25,290	48,268	1,909
2012	45,257	88,872	1,964
2013	57,968	123,414	2,129
2014	68,113	154,102	2,262
2015	73,775	188,241	2,552
2016	86,457	221,681	2,564
2017	100,541	266,704	2,653
2018	123,884	350,765	2,831
2019	204,391	539,487	2,639
2020	503,416	604,625	1,201
2021	460,561	531,460	1,154

주 : '추가지급'은 '지급액'에서 제외되어 'Part2. 주요사업 현황'의 수치와 차이가 있음(이하 동일)

가. 특성별 분포

2021년의 퇴직공제금 지급인원은 460,561명으로서 전년도 대비 8.5%가 감소했고, 지급액은 531,460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 감소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154천 원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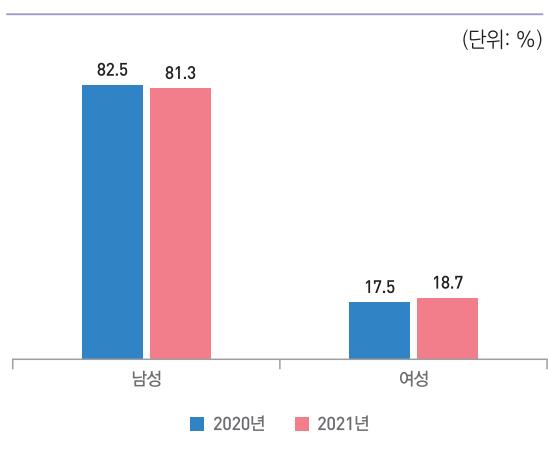
1) 성별

2021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은 남성 81.3%(374,498명), 여성 18.7%(86,063명)로 나타났고, 지급액은 남성 88.5%(470,356백만 원), 여성 11.5%(61,103백만 원)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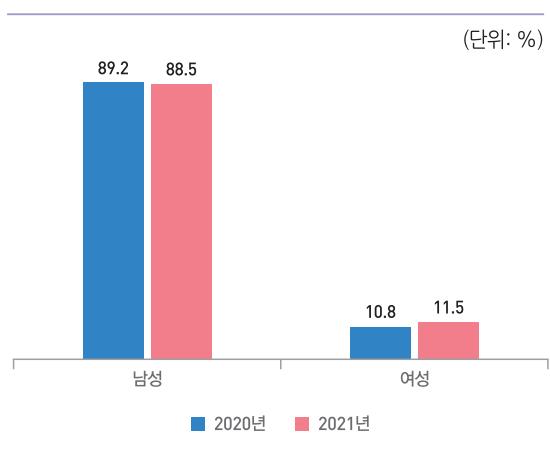
대체로 매년 남성이 차지하는 지급인원의 비중에 비해 지급액의 비중이 더 큰데, 이것은 남성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이 1,256천 원으로서 여성의 710천 원에 비해 546천 원 더 많은 데 기인한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지급인원과 지급액 모두 남성(-9.8%, -12.7%)과 여성(-2.2%, -6.8%)에서 감소하였다. 1인당 평균 지급액 감소폭은 여성(-4.7%)이 남성(-3.2%)보다 더 컸다.

[그림 56]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57]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표 71>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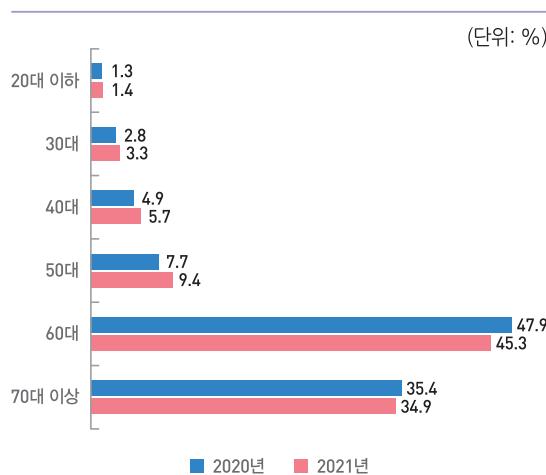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지급인원(명, %)	503,416	100.0	460,561	100.0	-8.5
	지급액(백만 원, %)	604,625	100.0	531,460	100.0	-12.1
	평균 지급액(천 원)		1,201		1,154	-3.9
남성	지급인원(명, %)	415,408	82.5	374,498	81.3	-9.8
	지급액(백만 원, %)	539,060	89.2	470,356	88.5	-12.7
	평균 지급액(천 원)		1,298		1,256	-3.2
여성	지급인원(명, %)	88,008	17.5	86,063	18.7	-2.2
	지급액(백만 원, %)	65,565	10.8	61,103	11.5	-6.8
	평균 지급액(천 원)		745		710	-4.7

2)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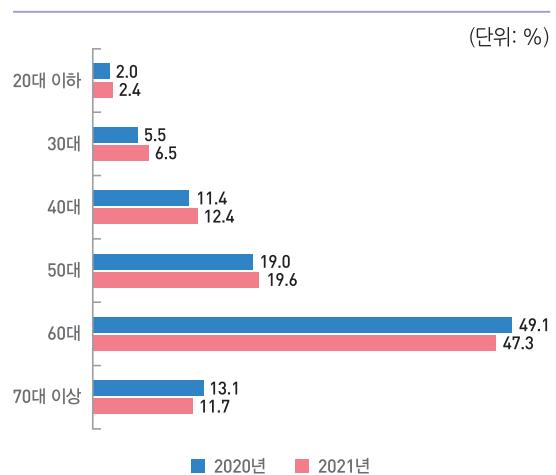
2021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60대 45.3%(208,686명), 70대 이상 34.9%(160,890명), 50대 9.4%(43,092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의 경우 60대 47.3%(251,645백만 원), 50대 19.6%(104,117백만 원), 40대 12.4%(65,759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달리, 연령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40대 2,515천 원, 50대 2,416천 원, 30대 2,291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경우 30대(6.4%, 5.2%)와 20대 이하(3.3%, 4.4%)에서 증가하였고, 70대 이상(-9.6%, -21.4%)과 60대(-13.5%, -15.2%)에서 감소하였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50대(-18.5%)의 감소율이 컸다.

[그림 58]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59]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표 72>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지급인원(명, %)	503,416	100.0	460,561	100.0	-8.5
	지급액(백만 원, %)	604,625	100.0	531,460	100.0	-12.1
	평균 지급액(천 원)		1,201		1,154	-3.9
20대 이하	지급인원(명, %)	6,387	1.3	6,595	1.4	3.3
	지급액(백만 원, %)	12,331	2.0	12,875	2.4	4.4
	평균 지급액(천 원)		1,931		1,952	1.1
30대	지급인원(명, %)	14,242	2.8	15,147	3.3	6.4
	지급액(백만 원, %)	32,994	5.5	34,704	6.5	5.2
	평균 지급액(천 원)		2,317		2,291	-1.1
40대	지급인원(명, %)	24,799	4.9	26,151	5.7	5.5
	지급액(백만 원, %)	68,764	11.4	65,759	12.4	-4.4
	평균 지급액(천 원)		2,773		2,515	-9.3
50대	지급인원(명, %)	38,641	7.7	43,092	9.4	11.5
	지급액(백만 원, %)	114,603	19.0	104,117	19.6	-9.2
	평균 지급액(천 원)		2,966		2,416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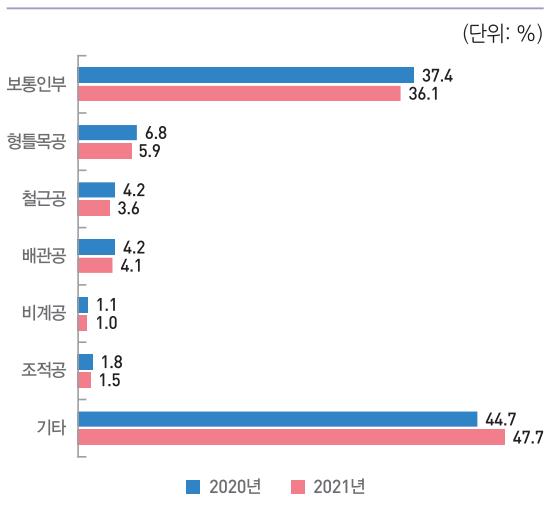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60대	지급인원(명, %)	241,387	47.9	208,686	45.3	-13.5
	지급액(백만 원, %)	296,630	49.1	251,645	47.3	-15.2
	평균 지급액(천 원)		1,229		1,206	-1.9
70대 이상	지급인원(명, %)	177,960	35.4	160,890	34.9	-9.6
	지급액(백만 원, %)	79,302	13.1	62,359	11.7	-21.4
	평균 지급액(천 원)		446		388	-13.0

3) 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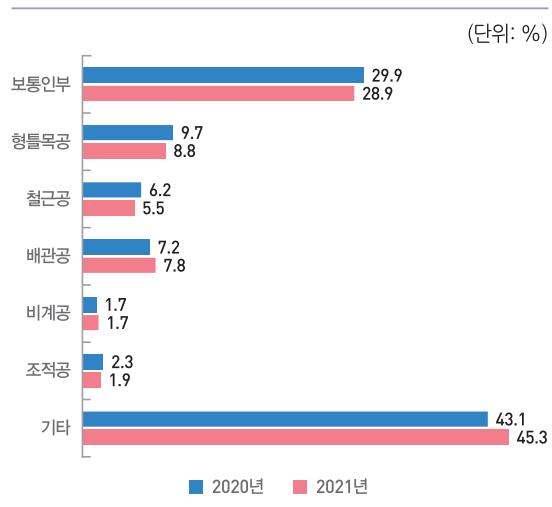
2021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상위 6개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보통인부 36.1%(166,395명), 형틀목공 5.9%(27,317명), 배관공 4.1%(18,854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의 경우 역시 보통인부 28.9%(153,451백만 원), 형틀목공 8.8% (46,728백만 원), 배관공 7.8%(41,574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직종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 배관공 2,205천 원, 비계공 1,908천 원, 철근공 1,784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경우 조적공(-21.7%, -24.9%)과 철근공(-21.2%, -21.9%)의 감소가 컸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배관공(6.4%)과 비계공(1.8%)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였다.

[그림 60]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61]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표 73>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지급인원(명, %)	503,416	100.0	460,561	100.0	-8.5
	지급액(백만 원, %)	604,625	100.0	531,460	100.0	-12.1
	평균 지급액(천 원)		1,201		1,154	-3.9
보통인부	지급인원(명, %)	188,221	37.4	166,395	36.1	-11.6
	지급액(백만 원, %)	180,492	29.9	153,451	28.9	-15.0
	평균 지급액(천 원)		959		922	-3.8
형틀목공	지급인원(명, %)	34,202	6.8	27,317	5.9	-20.1
	지급액(백만 원, %)	58,883	9.7	46,728	8.8	-20.6
	평균 지급액(천 원)		1,722		1,711	-0.6
철근공	지급인원(명, %)	20,950	4.2	16,519	3.6	-21.2
	지급액(백만 원, %)	37,712	6.2	29,466	5.5	-21.9
	평균 지급액(천 원)		1,800		1,784	-0.9
배관공	지급인원(명, %)	20,927	4.2	18,854	4.1	-9.9
	지급액(백만 원, %)	43,355	7.2	41,574	7.8	-4.1
	평균 지급액(천 원)		2,072		2,205	6.4
비계공	지급인원(명, %)	5,332	1.1	4,708	1.0	-11.7
	지급액(백만 원, %)	9,991	1.7	8,984	1.7	-10.1
	평균 지급액(천 원)		1,874		1,908	1.8
조적공	지급인원(명, %)	8,893	1.8	6,962	1.5	-21.7
	지급액(백만 원, %)	13,653	2.3	10,253	1.9	-24.9
	평균 지급액(천 원)		1,535		1,473	-4.1
기타	지급인원(명, %)	224,891	44.7	219,806	47.7	-2.3
	지급액(백만 원, %)	260,539	43.1	241,005	45.3	-7.5
	평균 지급액(천 원)		1,159		1,096	-5.4

4) 적립일수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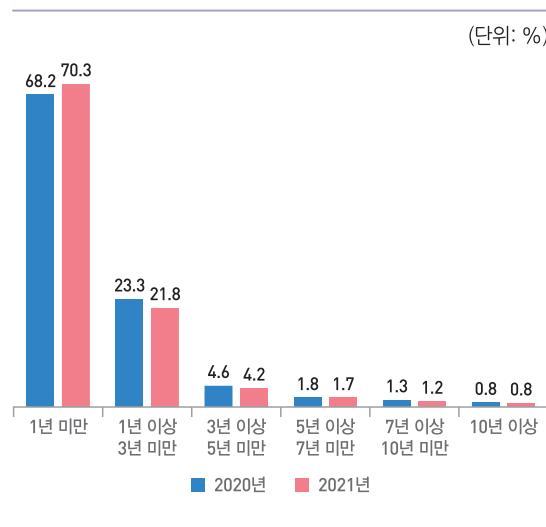
2021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적립일수 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수급요건 완화의 영향으로 1년 미만 70.3%(323,962명), 1년 이상 3년 미만 21.8%(100,430명), 3년 이상 5년 미만

4.2%(19,42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지급액의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 35.2%(186,829백만 원), 1년 미만 19.8%(105,357백만 원), 3년 이상 5년 미만 15.9%(84,351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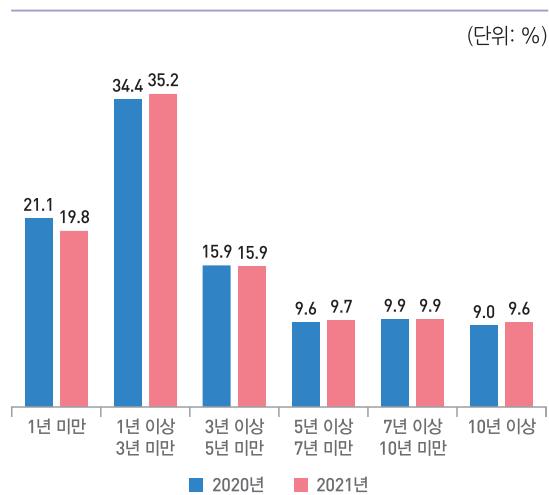
퇴직공제제도가 건설근로자의 노후대책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향후 적립일수가 더 많이 누적된 이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공제부금 일액이 임금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 금액이므로, 적립일수 규모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당연히 적립일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10년 이상 14,314천 원, 7년 이상 10년 미만 9,638천 원, 5년 이상 7년 미만 6,653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경우 모두 감소하였는데 7년 이상 10년 미만(-15.8%, -12.4%)에서 감소율이 커졌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10년 이상(5.3%), 1년 이상 3년 미만(5.1%) 등에서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더 커졌다.

[그림 62]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63]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표 74> 적립일수 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지급인원(명, %)	503,416	100.0	460,561	100.0	-8.5
	지급액(백만 원, %)	604,625	100.0	531,460	100.0	-12.1
	평균 지급액(천 원)		1,201		1,154	-3.9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1년 미만	지급인원(명, %)	343,356	68.2	323,962	70.3	-5.6
	지급액(백만 원, %)	127,575	21.1	105,357	19.8	-17.4
	평균 지급액(천 원)		372		325	-12.5
1년 이상 3년 미만	지급인원(명, %)	117,490	23.3	100,430	21.8	-14.5
	지급액(백만 원, %)	208,034	34.4	186,829	35.2	-10.2
	평균 지급액(천 원)		1,771		1,860	5.1
3년 이상 5년 미만	지급인원(명, %)	23,021	4.6	19,428	4.2	-15.6
	지급액(백만 원, %)	96,152	15.9	84,351	15.9	-12.3
	평균 지급액(천 원)		4,177		4,342	4.0
5년 이상 7년 미만	지급인원(명, %)	9,051	1.8	7,728	1.7	-14.6
	지급액(백만 원, %)	58,168	9.6	51,413	9.7	-11.6
	평균 지급액(천 원)		6,427		6,653	3.5
7년 이상 10년 미만	지급인원(명, %)	6,477	1.3	5,454	1.2	-15.8
	지급액(백만 원, %)	60,027	9.9	52,564	9.9	-12.4
	평균 지급액(천 원)		9,268		9,638	4.0
10년 이상	지급인원(명, %)	4,021	0.8	3,559	0.8	-11.5
	지급액(백만 원, %)	54,669	9.0	50,945	9.6	-6.8
	평균 지급액(천 원)		13,596		14,314	5.3

주 : 추가 지급자 제외, 적립규모가 1년 미만인 경우 2020년부터 퇴직공제금이 지급되기 시작함

5) 지급액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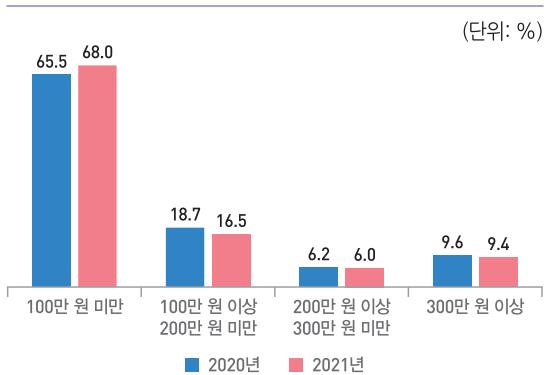
2021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지급액 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100만 원 미만 68.0%(313,348명),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6.5%(76,155명), 300만 원 이상 9.4%(43,251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의 경우 300만 원 이상 49.4%(262,416백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4%(108,264백만 원), 100만 원 미만 17.5%(93,101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규모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당연히 지급액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300만 원 이상 6,067천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434천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422 천 원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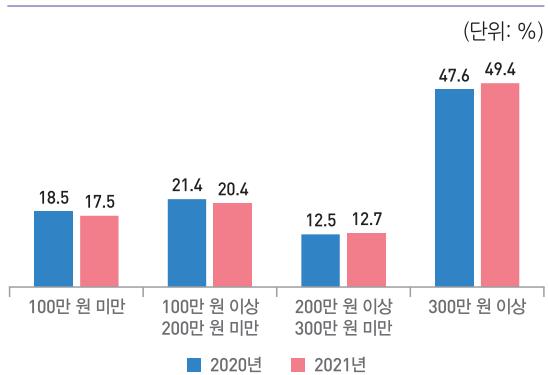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경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9.1%, -16.4%)의 감소폭이 가장 컼고,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10.6%, -10.8%). 100만

원 미만(-5.0%, -16.7%) 등의 순으로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3.4%)과 300만 원 이상(1.7%)에서 증가했고 이외에는 감소하였다.

[그림 64] 지급액 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65] 지급액 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표 75> 지급액 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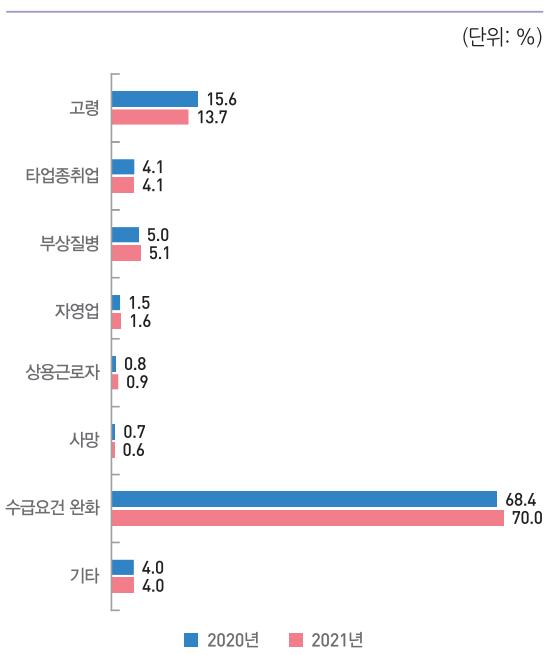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지급인원(명, %)	503,416	100.0	460,561	100.0	-8.5
	지급액(백만 원, %)	604,625	100.0	531,460	100.0	-12.1
	평균 지급액(천 원)	1,201		1,154		-3.9
100만 원 미만	지급인원(명, %)	329,940	65.5	313,348	68.0	-5.0
	지급액(백만 원, %)	111,731	18.5	93,101	17.5	-16.7
	평균 지급액(천 원)	339		297		-12.3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지급인원(명, %)	94,171	18.7	76,155	16.5	-19.1
	지급액(백만 원, %)	129,442	21.4	108,264	20.4	-16.4
	평균 지급액(천 원)	1,375		1,422		3.4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지급인원(명, %)	31,106	6.2	27,807	6.0	-10.6
	지급액(백만 원, %)	75,848	12.5	67,679	12.7	-10.8
	평균 지급액(천 원)	2,438		2,434		-0.2
300만 원 이상	지급인원(명, %)	48,199	9.6	43,251	9.4	-10.3
	지급액(백만 원, %)	287,604	47.6	262,416	49.4	-8.8
	평균 지급액(천 원)	5,967		6,067		1.7

6) 지급사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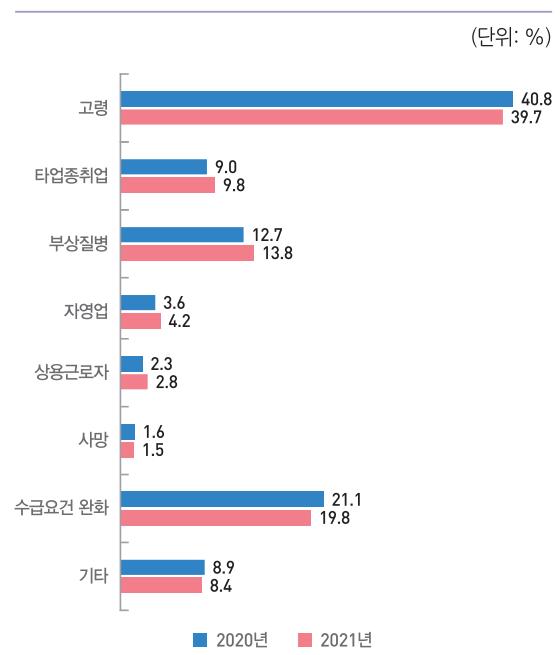
2021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지급사유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고령 수급요건 완화 70.0%(322,465명), 고령 13.7%(63,313명), 부상·질병 5.1%(23,684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의 경우 고령 39.7%(211,080백만 원), 부상·질병 13.8%(73,549백만 원), 수급요건 완화 19.8%(105,119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사유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위와 다른데, 상용근로자 3,797천 원, 부상·질병 3,105천 원, 자영업 3,066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경우 사망(-25.3%, -17.9%)과 고령(-19.2%, -14.4%)의 감소가 컸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사망(9.9%), 상용근로자(9.8%) 등에서 증가하였다.

[그림 66]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67]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표 76>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지급인원(명, %)	503,416	100.0	460,561	100.0	-8.5
	지급액(백만 원, %)	604,625	100.0	531,460	100.0	-12.1
	평균 지급액(천 원)		1,201		1,154	-3.9
고령	지급인원(명, %)	78,373	15.6	63,313	13.7	-19.2
	지급액(백만 원, %)	246,489	40.8	211,080	39.7	-14.4
	평균 지급액(천 원)		3,145		3,334	6.0
타업종 취업	지급인원(명, %)	20,602	4.1	19,068	4.1	-7.4
	지급액(백만 원, %)	54,430	9.0	52,118	9.8	-4.2
	평균 지급액(천 원)		2,642		2,733	3.5
부상·질병	지급인원(명, %)	25,005	5.0	23,684	5.1	-5.3
	지급액(백만 원, %)	77,073	12.7	73,549	13.8	-4.6
	평균 지급액(천 원)		3,082		3,105	0.8
자영업	지급인원(명, %)	7,427	1.5	7,206	1.6	-3.0
	지급액(백만 원, %)	21,977	3.6	22,092	4.2	0.5
	평균 지급액(천 원)		2,959		3,066	3.6
상용근로자	지급인원(명, %)	3,990	0.8	3,952	0.9	-1.0
	지급액(백만 원, %)	13,797	2.3	15,004	2.8	8.7
	평균 지급액(천 원)		3,458		3,797	9.8
사망	지급인원(명, %)	3,454	0.7	2,580	0.6	-25.3
	지급액(백만 원, %)	9,447	1.6	7,756	1.5	-17.9
	평균 지급액(천 원)		2,735		3,006	9.9
수급요건 완화	지급인원(명, %)	344,380	68.4	322,465	70.0	-6.4
	지급액(백만 원, %)	127,871	21.1	105,119	19.8	-17.8
	평균 지급액(천 원)		371		326	-12.2
기타	지급인원(명, %)	20,185	4.0	18,293	4.0	-9.4
	지급액(백만 원, %)	53,541	8.9	44,742	8.4	-16.4
	평균 지급액(천 원)		2,653		2,446	-7.8



PART
04

•••
부록

퇴직공제사업 세부 통계

1. 부록의 통계자료 추출 기준은 피공제자 '가입연도'이므로 본문의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Part3의 '지급자 수'와 Part4의 '퇴직자 수'는 산정기준일이 다르므로 수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3. 연도별 신규 피공제자는 건설사업주의 파산으로 인한 적립불가 등의 사유로 Part3의 신규적립자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4. 연도별 피공제자수는 주민등록번호 오류 정정 등으로 매년 통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표 1> 연도별 신규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신규 피공제자	퇴직자
합계	7,174,757	1,880,906
1998년	1,008	0
1999년	38,310	4
2000년	83,447	737
2001년	98,165	3,862
2002년	132,502	4,950
2003년	172,199	6,720
2004년	276,571	11,451
2005년	278,170	15,744
2006년	477,265	14,164
2007년	436,973	11,840
2008년	417,214	12,726
2009년	435,068	20,052
2010년	329,002	23,013
2011년	308,045	25,499
2012년	344,082	45,790
2013년	376,264	57,895
2014년	339,551	68,395
2015년	313,848	73,253
2016년	378,615	86,359
2017년	450,666	100,494
2018년	383,899	125,385
2019년	373,514	203,323
2020년	358,035	505,791
2021년	372,344	463,459

<부표 2> 연도별 성별 신규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합계	7,174,757	6,066,810	1,107,947
1998년	1,008	938	70
1999년	38,310	36,323	1,987
2000년	83,447	77,944	5,503
2001년	98,165	89,509	8,656
2002년	132,502	120,072	12,430
2003년	172,199	154,498	17,701
2004년	276,571	248,902	27,669
2005년	278,170	248,582	29,588
2006년	477,265	425,491	51,774
2007년	436,973	380,752	56,221
2008년	417,214	354,566	62,648
2009년	435,068	361,371	73,697
2010년	329,002	267,476	61,526
2011년	308,045	252,144	55,901
2012년	344,082	285,067	59,015
2013년	376,264	311,988	64,276
2014년	339,551	278,029	61,522
2015년	313,848	259,544	54,304
2016년	378,615	316,858	61,757
2017년	450,666	373,727	76,939
2018년	383,899	313,876	70,023
2019년	373,514	308,528	64,986
2020년	358,035	296,019	62,016
2021년	372,344	304,606	67,738

<부표 3> 연도별 연령별 신규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합계	7,174,757	246,159	639,861	555,855	569,808	711,699	837,289
1998년	1,008	13	40	90	126	169	178
1999년	38,310	434	1,717	3,651	4,736	6,318	6,866
2000년	83,447	911	3,426	6,302	9,006	12,040	14,847
2001년	98,165	979	4,511	7,156	10,265	13,009	17,078
2002년	132,502	1,537	7,290	9,183	13,103	15,772	21,031
2003년	172,199	1,772	10,332	12,656	17,754	21,269	27,200
2004년	276,571	2,740	15,986	21,465	30,258	37,372	43,699
2005년	278,170	2,543	14,405	21,153	29,390	38,105	43,451
2006년	477,265	6,436	28,997	36,801	45,939	63,072	70,673
2007년	436,973	9,261	34,299	38,205	39,496	55,152	59,837
2008년	417,214	9,888	33,121	36,128	35,183	51,026	56,227
2009년	435,068	10,268	34,803	36,990	35,402	50,857	58,825
2010년	329,002	10,742	29,435	26,254	26,457	34,517	41,085
2011년	308,045	11,116	29,286	23,431	23,905	29,113	37,140
2012년	344,082	12,991	37,345	24,742	27,380	31,145	40,882
2013년	376,264	15,134	43,240	26,893	29,673	31,976	42,634
2014년	339,551	12,537	40,139	25,324	25,782	28,009	37,476
2015년	313,848	13,173	35,690	23,103	22,111	24,766	31,353
2016년	378,615	20,319	46,318	31,115	27,893	29,990	34,760
2017년	450,666	27,655	57,072	38,874	31,882	36,966	39,435
2018년	383,899	22,081	39,091	30,316	25,531	31,257	32,582
2019년	373,514	19,194	34,257	27,292	21,334	26,597	28,757
2020년	358,035	15,379	30,837	24,996	19,019	22,929	26,505
2021년	372,344	19,056	28,224	23,735	18,183	20,273	24,768

<부표 3> 연도별 연령별 신규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66~69세	70세 이상
합계	927,434	866,598	699,911	645,758	87,523	239,776	147,086
1998년	145	112	80	38	2	9	6
1999년	5,113	4,170	3,314	1,542	141	234	74
2000년	12,367	10,629	8,244	4,280	412	772	211
2001년	14,598	12,429	9,799	6,141	660	1,264	276
2002년	19,475	16,434	13,184	10,898	1,128	2,686	781
2003년	26,260	20,162	16,378	12,676	1,417	3,297	1,026
2004년	43,233	31,069	24,151	17,537	2,266	5,040	1,755
2005년	45,253	33,018	24,495	16,282	2,168	5,588	2,319
2006년	77,489	58,906	40,737	27,139	4,347	10,947	5,782
2007년	67,435	52,492	36,275	23,772	4,556	10,393	5,800
2008년	63,005	53,289	35,239	24,391	3,317	10,597	5,803
2009년	65,008	57,737	37,967	26,123	3,398	10,971	6,719
2010년	44,711	43,641	30,831	22,727	2,741	9,673	6,188
2011년	40,083	42,104	30,656	22,207	3,015	9,010	6,979
2012년	42,359	45,974	34,522	26,510	3,953	8,851	7,428
2013년	45,972	48,977	38,501	31,826	4,346	9,913	7,179
2014년	41,488	43,307	35,409	30,471	3,870	9,385	6,354
2015년	36,769	38,360	34,621	34,426	3,764	9,771	5,941
2016년	42,563	43,114	39,848	39,825	4,070	11,828	6,972
2017년	49,393	49,582	46,694	46,854	5,611	12,891	7,757
2018년	42,466	43,231	42,035	48,298	5,086	13,660	8,265
2019년	38,610	42,324	41,747	58,847	7,019	16,949	10,587
2020년	33,803	38,378	37,969	55,842	9,740	26,168	16,470
2021년	29,836	37,159	37,215	57,106	10,496	39,879	26,414

<부표 4> 연도별 지역별 신규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7,174,757	1,144,977	437,474	1,550,836	328,648	370,498	398,944	492,717	152,864
1998년	1,008	209	58	244	46	23	14	16	2
1999년	38,310	7,624	2,721	7,915	1,975	1,455	973	1,669	549
2000년	83,447	12,555	4,704	14,604	4,428	5,043	3,992	4,944	1,476
2001년	98,165	13,378	5,491	17,045	4,879	6,339	4,829	6,640	1,472
2002년	132,502	16,399	6,258	21,624	7,094	9,837	8,846	9,656	2,377
2003년	172,199	23,709	8,789	30,679	12,443	10,779	8,785	16,564	2,858
2004년	276,571	42,151	16,833	54,589	13,903	15,767	15,680	23,864	5,181
2005년	278,170	43,682	18,702	56,671	12,994	13,834	15,423	20,484	4,126
2006년	477,265	81,324	29,032	92,612	25,920	28,258	26,525	33,749	7,992
2007년	436,973	72,309	25,671	82,801	25,882	25,019	26,009	30,905	7,745
2008년	417,214	72,438	23,276	84,896	21,996	23,412	23,217	27,282	6,442
2009년	435,068	72,231	27,610	90,433	21,076	24,217	23,395	26,728	7,570
2010년	329,002	51,302	21,772	64,347	16,120	19,641	19,209	21,845	5,771
2011년	308,045	46,214	19,396	59,788	13,821	19,156	18,051	21,651	6,836
2012년	344,082	52,982	20,899	71,531	13,983	19,753	20,744	24,978	8,934
2013년	376,264	60,745	23,043	80,571	15,484	19,438	22,810	26,583	10,435
2014년	339,551	58,740	20,656	81,236	13,215	15,990	18,035	21,363	7,307
2015년	313,848	52,244	18,763	72,381	13,430	15,404	17,042	20,922	6,426
2016년	378,615	61,561	22,766	92,068	14,981	17,515	20,320	24,740	8,992
2017년	450,666	72,706	26,948	112,433	15,843	18,331	26,278	29,191	15,509
2018년	383,899	62,556	23,281	95,395	13,644	14,858	21,689	25,940	10,743
2019년	373,514	59,536	23,180	96,213	14,135	14,956	18,361	24,695	8,511
2020년	358,035	54,599	23,138	84,534	14,707	15,095	18,824	23,459	7,942
2021년	372,344	53,783	24,487	86,226	16,649	16,378	19,893	24,849	7,668

<부표 4> 연도별 지역별 신규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208,086	32,938	318,864	225,172	223,369	346,675	287,350	271,689	89,422	294,234
1998년	103	2	21	15	23	49	87	81	2	13
1999년	2,245	125	1,483	1,566	1,462	1,911	1,659	1,463	420	1,095
2000년	4,501	257	4,581	4,530	2,608	5,150	4,225	3,729	499	1,621
2001년	4,255	302	5,002	4,541	3,353	5,918	6,095	5,216	1,361	2,049
2002년	4,924	400	7,581	5,662	5,077	9,038	7,458	6,355	1,314	2,602
2003년	6,232	470	8,468	6,225	6,237	10,351	8,819	6,102	1,476	3,213
2004년	9,590	678	11,099	9,555	9,103	15,265	12,916	10,839	3,186	6,372
2005년	9,295	638	11,231	9,969	8,581	15,295	13,059	13,138	4,515	6,533
2006년	14,349	993	18,176	16,495	15,486	24,424	21,859	21,852	4,949	13,270
2007년	11,943	1,088	17,862	14,251	16,001	23,136	19,392	19,885	4,897	12,177
2008년	11,456	1,103	17,454	13,667	15,851	22,082	18,751	17,237	5,353	11,301
2009년	13,305	1,283	18,951	14,544	14,826	23,408	20,126	17,282	6,306	11,777
2010년	10,308	1,050	14,121	11,529	11,340	18,253	15,524	13,118	4,883	8,869
2011년	9,232	1,103	13,872	10,025	10,558	18,439	14,782	12,855	4,178	8,088
2012년	9,016	1,220	17,128	10,143	11,339	20,046	15,811	13,235	4,816	7,524
2013년	10,755	1,614	17,080	11,060	12,501	19,370	16,070	13,255	5,541	9,909
2014년	9,081	2,007	15,425	9,675	10,560	15,349	12,912	12,155	4,980	10,865
2015년	8,641	2,130	14,711	8,879	8,684	12,431	10,571	11,224	4,342	15,623
2016년	9,546	3,093	17,759	10,263	9,269	13,499	10,691	12,128	4,719	24,705
2017년	10,469	3,507	22,317	11,956	10,091	14,550	11,850	14,233	4,926	29,528
2018년	9,530	2,898	15,888	11,614	9,956	13,572	10,732	11,518	4,228	25,857
2019년	9,813	2,534	15,676	10,055	9,803	13,963	10,787	10,951	4,071	26,274
2020년	9,680	2,149	16,141	8,984	10,252	15,405	10,939	11,569	3,964	26,654
2021년	9,817	2,294	16,837	9,969	10,408	15,771	12,235	12,269	4,496	28,315

<부표 5>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규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합계	7,174,757	5,336,737	928,373	362,177	189,141
1998년	1,008	686	97	61	44
1999년	38,310	24,712	3,987	2,249	1,603
2000년	83,447	54,309	8,566	4,928	3,401
2001년	98,165	64,560	10,231	5,739	3,868
2002년	132,502	91,047	13,616	7,440	4,831
2003년	172,199	114,719	19,050	10,172	6,613
2004년	276,571	182,177	33,180	17,080	10,666
2005년	278,170	183,254	36,256	17,640	10,631
2006년	477,265	336,915	61,420	26,697	15,098
2007년	436,973	330,241	50,472	20,467	11,068
2008년	417,214	320,884	48,395	18,552	9,743
2009년	435,068	340,578	49,400	17,907	9,360
2010년	329,002	258,890	37,652	13,231	6,666
2011년	308,045	233,855	38,286	14,483	7,389
2012년	344,082	256,286	44,746	17,202	9,280
2013년	376,264	275,510	52,462	19,866	10,469
2014년	339,551	241,803	50,216	20,446	10,798
2015년	313,848	218,301	50,750	20,307	10,478
2016년	378,615	266,165	61,362	24,180	12,387
2017년	450,666	326,431	70,298	26,414	14,361
2018년	383,899	288,063	56,971	21,734	11,523
2019년	373,514	282,799	58,552	23,001	7,909
2020년	358,035	291,611	53,643	11,803	909
2021년	372,344	352,941	18,765	578	46

<부표 5>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규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합계	112,530	72,541	49,353	35,093	88,812
1998년	22	16	21	15	46
1999년	1,220	929	725	652	2,233
2000년	2,614	1,963	1,591	1,308	4,767
2001년	2,920	2,322	1,755	1,479	5,291
2002년	3,378	2,630	2,116	1,638	5,806
2003년	4,629	3,635	2,805	2,308	8,268
2004년	7,589	5,570	4,495	3,544	12,270
2005년	7,345	5,291	4,122	3,226	10,405
2006년	9,895	6,972	5,059	3,942	11,267
2007년	7,014	4,681	3,523	2,630	6,877
2008년	5,859	3,962	2,816	2,134	4,869
2009년	5,646	3,690	2,607	1,825	4,055
2010년	3,960	2,685	1,831	1,319	2,768
2011년	4,592	3,139	2,104	1,494	2,703
2012년	5,583	3,672	2,635	1,863	2,815
2013년	6,585	4,303	2,826	1,964	2,279
2014년	6,368	4,063	2,775	1,719	1,363
2015년	6,084	3,809	2,327	1,244	548
2016년	7,211	4,466	2,116	579	149
2017년	8,302	3,702	949	179	30
2018년	4,536	909	134	27	2
2019년	1,109	121	18	4	1
2020년	55	11	3	0	0
2021년	14	0	0	0	0

<부표 6>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규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합계	7,174,757	5,269,737	968,942	373,549	193,657	114,700
1998년	1,008	649	105	63	52	31
1999년	38,310	23,233	4,255	2,546	1,809	1,319
2000년	83,447	50,832	9,162	5,512	3,772	2,950
2001년	98,165	60,319	10,950	6,480	4,575	3,308
2002년	132,502	85,465	14,944	8,394	5,642	3,972
2003년	172,199	106,804	20,902	11,719	7,805	5,456
2004년	276,571	168,405	37,339	20,068	12,514	8,807
2005년	278,170	166,744	42,858	21,083	12,787	8,475
2006년	477,265	303,312	78,795	33,840	18,540	11,775
2007년	436,973	308,968	63,292	24,855	12,897	7,945
2008년	417,214	308,805	56,297	21,062	10,753	6,285
2009년	435,068	335,677	53,241	18,923	9,660	5,659
2010년	329,002	257,790	38,983	13,428	6,687	3,956
2011년	308,045	233,978	38,914	14,474	7,321	4,642
2012년	344,082	257,218	44,985	17,140	9,161	5,481
2013년	376,264	276,854	52,594	19,715	10,408	6,457
2014년	339,551	243,446	50,250	20,309	10,683	6,207
2015년	313,848	220,284	50,864	20,079	10,279	5,923
2016년	378,615	269,240	61,564	23,884	12,032	6,814
2017년	450,666	331,224	70,740	25,957	13,581	6,840
2018년	383,899	294,779	56,837	20,559	9,278	2,198
2019년	373,514	293,989	57,184	18,831	3,294	187
2020년	358,035	307,340	46,130	4,446	105	12
2021년	372,344	364,382	7,757	182	22	1

<부표 6>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규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합계	73,123	49,893	35,520	26,436	69,200
1998년	14	22	19	9	44
1999년	1,062	812	696	573	2,005
2000년	2,283	1,788	1,454	1,220	4,474
2001년	2,564	2,032	1,630	1,413	4,894
2002년	2,968	2,365	1,896	1,574	5,282
2003년	4,079	3,224	2,528	2,156	7,526
2004년	6,329	4,961	4,018	3,192	10,938
2005년	6,063	4,627	3,573	2,862	9,098
2006년	8,015	5,746	4,398	3,444	9,400
2007년	5,137	3,822	2,754	2,227	5,076
2008년	4,153	2,859	2,182	1,574	3,244
2009년	3,772	2,548	1,821	1,317	2,450
2010년	2,629	1,845	1,262	932	1,490
2011년	3,053	1,972	1,430	992	1,269
2012년	3,606	2,523	1,730	1,110	1,128
2013년	4,150	2,677	1,775	1,010	624
2014년	3,899	2,575	1,352	622	208
2015년	3,475	1,971	767	165	41
2016년	3,649	1,192	195	37	8
2017년	1,984	297	35	7	1
2018년	215	30	3	0	0
2019년	22	5	2	0	0
2020년	2	0	0	0	0
2021년	0	0	0	0	0

<부표 7> 연도별 내·외국인 신규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내국인	외국인
합계	7,174,757	6,435,682	739,075
1998년	1,008	1,008	0
1999년	38,310	38,310	0
2000년	83,447	83,447	0
2001년	98,165	98,165	0
2002년	132,502	132,498	4
2003년	172,199	172,198	1
2004년	276,571	272,591	3,980
2005년	278,170	275,356	2,814
2006년	477,265	453,784	23,481
2007년	436,973	405,079	31,894
2008년	417,214	369,119	48,095
2009년	435,068	394,936	40,132
2010년	329,002	306,604	22,398
2011년	308,045	281,253	26,792
2012년	344,082	312,620	31,462
2013년	376,264	335,783	40,481
2014년	339,551	291,926	47,625
2015년	313,848	268,934	44,914
2016년	378,615	314,159	64,456
2017년	450,666	367,858	82,808
2018년	383,899	314,620	69,279
2019년	373,514	313,543	59,971
2020년	358,035	310,331	47,704
2021년	372,344	321,560	50,784

<부표 8> 성별 연령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2017년	5,247,096	55,808	198,288	324,423	357,701	426,302	470,450
남성	4,455,886	53,520	188,460	306,503	329,121	375,138	396,591
여성	791,210	2,288	9,828	17,920	28,580	51,164	73,859
2018년	5,527,186	65,760	189,297	344,595	365,837	451,393	465,048
남성	4,675,852	62,958	178,765	325,028	336,080	397,633	392,127
여성	851,334	2,802	10,532	19,567	29,757	53,760	72,921
2019년	5,772,489	74,673	170,542	360,947	373,768	456,163	471,085
남성	4,867,586	71,498	159,599	339,895	342,997	403,006	397,481
여성	904,903	3,175	10,943	21,052	30,771	53,157	73,604
2020년	5,933,707	83,625	153,685	365,153	379,062	452,255	482,477
남성	4,989,484	80,207	142,531	342,776	348,041	400,497	408,813
여성	944,223	3,418	11,154	22,377	31,021	51,758	73,664
2021년	5,790,886	93,441	139,792	353,674	391,614	444,595	499,759
남성	4,869,389	89,807	128,702	330,613	359,731	394,576	424,750
여성	921,497	3,634	11,090	23,061	31,883	50,019	75,009

주 : <부표 8> ~ <부표 17>의 누적 피공제자수는 퇴직자를 포함. 퇴직년도에 일한 일수 및 누적금액 산정을 위해 <부표 1>과 차이가 있음

<부표 8> 성별 연령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66~69세	70세 이상
2017년	638,837	682,225	756,756	581,941	94,129	269,885	390,351
남성	537,345	571,538	624,099	479,397	77,367	219,624	297,183
여성	101,492	110,687	132,657	102,544	16,762	50,261	93,168
2018년	643,911	712,109	786,278	653,258	88,908	305,558	455,234
남성	537,633	592,405	646,183	536,541	72,643	249,005	348,851
여성	106,278	119,704	140,095	116,717	16,265	56,553	106,383
2019년	640,062	734,470	802,962	722,343	110,548	329,149	525,777
남성	531,652	607,517	658,604	591,671	90,454	267,749	405,463
여성	108,410	126,953	144,358	130,672	20,094	61,400	120,314
2020년	617,102	738,737	796,787	767,438	131,585	374,031	591,770
남성	510,029	608,375	651,665	625,825	107,026	305,433	458,266
여성	107,073	130,362	145,122	141,613	24,559	68,598	133,504
2021년	587,905	749,264	796,777	805,518	131,930	318,694	477,923
남성	483,804	613,267	650,406	652,951	107,450	261,954	371,378
여성	104,101	135,997	146,371	152,567	24,480	56,740	106,545

<부표 9> 성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2017년	5,247,096	829,277	316,408	1,107,822	241,538	284,747	301,575	356,151	113,267
남자	4,455,886	728,791	268,756	952,119	203,822	241,462	254,418	305,903	95,661
여자	791,210	100,486	47,652	155,703	37,716	43,285	47,157	50,248	17,606
2018년	5,527,186	870,838	332,851	1,180,675	250,605	294,412	317,747	374,508	121,731
남자	4,675,852	761,858	281,497	1,009,659	210,751	248,832	267,406	320,424	102,402
여자	851,334	108,980	51,354	171,016	39,854	45,580	50,341	54,084	19,329
2019년	5,772,489	905,219	347,409	1,245,732	259,119	303,283	330,279	389,106	127,697
남자	4,867,586	789,398	292,824	1,060,606	217,193	255,704	277,054	331,617	107,151
여자	904,903	115,821	54,585	185,126	41,926	47,579	53,225	57,489	20,546
2020년	5,933,707	925,034	357,718	1,283,018	265,658	308,496	338,469	398,944	131,936
남자	4,989,484	804,157	300,596	1,089,167	222,171	259,095	283,257	339,075	110,532
여자	944,223	120,877	57,122	193,851	43,487	49,401	55,212	59,869	21,404
2021년	5,790,886	897,740	349,314	1,268,012	256,939	295,383	328,889	382,440	129,512
남자	4,869,389	778,248	293,703	1,073,794	215,080	248,679	275,801	324,937	108,343
여자	921,497	119,492	55,611	194,218	41,859	46,704	53,088	57,503	21,169

<부표 9> 성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2017년	152,154	22,042	236,939	170,380	165,644	263,632	219,802	209,095	69,818	186,805
남자	128,232	18,438	202,525	144,985	128,081	209,517	178,665	177,804	57,353	159,354
여자	23,922	3,604	34,414	25,395	37,563	54,115	41,137	31,291	12,465	27,451
2018년	158,424	24,385	247,921	178,771	172,915	272,974	226,843	216,761	72,945	211,880
남자	133,067	20,248	211,070	151,407	133,374	216,480	183,943	183,830	59,573	180,031
여자	25,357	4,137	36,851	27,364	39,541	56,494	42,900	32,931	13,372	31,849
2019년	164,539	26,161	257,825	184,795	179,612	282,542	232,696	223,455	75,971	237,049
남자	137,924	21,718	219,071	156,020	138,206	223,430	188,165	189,065	61,704	200,736
여자	26,615	4,443	38,754	28,775	41,406	59,112	44,531	34,390	14,267	36,313
2020년	168,021	27,130	264,868	186,946	184,125	288,699	235,737	227,626	77,730	263,552
남자	140,438	22,429	224,427	157,451	141,538	227,560	190,281	192,017	62,752	222,541
여자	27,583	4,701	40,441	29,495	42,587	61,139	45,456	35,609	14,978	41,011
2021년	163,095	27,203	259,518	179,764	178,989	277,383	224,067	217,401	75,894	279,343
남자	136,102	22,411	219,897	151,474	138,073	220,202	181,494	183,940	61,200	236,011
여자	26,993	4,792	39,621	28,290	40,916	57,181	42,573	33,461	14,694	43,332

<부표 10> 성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7년	5,247,096	4,388,144	428,457	167,976	91,425
남성	4,455,886	3,680,170	377,345	152,327	84,381
여성	791,210	707,974	51,112	15,649	7,044
2018년	5,527,186	4,598,454	461,534	178,521	95,854
남성	4,675,852	3,841,762	404,573	160,433	87,805
여성	851,334	756,692	56,961	18,088	8,049
2019년	5,772,489	4,799,533	475,573	187,082	100,361
남성	4,867,586	3,997,290	415,769	167,127	90,996
여성	904,903	802,243	59,804	19,955	9,365
2020년	5,933,707	4,975,567	449,632	182,960	101,712
남성	4,989,484	4,132,446	394,179	162,904	91,656
여성	944,223	843,121	55,453	20,056	10,056
2021년	5,790,886	4,822,374	437,660	183,109	104,516
남성	4,869,389	4,002,151	383,912	163,411	94,093
여성	921,497	820,223	53,748	19,698	10,423

<부표 10> 성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7년	57,354	39,257	27,875	19,646	26,962
남성	53,520	36,988	26,386	18,776	25,993
여성	3,834	2,269	1,489	870	969
2018년	60,152	41,492	30,079	21,960	39,140
남성	55,762	38,761	28,324	20,848	37,584
여성	4,390	2,731	1,755	1,112	1,556
2019년	61,889	42,457	31,248	23,392	50,954
남성	56,929	39,422	29,201	22,071	48,781
여성	4,960	3,035	2,047	1,321	2,173
2020년	63,708	43,395	31,292	23,887	61,554
남성	58,127	40,014	29,033	22,369	58,756
여성	5,581	3,381	2,259	1,518	2,798
2021년	67,364	46,033	32,933	24,603	72,294
남성	61,318	42,330	30,448	22,926	68,800
여성	6,046	3,703	2,485	1,677	3,494

<부표 11> 성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7년	5,247,096	4,317,108	464,764	178,228	95,732	59,207
남성	4,455,886	3,618,540	407,421	161,111	88,153	55,222
여성	791,210	698,568	57,343	17,117	7,579	3,985
2018년	5,527,186	4,536,534	494,618	187,604	99,423	61,585
남성	4,675,852	3,787,991	432,132	168,293	90,914	57,041
여성	851,334	748,543	62,486	19,311	8,509	4,544
2019년	5,772,489	4,755,141	501,393	193,393	102,111	62,765
남성	4,867,586	3,959,343	436,804	172,570	92,537	57,691
여성	904,903	795,798	64,589	20,823	9,574	5,074
2020년	5,933,707	4,968,032	459,650	181,789	99,668	62,256
남성	4,989,484	4,125,845	402,581	161,884	89,904	56,822
여성	944,223	842,187	57,069	19,905	9,764	5,434
2021년	5,790,886	4,851,588	434,676	175,997	97,945	63,076
남성	4,869,389	4,027,406	381,826	157,249	88,234	57,574
여성	921,497	824,182	52,850	18,748	9,711	5,502

<부표 11> 성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7년	40,038	28,752	21,272	15,594	26,401
남성	37,737	27,119	20,216	14,897	25,470
여성	2,301	1,633	1,056	697	931
2018년	42,191	30,141	22,707	17,019	35,364
남성	39,470	28,362	21,464	16,177	34,008
여성	2,721	1,779	1,243	842	1,356
2019년	42,421	31,050	23,185	18,000	43,030
남성	39,418	29,107	21,793	17,046	41,277
여성	3,003	1,943	1,392	954	1,753
2020년	41,827	30,495	23,078	17,828	49,084
남성	38,663	28,363	21,675	16,738	47,009
여성	3,164	2,132	1,403	1,090	2,075
2021년	42,249	30,505	22,709	17,880	54,261
남성	38,896	28,325	21,239	16,791	51,849
여성	3,353	2,180	1,470	1,089	2,412

<부표 12> 연령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2017년	5,247,096	829,277	316,408	1,107,822	241,538	284,747	301,575	356,151	113,267
19세 이하	55,808	4,891	1,820	14,097	1,594	2,874	4,461	2,647	2,055
20~24세	198,288	23,893	11,806	44,543	7,349	9,919	11,412	15,088	5,778
25~29세	324,423	42,404	21,327	67,957	14,283	17,841	20,371	26,755	9,229
30~34세	357,701	52,263	22,343	72,458	16,953	19,403	21,800	27,865	9,075
35~39세	426,302	65,700	25,057	88,267	19,680	22,351	25,539	33,349	9,947
40~44세	470,450	73,022	27,185	102,221	21,842	24,557	26,929	30,572	10,123
45~49세	638,837	105,804	38,458	144,385	29,602	32,028	35,482	38,457	13,236
50~54세	682,225	117,696	42,800	155,954	31,597	34,204	35,767	39,791	13,568
55~59세	756,756	129,241	47,944	165,544	35,668	39,351	41,001	48,394	15,097
60~64세	581,941	101,786	35,039	120,828	27,863	33,071	32,993	41,142	11,864
65세	94,129	15,969	5,515	18,548	4,582	5,648	5,605	6,955	1,841
66~69세	269,885	45,186	14,932	48,538	13,334	16,722	16,454	20,058	5,237
70세 이상	390,351	51,422	22,182	64,482	17,191	26,778	23,761	25,078	6,217

<부표 12> 연령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2017년	152,154	22,042	236,939	170,380	165,644	263,632	219,802	209,095	69,818	186,805
19세 이하	1,047	1,463	3,302	1,832	742	1,303	1,067	2,245	648	7,720
20~24세	5,297	1,122	11,048	5,609	6,247	9,399	6,688	8,205	4,039	10,846
25~29세	9,219	1,613	14,996	9,408	10,640	16,613	12,621	12,119	4,947	12,080
30~34세	10,795	1,528	15,554	11,008	12,903	18,053	14,742	13,045	4,675	13,238
35~39세	13,271	1,820	18,209	12,718	15,596	20,901	17,785	14,901	5,901	15,310
40~44세	14,742	2,059	20,956	14,515	17,483	22,776	20,246	16,846	6,899	17,477
45~49세	19,238	2,466	28,093	19,538	21,256	28,817	25,079	23,165	9,104	24,629
50~54세	19,488	2,435	29,115	20,988	20,936	30,976	25,816	25,184	9,195	26,715
55~59세	22,314	2,735	33,206	24,901	21,600	34,862	30,058	30,834	8,952	25,054
60~64세	16,895	2,252	24,982	19,983	15,731	27,073	24,634	24,592	6,616	14,597
65세	2,621	351	3,855	3,401	2,616	4,821	4,003	4,486	1,028	2,284
66~69세	7,371	965	12,621	8,954	8,257	16,712	14,070	10,700	3,058	6,716
70세 이상	9,856	1,233	21,002	17,525	11,637	31,326	22,993	22,773	4,756	10,139

<부표 12> 연령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2018년	5,527,186	870,838	332,851	1,180,675	250,605	294,412	317,747	374,508	121,731
19세 이하	65,760	6,280	1,863	17,213	1,907	3,069	4,966	2,947	2,107
20~24세	189,297	22,927	11,146	43,695	7,002	8,894	10,445	13,870	5,409
25~29세	344,595	45,299	22,164	74,967	14,070	18,139	21,179	28,383	9,754
30~34세	365,837	53,289	23,277	76,135	17,051	19,467	22,161	28,245	9,559
35~39세	451,393	68,763	26,782	94,295	20,883	23,228	27,426	35,398	11,031
40~44세	465,048	71,554	26,775	101,089	21,119	24,050	27,191	31,274	10,461
45~49세	643,911	105,352	38,393	146,297	29,088	31,772	36,450	39,281	13,924
50~54세	712,109	120,220	44,333	162,930	32,779	35,328	38,191	41,788	14,640
55~59세	786,278	134,854	49,736	174,372	36,751	40,203	42,145	49,246	15,879
60~64세	653,258	113,253	40,034	138,621	30,400	35,396	36,477	45,189	13,538
65세	88,908	15,831	5,195	17,951	4,353	5,447	5,036	6,477	1,935
66~69세	305,558	51,630	17,283	56,834	14,946	18,453	18,395	22,591	6,090
70세 이상	455,234	61,586	25,870	76,276	20,256	30,966	27,685	29,819	7,404

<부표 12> 연령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2018년	158,424	24,385	247,921	178,771	172,915	272,974	226,843	216,761	72,945	211,880
19세 이하	1,142	1,973	3,715	2,341	875	1,383	1,213	2,696	540	9,530
20~24세	5,055	1,126	10,172	5,684	6,047	8,678	5,978	7,698	3,682	11,789
25~29세	9,659	1,805	16,194	9,772	11,050	17,017	12,826	12,634	5,524	14,159
30~34세	10,714	1,680	15,771	11,136	12,649	17,952	14,567	13,062	4,709	14,413
35~39세	13,755	1,944	19,150	13,475	16,462	21,695	18,306	15,478	6,153	17,169
40~44세	14,393	2,109	20,549	14,136	17,123	22,349	19,797	16,132	6,617	18,330
45~49세	19,239	2,660	28,183	19,711	21,450	28,868	25,065	22,801	9,265	26,112
50~54세	20,519	2,702	30,865	22,045	21,915	31,716	26,919	26,046	9,548	29,625
55~59세	22,747	2,894	33,862	25,100	22,637	35,768	30,382	31,002	9,527	29,173
60~64세	18,811	2,555	27,969	22,297	17,727	30,123	26,838	27,474	7,534	19,022
65세	2,459	335	3,714	2,999	2,312	4,152	3,717	3,660	931	2,404
66~69세	8,324	1,152	13,728	10,273	9,107	17,813	15,020	12,438	3,379	8,102
70세 이상	11,607	1,450	24,049	19,802	13,561	35,460	26,215	25,640	5,536	12,052

<부표 12> 연령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2019년	5,772,489	905,219	347,409	1,245,732	259,119	303,283	330,279	389,106	127,697
19세 이하	74,673	6,953	2,316	19,674	2,325	3,371	5,444	3,409	2,366
20~24세	170,542	20,049	9,722	40,679	6,249	7,707	9,151	12,346	4,643
25~29세	360,947	47,578	22,764	81,635	14,018	18,235	21,357	28,852	10,264
30~34세	373,768	54,101	24,279	79,685	17,214	19,660	22,385	28,845	9,790
35~39세	456,163	68,561	27,179	96,114	20,935	23,352	27,684	35,838	11,388
40~44세	471,085	72,922	27,104	102,955	21,167	23,664	27,742	32,683	10,807
45~49세	640,062	102,958	37,878	145,587	28,623	31,466	36,240	39,282	14,061
50~54세	734,470	121,874	45,249	168,688	33,428	35,996	40,265	43,227	15,460
55~59세	802,962	137,998	51,024	181,281	36,636	39,825	42,712	49,125	15,984
60~64세	722,343	124,044	44,651	154,659	33,599	38,815	39,546	48,743	15,141
65세	110,548	19,128	6,449	22,580	5,273	6,097	6,348	7,895	2,228
66~69세	329,149	55,780	18,881	63,080	16,028	19,894	19,412	24,151	6,804
70세 이상	525,777	73,273	29,913	89,115	23,624	35,201	31,993	34,710	8,761

<부표 12> 연령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2019년	164,539	26,161	257,825	184,795	179,612	282,542	232,696	223,455	75,971	237,049
19세 이하	1,686	2,187	4,306	2,512	948	1,557	1,279	2,959	546	10,835
20~24세	4,559	1,062	8,738	5,033	5,770	8,016	5,215	6,665	3,200	11,738
25~29세	10,104	1,974	17,405	10,168	11,332	17,135	12,802	13,047	6,021	16,256
30~34세	10,678	1,803	16,111	11,111	12,426	17,888	14,372	13,198	4,775	15,447
35~39세	13,759	2,021	19,307	13,505	16,589	21,832	18,052	15,552	6,125	18,370
40~44세	14,506	2,175	20,426	14,117	17,037	22,383	19,335	15,857	6,661	19,544
45~49세	18,865	2,753	27,885	19,276	21,767	29,106	25,342	22,176	9,278	27,519
50~54세	21,131	2,884	31,617	22,754	22,703	32,623	27,537	26,651	9,985	32,398
55~59세	23,018	3,037	34,590	25,081	22,983	35,696	30,359	30,712	9,828	33,073
60~64세	20,693	2,809	30,778	24,260	19,995	33,181	28,709	29,870	8,386	24,464
65세	3,133	459	4,816	3,691	2,943	5,315	4,719	4,786	1,239	3,449
66~69세	9,012	1,292	14,386	11,178	9,388	17,970	15,225	13,526	3,576	9,566
70세 이상	13,395	1,705	27,460	22,109	15,731	39,840	29,750	28,456	6,351	14,390

<부표 12> 연령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2020년	5,933,707	925,034	357,718	1,283,018	265,658	308,496	338,469	398,944	131,936
19세 이하	83,625	7,823	2,649	21,161	2,916	3,473	5,855	3,857	2,757
20~24세	153,685	17,462	8,369	36,374	5,807	6,933	8,326	11,426	3,920
25~29세	365,153	47,577	22,767	84,540	14,002	17,690	21,089	28,292	10,363
30~34세	379,062	54,139	25,022	82,047	16,998	19,680	22,470	29,112	9,983
35~39세	452,255	67,575	27,433	95,816	20,721	23,119	27,313	34,921	11,478
40~44세	482,477	74,069	27,951	105,507	21,459	23,812	28,709	34,841	11,239
45~49세	617,102	97,329	36,238	139,708	27,621	30,418	35,110	38,095	13,755
50~54세	738,737	121,196	44,885	169,283	33,470	36,102	41,059	43,852	15,723
55~59세	796,787	136,440	50,609	182,162	36,407	39,200	42,362	47,307	16,009
60~64세	767,438	131,110	47,836	165,881	35,168	39,954	41,271	50,547	16,065
65세	131,585	22,207	8,078	26,974	6,167	7,214	7,485	9,574	2,768
66~69세	374,031	63,476	21,775	73,143	18,197	22,000	21,762	27,510	7,797
70세 이상	591,770	84,631	34,106	100,422	26,725	38,901	35,658	39,610	10,079

<부표 12> 연령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2020년	168,021	27,130	264,868	186,946	184,125	288,699	235,737	227,626	77,730	263,552
19세 이하	2,027	2,240	5,143	2,585	1,223	1,878	1,681	3,193	635	12,529
20~24세	4,078	986	7,814	4,295	5,401	7,719	4,802	5,842	2,751	11,380
25~29세	10,099	2,036	17,809	10,240	11,538	17,054	12,464	13,206	6,179	18,208
30~34세	10,752	1,914	16,541	10,988	12,434	18,099	14,254	13,392	4,966	16,271
35~39세	13,514	2,034	19,143	13,414	16,212	21,337	17,453	15,427	5,973	19,372
40~44세	14,530	2,214	20,729	14,131	17,185	22,839	19,363	16,053	6,759	21,087
45~49세	18,156	2,769	27,223	18,418	21,238	28,229	24,533	21,159	8,979	28,124
50~54세	21,352	2,939	31,686	22,486	23,101	32,677	27,427	26,654	10,160	34,685
55~59세	22,318	3,034	33,895	24,580	22,789	34,909	29,164	29,439	9,879	36,284
60~64세	21,833	2,938	32,727	24,955	21,449	35,111	29,584	31,223	8,874	30,912
65세	3,783	553	5,793	4,433	3,580	6,111	5,759	5,417	1,512	4,177
66~69세	10,278	1,510	15,851	12,544	10,296	19,218	15,963	15,766	4,080	12,865
70세 이상	15,301	1,963	30,514	23,877	17,679	43,518	33,290	30,855	6,983	17,658

<부표 12> 연령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2021년	5,790,886	897,740	349,314	1,268,012	256,939	295,383	328,889	382,440	129,512
19세 이하	93,441	9,067	2,917	23,286	3,848	3,755	6,375	4,223	3,062
20~24세	139,792	15,445	7,545	32,225	5,519	6,397	7,512	10,461	3,509
25~29세	353,674	45,341	21,613	83,171	13,710	16,502	19,740	26,948	9,705
30~34세	391,614	54,945	25,918	86,205	17,178	20,170	23,347	30,060	10,496
35~39세	444,595	66,046	27,753	95,146	20,183	22,389	26,576	33,536	11,198
40~44세	499,759	76,222	29,268	108,602	22,217	24,732	30,053	37,269	11,850
45~49세	587,905	90,970	34,434	132,420	26,329	28,984	33,961	36,703	13,125
50~54세	749,264	121,898	45,227	171,877	33,694	36,407	41,845	44,558	16,132
55~59세	796,777	136,906	50,384	184,204	35,851	38,660	42,130	46,145	16,116
60~64세	805,518	134,600	50,809	173,838	37,057	41,082	43,330	52,252	16,924
65세	131,930	21,820	8,102	27,804	6,175	7,590	7,666	9,121	2,794
66~69세	318,694	54,837	18,816	65,113	14,475	17,673	17,817	21,414	6,464
70세 이상	477,923	69,643	26,528	84,121	20,703	31,042	28,537	29,750	8,137

<부표 12> 연령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2021년	163,095	27,203	259,518	179,764	178,989	277,383	224,067	217,401	75,894	279,343
19세 이하	2,297	2,383	5,706	2,746	1,358	2,003	2,081	3,386	604	14,344
20~24세	3,733	908	7,177	3,858	5,110	7,483	4,598	5,299	2,437	10,576
25~29세	9,689	1,989	17,389	9,887	11,398	16,189	11,850	12,842	6,052	19,659
30~34세	11,044	2,044	17,244	11,067	12,641	18,612	14,258	13,623	5,347	17,415
35~39세	13,040	2,019	18,947	13,110	15,670	21,004	17,023	15,158	5,755	20,042
40~44세	14,887	2,314	21,150	14,596	17,581	23,353	19,610	16,527	6,956	22,572
45~49세	17,335	2,695	26,008	17,473	20,549	27,164	23,398	19,982	8,485	27,890
50~54세	21,660	3,113	32,572	22,513	23,484	33,029	27,794	26,643	10,486	36,332
55~59세	21,789	3,074	33,297	23,928	23,055	34,945	28,553	28,598	10,144	38,998
60~64세	22,933	3,106	34,833	25,990	22,555	36,746	30,395	32,384	9,198	37,486
65세	3,778	573	5,616	4,502	3,460	6,059	5,271	5,609	1,494	4,496
66~69세	8,856	1,306	14,117	10,848	8,301	15,583	12,922	13,401	3,358	13,393
70세 이상	12,054	1,679	25,462	19,246	13,827	35,213	26,314	23,949	5,578	16,140

<부표 13>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7년	5,247,096	4,388,144	428,457	167,976	91,425
19세 이하	55,808	52,236	2,968	499	80
20~24세	198,288	192,625	4,908	619	106
25~29세	324,423	303,955	15,180	3,625	1,149
30~34세	357,701	324,600	21,749	6,539	2,684
35~39세	426,302	371,249	32,117	11,224	5,327
40~44세	470,450	386,773	43,473	17,119	8,987
45~49세	638,837	503,162	64,391	27,389	15,359
50~54세	682,225	520,269	71,984	32,401	19,101
55~59세	756,756	570,257	78,826	36,469	21,945
60~64세	581,941	472,076	54,660	20,521	11,259
65세	94,129	80,374	7,610	2,667	1,279
66~69세	269,885	238,740	18,085	5,799	2,823
70세 이상	390,351	371,828	12,506	3,105	1,326

<부표 13>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7년	57,354	39,257	27,875	19,646	26,962
19세 이하	18	6	1	0	0
20~24세	23	4	1	0	2
25~29세	354	104	35	14	7
30~34세	1,169	521	223	121	95
35~39세	2,763	1,582	914	517	609
40~44세	5,313	3,317	2,134	1,453	1,881
45~49세	9,696	6,561	4,594	3,143	4,542
50~54세	12,354	8,725	6,320	4,632	6,439
55~59세	15,347	11,141	8,374	5,972	8,425
60~64세	7,282	5,354	3,991	2,906	3,892
65세	796	502	320	252	329
66~69세	1,554	1,051	739	491	603
70세 이상	685	389	229	145	138

<부표 13>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8년	5,527,186	4,598,454	461,534	178,521	95,854
19세 이하	65,760	60,878	4,077	654	118
20~24세	189,297	182,886	5,423	841	117
25~29세	344,595	318,900	18,449	4,944	1,558
30~34세	365,837	327,774	24,486	7,726	3,237
35~39세	451,393	390,112	35,749	12,530	5,755
40~44세	465,048	380,802	43,769	17,248	8,889
45~49세	643,911	503,759	66,417	28,017	15,215
50~54세	712,109	539,421	76,354	33,566	19,743
55~59세	786,278	588,715	82,451	37,589	22,420
60~64세	653,258	528,292	61,172	22,422	12,497
65세	88,908	75,571	7,220	2,456	1,318
66~69세	305,558	269,102	20,742	6,701	3,277
70세 이상	455,234	432,242	15,225	3,827	1,710

<부표 13>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8년	60,152	41,492	30,079	21,960	39,140
19세 이하	22	10	1	0	0
20~24세	23	4	1	0	2
25~29세	473	189	49	22	11
30~34세	1,409	651	295	134	125
35~39세	3,047	1,794	1,042	605	759
40~44세	5,235	3,273	2,072	1,444	2,316
45~49세	9,717	6,777	4,665	3,375	5,969
50~54세	12,765	9,169	6,745	5,019	9,327
55~59세	15,666	11,290	8,982	6,695	12,470
60~64세	8,249	6,030	4,631	3,579	6,386
65세	787	516	327	240	473
66~69세	1,902	1,266	928	630	1,010
70세 이상	857	523	341	217	292

<부표 13>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9년	5,772,489	4,799,533	475,573	187,082	100,361
19세 이하	74,673	68,487	5,133	851	160
20~24세	170,542	164,109	5,268	914	206
25~29세	360,947	332,070	19,534	6,097	2,121
30~34세	373,768	332,080	25,409	9,075	3,877
35~39세	456,163	392,924	35,511	13,577	6,285
40~44세	471,085	385,100	43,585	18,067	9,199
45~49세	640,062	498,988	65,368	28,530	15,631
50~54세	734,470	555,439	77,734	34,640	20,156
55~59세	802,962	598,941	83,943	38,249	22,828
60~64세	722,343	585,180	67,247	23,582	13,086
65세	110,548	94,538	8,689	2,820	1,544
66~69세	329,149	291,602	21,323	6,407	3,401
70세 이상	525,777	500,075	16,829	4,273	1,867

<부표 13>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9년	61,889	42,457	31,248	23,392	50,954
19세 이하	28	13	1	0	0
20~24세	33	8	2	0	2
25~29세	740	257	89	25	14
30~34세	1,739	865	386	185	152
35~39세	3,238	1,904	1,182	644	898
40~44세	5,371	3,343	2,231	1,491	2,698
45~49세	9,543	6,607	4,786	3,414	7,195
50~54세	13,078	9,249	6,965	5,254	11,955
55~59세	15,483	11,448	8,794	6,967	16,309
60~64세	8,736	6,223	5,014	4,078	9,197
65세	921	562	411	354	709
66~69세	2,000	1,352	970	701	1,393
70세 이상	979	626	417	279	432

<부표 13>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20년	5,933,707	4,975,567	449,632	182,960	101,712
19세 이하	83,625	76,089	6,155	1,119	204
20~24세	153,685	147,047	5,282	1,029	256
25~29세	365,153	335,160	19,590	6,189	2,544
30~34세	379,062	336,663	24,172	9,251	4,574
35~39세	452,255	390,585	32,576	13,288	6,904
40~44세	482,477	397,039	41,238	18,006	9,648
45~49세	617,102	483,221	59,582	26,718	15,524
50~54세	738,737	560,971	73,960	34,585	20,148
55~59세	796,787	595,423	79,347	37,501	22,686
60~64세	767,438	627,215	67,717	23,393	12,974
65세	131,585	114,877	8,799	2,910	1,492
66~69세	374,031	339,760	18,523	5,798	3,112
70세 이상	591,770	571,517	12,691	3,173	1,646

<부표 13>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20년	63,708	43,395	31,292	23,887	61,554
19세 이하	42	14	2	0	0
20~24세	55	11	2	1	2
25~29세	1,061	396	142	45	26
30~34세	2,217	1,109	593	251	232
35~39세	3,736	2,092	1,251	780	1,043
40~44세	5,798	3,581	2,357	1,550	3,260
45~49세	9,579	6,408	4,546	3,408	8,116
50~54세	13,353	9,315	6,908	5,365	14,132
55~59세	15,394	11,468	8,577	7,023	19,368
60~64세	8,553	6,368	5,094	4,076	12,048
65세	1,018	671	470	342	1,006
66~69세	1,977	1,373	956	757	1,775
70세 이상	925	589	394	289	546

<부표 13>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21년	5,790,886	4,822,374	437,660	183,109	104,516
19세 이하	93,441	84,258	7,362	1,432	296
20~24세	139,792	133,041	5,251	1,112	285
25~29세	353,674	323,965	18,654	6,234	2,667
30~34세	391,614	348,586	23,224	9,124	4,877
35~39세	444,595	383,710	30,520	12,472	7,243
40~44세	499,759	413,102	40,239	17,538	10,106
45~49세	587,905	461,248	54,227	25,136	14,844
50~54세	749,264	568,821	72,632	34,250	20,693
55~59세	796,777	592,652	78,105	37,344	22,908
60~64세	805,518	656,661	70,096	25,183	13,771
65세	131,930	114,742	8,894	3,068	1,642
66~69세	318,694	282,078	17,899	6,935	3,596
70세 이상	477,923	459,510	10,557	3,281	1,588

<부표 13>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21년	67,364	46,033	32,933	24,603	72,294
19세 이하	67	20	5	1	0
20~24세	77	18	5	1	2
25~29세	1,233	561	239	76	45
30~34세	2,837	1,413	804	395	354
35~39세	4,278	2,584	1,491	899	1,398
40~44세	6,379	4,172	2,693	1,835	3,695
45~49세	9,385	6,534	4,521	3,287	8,723
50~54세	13,967	9,772	7,254	5,347	16,528
55~59세	15,959	11,563	8,782	7,075	22,389
60~64세	9,018	6,541	5,145	4,187	14,916
65세	975	607	484	344	1,174
66~69세	2,249	1,595	1,092	853	2,397
70세 이상	940	653	418	303	673

<부표 14>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7년	5,247,096	4,317,108	464,764	178,228	95,732	59,207
19세 이하	55,808	52,298	2,916	492	76	19
20~24세	198,288	192,674	4,883	601	99	22
25~29세	324,423	303,726	15,385	3,636	1,156	345
30~34세	357,701	322,420	23,429	6,862	2,732	1,222
35~39세	426,302	366,388	35,320	12,028	5,608	2,841
40~44세	470,450	379,641	47,429	18,219	9,517	5,580
45~49세	638,837	492,443	69,359	29,043	16,310	9,959
50~54세	682,225	508,602	76,796	33,986	19,844	12,815
55~59세	756,756	556,299	84,253	38,247	22,787	15,719
60~64세	581,941	462,933	59,175	21,584	11,760	7,398
65세	94,129	79,084	8,382	2,887	1,340	784
66~69세	269,885	234,525	20,847	6,449	2,950	1,718
70세 이상	390,351	366,075	16,590	4,194	1,553	785

<부표 14>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7년	40,038	28,752	21,272	15,594	26,401
19세 이하	6	1	0	0	0
20~24세	6	1	0	0	2
25~29세	115	36	14	7	3
30~34세	534	243	133	67	59
35~39세	1,653	973	591	381	519
40~44세	3,411	2,229	1,585	1,091	1,748
45~49세	6,742	4,806	3,421	2,455	4,299
50~54세	8,946	6,541	4,875	3,558	6,262
55~59세	11,174	8,500	6,469	4,910	8,398
60~64세	5,429	4,101	3,159	2,411	3,991
65세	502	330	271	189	360
66~69세	1,044	729	593	414	616
70세 이상	476	262	161	111	144

<부표 14>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8년	5,527,186	4,536,534	494,618	187,604	99,423	61,585
19세 이하	65,760	60,993	3,970	649	115	22
20~24세	189,297	182,984	5,359	814	113	19
25~29세	344,595	319,010	18,422	4,902	1,521	470
30~34세	365,837	326,484	25,569	7,889	3,245	1,412
35~39세	451,393	386,203	38,494	13,140	5,925	3,146
40~44세	465,048	375,139	47,160	18,077	9,223	5,459
45~49세	643,911	494,740	70,911	29,429	15,909	10,009
50~54세	712,109	529,138	80,797	35,141	20,374	13,171
55~59세	786,278	576,543	87,526	39,165	23,176	15,752
60~64세	653,258	519,521	65,613	23,466	13,004	8,374
65세	88,908	74,620	7,801	2,588	1,382	780
66~69세	305,558	265,229	23,277	7,311	3,470	1,982
70세 이상	455,234	425,930	19,719	5,033	1,966	989

<부표 14>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8년	42,191	30,141	22,707	17,019	35,364
19세 이하	10	1	0	0	0
20~24세	5	1	0	0	2
25~29세	185	53	21	8	3
30~34세	654	299	139	71	75
35~39세	1,794	1,056	650	406	579
40~44세	3,335	2,149	1,508	1,066	1,932
45~49세	6,880	4,709	3,526	2,511	5,287
50~54세	9,366	6,726	5,146	3,910	8,340
55~59세	11,634	8,838	6,909	5,277	11,458
60~64세	6,008	4,710	3,672	2,876	6,014
65세	488	340	254	198	457
66~69세	1,262	903	638	530	956
70세 이상	570	356	244	166	261

<부표 14>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9년	5,772,489	4,755,141	501,393	193,393	102,111	62,765
19세 이하	74,673	68,738	4,922	822	152	26
20~24세	170,542	164,498	4,980	843	183	24
25~29세	360,947	332,915	19,119	5,889	1,994	694
30~34세	373,768	332,007	25,853	8,950	3,755	1,676
35~39세	456,163	390,547	37,638	13,783	6,291	3,232
40~44세	471,085	381,296	46,341	18,541	9,285	5,444
45~49세	640,062	492,720	69,058	29,337	16,009	9,702
50~54세	734,470	547,829	81,306	35,885	20,523	13,374
55~59세	802,962	589,776	88,060	39,629	23,254	15,632
60~64세	722,343	578,616	70,371	24,447	13,359	8,883
65세	110,548	93,694	9,230	2,915	1,594	934
66~69세	329,149	288,800	23,136	6,881	3,541	2,053
70세 이상	525,777	493,705	21,379	5,471	2,171	1,091

<부표 14>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9년	42,421	31,050	23,185	18,000	43,030
19세 이하	12	1	0	0	0
20~24세	11	1	0	0	2
25~29세	220	79	25	7	5
30~34세	829	367	174	79	78
35~39세	1,857	1,145	667	413	590
40~44세	3,383	2,181	1,496	1,005	2,113
45~49세	6,633	4,766	3,351	2,575	5,911
50~54세	9,275	6,990	5,211	4,063	10,014
55~59세	11,404	8,791	6,925	5,655	13,836
60~64세	6,311	4,940	3,993	3,225	8,198
65세	543	386	340	264	648
66~69세	1,294	957	704	520	1,263
70세 이상	649	446	299	194	372

<부표 14>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20년	5,933,707	4,968,032	459,650	181,789	99,668	62,256
19세 이하	83,625	76,610	5,757	1,028	179	36
20~24세	153,685	147,980	4,614	844	191	44
25~29세	365,153	337,172	18,690	5,658	2,285	866
30~34세	379,062	338,082	23,983	8,861	4,231	1,967
35~39세	452,255	390,880	33,525	12,994	6,551	3,465
40~44세	482,477	396,246	42,863	17,968	9,312	5,576
45~49세	617,102	481,197	61,976	26,720	15,275	9,407
50~54세	738,737	558,110	76,488	34,628	20,043	13,162
55~59세	796,787	591,649	81,868	37,803	22,520	15,304
60~64세	767,438	626,645	67,843	22,962	12,810	8,565
65세	131,585	115,010	8,757	2,822	1,479	960
66~69세	374,031	339,567	18,737	5,769	3,060	1,920
70세 이상	591,770	568,884	14,549	3,732	1,732	984

<부표 14>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20년	41,827	30,495	23,078	17,828	49,084
19세 이하	14	1	0	0	0
20~24세	9	1	0	0	2
25~29세	315	112	38	11	6
30~34세	1,022	492	225	107	92
35~39세	1,930	1,186	716	423	585
40~44세	3,475	2,175	1,504	1,058	2,300
45~49세	6,158	4,511	3,220	2,364	6,274
50~54세	9,067	6,797	5,269	3,976	11,197
55~59세	11,190	8,526	6,748	5,503	15,676
60~64세	6,185	4,908	4,072	3,318	10,130
65세	622	449	329	293	864
66~69세	1,290	918	699	556	1,515
70세 이상	550	419	258	219	443

<부표 14>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21년	5,790,886	4,851,588	434,676	175,997	97,945	63,076
19세 이하	93,441	85,262	6,640	1,238	237	45
20~24세	139,792	134,629	4,139	800	166	45
25~29세	353,674	327,573	17,048	5,313	2,142	993
30~34세	391,614	351,813	22,367	8,412	4,332	2,368
35~39세	444,595	386,104	30,793	11,985	6,557	3,825
40~44세	499,759	415,253	40,980	17,112	9,413	5,950
45~49세	587,905	463,125	55,693	24,592	13,955	8,935
50~54세	749,264	570,660	74,426	33,639	19,935	13,296
55~59세	796,777	594,279	79,466	37,077	22,083	15,212
60~64세	805,518	664,445	66,176	23,182	12,746	8,495
65세	131,930	115,979	8,298	2,787	1,458	884
66~69세	318,694	284,155	16,996	6,396	3,354	2,087
70세 이상	477,923	458,311	11,654	3,464	1,567	941

<부표 14>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21년	42,249	30,505	22,709	17,880	54,261
19세 이하	16	2	1	0	0
20~24세	9	2	0	0	2
25~29세	389	151	42	16	7
30~34세	1,153	634	279	142	114
35~39세	2,150	1,238	789	477	677
40~44세	3,668	2,380	1,546	1,061	2,396
45~49세	5,933	4,257	2,912	2,265	6,238
50~54세	9,154	6,700	5,102	4,017	12,335
55~59세	11,041	8,384	6,685	5,382	17,168
60~64세	6,197	4,909	4,019	3,431	11,918
65세	550	424	315	256	979
66~69세	1,416	1,013	737	625	1,915
70세 이상	573	411	282	208	512

<부표 15> 연령별 내·외국인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2017년	내국인	외국인	2018년	내국인	외국인	2019년	내국인	외국인
합계	5,247,096	4,766,062	481,034	5,527,186	4,993,207	533,979	5,772,489	5,196,412	576,077
19세 이하	55,808	14,700	41,108	65,760	10,843	54,917	74,673	9,746	64,927
20~24세	198,288	192,406	5,882	189,297	183,100	6,197	170,542	164,279	6,263
25~29세	324,423	298,929	25,494	344,595	319,053	25,542	360,947	337,555	23,392
30~34세	357,701	316,019	41,682	365,837	318,444	47,393	373,768	323,791	49,977
35~39세	426,302	385,254	41,048	451,393	405,720	45,673	456,163	407,341	48,822
40~44세	470,450	427,223	43,227	465,048	419,616	45,432	471,085	421,781	49,304
45~49세	638,837	576,267	62,570	643,911	579,755	64,156	640,062	575,692	64,370
50~54세	682,225	612,589	69,636	712,109	641,770	70,339	734,470	661,922	72,548
55~59세	756,756	696,837	59,919	786,278	717,855	68,423	802,962	726,953	76,009
60~64세	581,941	531,169	50,772	653,258	595,927	57,331	722,343	660,525	61,818
65세	94,129	86,862	7,267	88,908	80,599	8,309	110,548	100,649	9,899
66~69세	269,885	248,864	21,021	305,558	280,761	24,797	329,149	301,667	27,482
70세 이상	390,351	378,943	11,408	455,234	439,764	15,470	525,777	504,511	21,266

<부표 15> 연령별 내·외국인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2020년	내국인	외국인	2021년	내국인	외국인
합계	5,933,707	5,327,929	605,778	5,790,886	5,161,455	629,431
19세 이하	83,625	9,298	74,327	93,441	8,542	84,899
20~24세	153,685	147,869	5,816	139,792	134,069	5,723
25~29세	365,153	345,009	20,144	353,674	335,627	18,047
30~34세	379,062	329,677	49,385	391,614	345,162	46,452
35~39세	452,255	399,336	52,919	444,595	386,997	57,598
40~44세	482,477	431,882	50,595	499,759	447,660	52,099
45~49세	617,102	555,801	61,301	587,905	529,290	58,615
50~54세	738,737	665,294	73,443	749,264	673,942	75,322
55~59세	796,787	716,901	79,886	796,777	709,319	87,458
60~64세	767,438	699,892	67,546	805,518	740,217	65,301
65세	131,585	120,483	11,102	131,930	119,931	11,999
66~69세	374,031	341,475	32,556	318,694	284,211	34,483
70세 이상	591,770	565,012	26,758	477,923	446,488	31,435

<부표 16> 지역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7년	5,247,096	4,388,144	428,457	167,976	91,425
서울	829,277	669,864	76,057	32,640	17,704
인천	316,408	259,903	26,402	10,865	6,257
경기	1,107,822	906,231	99,169	39,400	21,588
대구	241,538	202,901	18,613	7,277	4,085
경북	284,747	244,447	21,560	7,871	3,969
경남	301,575	265,381	20,814	6,831	3,207
부산	356,151	301,568	27,277	10,329	5,557
울산	113,267	98,155	8,462	3,117	1,638
대전	152,154	124,509	12,972	5,179	3,082
세종	22,042	17,714	2,150	854	441
충남	236,939	199,356	19,271	7,485	4,013
충북	170,380	144,155	13,666	5,222	2,690
광주	165,644	139,246	13,421	4,938	2,804
전남	263,632	224,632	19,216	7,329	4,313
전북	219,802	188,054	17,113	6,216	3,147
강원	209,095	179,385	15,576	5,750	3,161
제주	69,818	60,687	5,440	1,845	877
기타	186,805	161,956	11,278	4,828	2,892

<부표 16> 지역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7년	57,354	39,257	27,875	19,646	26,962
서울	11,131	7,604	5,565	3,822	4,890
인천	4,005	2,929	2,225	1,485	2,337
경기	13,449	9,351	6,732	4,861	7,041
대구	2,604	1,854	1,400	1,116	1,688
경북	2,450	1,537	1,058	792	1,063
경남	1,882	1,230	820	586	824
부산	3,664	2,565	1,990	1,470	1,731
울산	852	482	217	148	196
대전	1,990	1,513	1,053	785	1,071
세종	286	211	131	96	159
충남	2,628	1,710	1,065	617	794
충북	1,652	1,040	746	515	694
광주	1,725	1,184	860	615	851
전남	2,842	1,887	1,258	847	1,308
전북	1,914	1,309	851	550	648
강원	1,963	1,237	810	583	630
제주	439	240	123	90	77
기타	1,878	1,374	971	668	960

<부표 16> 지역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8년	5,527,186	4,598,454	461,534	178,521	95,854
서울	870,838	700,528	80,741	33,589	18,531
인천	332,851	272,104	28,521	11,311	6,410
경기	1,180,675	958,360	108,192	43,305	23,249
대구	250,605	210,217	19,281	7,575	4,085
경북	294,412	252,499	22,268	8,092	4,093
경남	317,747	276,895	23,813	7,619	3,454
부산	374,508	314,928	30,046	11,087	5,812
울산	121,731	103,805	10,231	3,507	1,830
대전	158,424	129,573	13,381	5,335	3,152
세종	24,385	19,623	2,377	906	485
충남	247,921	207,606	20,620	7,908	4,124
충북	178,771	150,676	14,735	5,380	2,811
광주	172,915	144,787	13,984	5,273	2,922
전남	272,974	232,201	20,120	7,458	4,235
전북	226,843	193,320	17,978	6,487	3,248
강원	216,761	185,885	16,150	5,893	3,148
제주	72,945	63,317	5,688	1,948	915
기타	211,880	182,130	13,408	5,848	3,350

<부표 16> 지역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8년	60,152	41,492	30,079	21,960	39,140
서울	11,605	8,007	6,050	4,435	7,352
인천	4,219	3,017	2,243	1,751	3,275
경기	14,548	9,967	7,418	5,367	10,269
대구	2,748	1,879	1,376	1,158	2,286
경북	2,455	1,637	1,129	785	1,454
경남	1,958	1,357	867	605	1,179
부산	3,812	2,637	2,004	1,547	2,635
울산	1,028	594	291	166	279
대전	1,992	1,529	1,134	806	1,522
세종	299	208	161	111	215
충남	2,587	1,849	1,226	819	1,182
충북	1,729	1,103	762	582	993
광주	1,832	1,293	914	678	1,232
전남	2,843	2,008	1,343	987	1,779
전북	1,952	1,301	978	619	960
강원	1,953	1,298	902	592	940
제주	479	254	136	86	122
기타	2,113	1,554	1,145	866	1,466

<부표 16> 지역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9년	5,772,489	4,799,533	475,573	187,082	100,361
서울	905,219	728,122	82,342	34,489	19,201
인천	347,409	284,442	29,106	11,881	6,469
경기	1,245,732	1,008,974	112,456	46,424	25,062
대구	259,119	217,989	19,515	7,538	4,190
경북	303,283	261,067	22,280	8,009	4,140
경남	330,279	286,820	24,891	8,424	3,819
부산	389,106	327,080	31,042	11,756	6,016
울산	127,697	108,481	10,716	3,898	1,961
대전	164,539	134,819	13,766	5,433	3,104
세종	26,161	21,074	2,557	934	517
충남	257,825	215,838	21,040	8,267	4,367
충북	184,795	155,948	14,875	5,525	2,876
광주	179,612	150,574	14,169	5,394	2,988
전남	282,542	240,284	20,657	7,829	4,158
전북	232,696	198,934	17,902	6,419	3,317
강원	223,455	192,035	16,371	5,962	3,108
제주	75,971	66,164	5,758	1,948	947
기타	237,049	200,888	16,130	6,952	4,121

<부표 16> 지역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9년	61,889	42,457	31,248	23,392	50,954
서울	11,987	8,300	6,178	4,725	9,875
인천	4,205	3,091	2,242	1,791	4,182
경기	15,446	10,514	7,699	5,795	13,362
대구	2,686	1,884	1,365	1,115	2,837
경북	2,465	1,579	1,175	793	1,775
경남	1,988	1,318	958	637	1,424
부산	3,769	2,609	1,949	1,558	3,327
울산	1,073	642	369	203	354
대전	2,018	1,491	1,133	860	1,915
세종	303	217	161	126	272
충남	2,585	1,823	1,299	970	1,636
충북	1,732	1,124	827	602	1,286
광주	1,903	1,307	986	703	1,588
전남	2,772	1,948	1,480	1,126	2,288
전북	1,945	1,289	946	677	1,267
강원	1,907	1,296	954	618	1,204
제주	498	246	165	86	159
기타	2,607	1,779	1,362	1,007	2,203

<부표 16> 지역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20년	5,933,707	4,975,567	449,632	182,960	101,712
서울	925,034	752,162	76,949	33,199	19,085
인천	357,718	295,932	27,525	11,529	6,490
경기	1,283,018	1,047,737	107,029	45,589	25,654
대구	265,658	225,476	18,530	7,360	4,126
경북	308,496	268,684	20,275	7,623	3,980
경남	338,469	296,499	22,881	8,302	4,078
부산	398,944	338,667	29,057	11,385	6,215
울산	131,936	112,345	10,473	3,995	2,111
대전	168,021	139,301	12,911	5,164	3,109
세종	27,130	22,242	2,325	917	518
충남	264,868	223,504	19,936	7,963	4,440
충북	186,946	160,190	13,175	5,061	2,782
광주	184,125	156,155	13,103	5,252	2,869
전남	288,699	246,684	19,738	7,734	4,227
전북	235,737	204,570	15,884	5,844	3,152
강원	227,626	197,833	15,082	5,614	2,962
제주	77,730	68,706	5,265	1,731	886
기타	263,552	218,880	19,494	8,698	5,028

<부표 16> 지역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20년	63,708	43,395	31,292	23,887	61,554
서울	12,193	8,422	6,187	4,751	12,086
인천	4,249	3,024	2,251	1,776	4,942
경기	16,286	11,039	7,869	5,923	15,892
대구	2,631	1,927	1,302	1,075	3,231
경북	2,397	1,577	1,070	819	2,071
경남	2,174	1,330	885	672	1,648
부산	3,849	2,596	1,861	1,441	3,873
울산	1,180	728	422	223	459
대전	1,888	1,478	1,118	810	2,242
세종	291	236	161	113	327
충남	2,790	1,752	1,336	1,022	2,125
충북	1,722	1,102	807	607	1,500
광주	1,867	1,295	935	753	1,896
전남	2,698	1,897	1,483	1,229	3,009
전북	1,922	1,257	914	677	1,517
강원	1,825	1,311	914	664	1,421
제주	472	250	145	101	174
기타	3,274	2,174	1,632	1,231	3,141

<부표 16> 지역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21년	5,790,886	4,822,374	437,660	183,109	104,516
서울	897,740	725,026	73,416	32,778	19,423
인천	349,314	286,596	27,193	11,419	6,755
경기	1,268,012	1,031,870	102,899	44,881	26,367
대구	256,939	216,050	18,421	7,402	4,238
경북	295,383	256,379	19,270	7,303	4,041
경남	328,889	285,946	22,557	8,445	4,314
부산	382,440	322,190	27,960	11,468	6,284
울산	129,512	109,368	10,218	4,185	2,194
대전	163,095	134,680	12,279	5,175	3,033
세종	27,203	22,328	2,292	888	512
충남	259,518	217,705	19,310	7,980	4,516
충북	179,764	153,614	12,564	4,844	2,753
광주	178,989	151,029	12,694	5,258	2,913
전남	277,383	235,591	18,562	7,778	4,280
전북	224,067	193,734	14,950	5,771	3,013
강원	217,401	187,752	14,647	5,600	2,982
제주	75,894	67,287	4,968	1,621	856
기타	279,343	225,229	23,460	10,313	6,042

<부표 16> 지역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21년	67,364	46,033	32,933	24,603	72,294
서울	12,609	8,913	6,330	4,958	14,287
인천	4,422	3,047	2,340	1,829	5,713
경기	17,068	11,862	8,357	6,265	18,443
대구	2,701	1,988	1,399	1,046	3,694
경북	2,488	1,616	1,115	800	2,371
경남	2,581	1,511	987	624	1,924
부산	4,163	2,729	1,911	1,397	4,338
울산	1,353	836	472	313	573
대전	1,988	1,412	1,141	861	2,526
세종	288	246	163	116	370
충남	2,948	1,954	1,421	1,007	2,677
충북	1,734	1,160	827	586	1,682
광주	1,859	1,298	988	714	2,236
전남	2,873	1,946	1,532	1,195	3,626
전북	1,937	1,302	884	678	1,798
강원	1,889	1,270	918	685	1,658
제주	459	263	140	102	198
기타	4,004	2,680	2,008	1,427	4,180

<부표 17> 지역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7년	5,247,096	4,317,108	464,764	178,228	95,732	59,207
서울	829,277	658,711	81,933	34,097	18,288	11,362
인천	316,408	255,632	28,473	11,562	6,382	4,132
경기	1,107,822	891,284	107,059	41,487	22,449	13,669
대구	241,538	199,159	20,456	7,777	4,290	2,719
경북	284,747	240,299	23,848	8,432	4,277	2,528
경남	301,575	261,307	23,024	7,491	3,560	1,984
부산	356,151	297,269	29,259	10,891	5,824	3,677
울산	113,267	97,194	8,967	3,269	1,722	920
대전	152,154	122,470	13,940	5,387	3,132	2,075
세종	22,042	17,489	2,251	900	454	275
충남	236,939	196,310	20,833	7,977	4,264	2,715
충북	170,380	141,527	14,996	5,585	2,890	1,765
광주	165,644	136,650	14,710	5,334	2,942	1,847
전남	263,632	220,456	21,202	8,160	4,670	2,973
전북	219,802	184,332	19,090	6,712	3,463	2,058
강원	209,095	176,399	17,158	6,226	3,286	2,027
제주	69,818	59,826	5,826	2,009	933	531
기타	186,805	160,794	11,739	4,932	2,906	1,950

<부표 17> 지역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7년	40,038	28,752	21,272	15,594	26,401
서울	7,575	5,744	4,113	2,974	4,480
인천	2,891	2,197	1,670	1,220	2,249
경기	9,435	6,764	5,056	3,773	6,846
대구	1,861	1,407	1,176	893	1,800
경북	1,680	1,095	890	636	1,062
경남	1,325	916	625	502	841
부산	2,669	1,945	1,603	1,172	1,842
울산	516	228	162	105	184
대전	1,547	1,107	823	624	1,049
세종	202	134	111	86	140
충남	1,717	1,159	693	478	793
충북	1,148	748	567	393	761
광주	1,204	891	695	509	862
전남	1,945	1,367	946	737	1,176
전북	1,377	943	660	473	694
강원	1,317	941	621	458	662
제주	279	159	114	59	82
기타	1,350	1,007	747	502	878

<부표 17> 지역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8년	5,527,186	4,536,534	494,618	187,604	99,423	61,585
서울	870,838	690,771	86,160	34,925	19,068	11,700
인천	332,851	268,343	30,428	11,940	6,544	4,296
경기	1,180,675	945,076	115,741	45,044	24,020	14,723
대구	250,605	206,958	20,963	8,027	4,255	2,826
경북	294,412	248,894	24,307	8,590	4,331	2,563
경남	317,747	273,364	25,825	8,160	3,731	2,021
부산	374,508	311,219	31,884	11,547	6,052	3,814
울산	121,731	103,020	10,669	3,643	1,860	1,081
대전	158,424	127,871	14,190	5,547	3,175	2,080
세종	24,385	19,448	2,454	946	487	299
충남	247,921	204,949	22,032	8,371	4,323	2,660
충북	178,771	148,365	15,948	5,730	2,941	1,830
광주	172,915	142,532	15,130	5,613	3,026	1,945
전남	272,974	228,525	21,881	8,260	4,555	2,934
전북	226,843	190,131	19,657	6,917	3,553	2,094
강원	216,761	183,315	17,545	6,331	3,226	1,983
제주	72,945	62,587	6,027	2,073	951	553
기타	211,880	181,166	13,777	5,940	3,325	2,183

<부표 17> 지역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8년	42,191	30,141	22,707	17,019	35,364
서울	8,100	5,844	4,669	3,282	6,319
인천	3,005	2,243	1,732	1,366	2,954
경기	9,976	7,275	5,464	4,173	9,183
대구	1,901	1,414	1,067	945	2,249
경북	1,719	1,169	855	648	1,336
경남	1,381	983	669	501	1,112
부산	2,691	2,010	1,522	1,259	2,510
울산	620	289	198	102	249
대전	1,517	1,124	886	662	1,372
세종	202	154	107	100	188
충남	1,879	1,245	857	544	1,061
충북	1,187	821	559	459	931
광주	1,312	925	731	529	1,172
전남	2,082	1,400	1,014	751	1,572
전북	1,372	937	744	528	910
강원	1,390	966	664	469	872
제주	308	163	104	73	106
기타	1,549	1,179	865	628	1,268

<부표 17> 지역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9년	5,772,489	4,755,141	501,393	193,393	102,111	62,765
서울	905,219	721,104	86,775	35,476	19,313	12,005
인천	347,409	281,777	30,560	12,312	6,567	4,215
경기	1,245,732	999,637	118,261	47,662	25,374	15,578
대구	259,119	215,514	20,908	7,826	4,300	2,739
경북	303,283	258,256	23,969	8,433	4,253	2,532
경남	330,279	284,199	26,509	8,761	3,934	2,097
부산	389,106	324,645	32,237	11,998	6,177	3,783
울산	127,697	108,162	10,928	3,935	1,925	1,114
대전	164,539	133,610	14,418	5,552	3,117	2,082
세종	26,161	20,996	2,596	945	523	289
충남	257,825	213,960	22,157	8,571	4,490	2,620
충북	184,795	154,247	15,839	5,773	2,961	1,794
광주	179,612	148,824	15,079	5,675	3,081	1,983
전남	282,542	237,431	22,150	8,419	4,387	2,896
전북	232,696	196,319	19,386	6,757	3,544	2,046
강원	223,455	190,115	17,453	6,313	3,171	1,908
제주	75,971	65,606	6,050	2,042	948	544
기타	237,049	200,739	16,118	6,943	4,046	2,540

<부표 17> 지역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9년	42,421	31,050	23,185	18,000	43,030
서울	8,265	6,033	4,618	3,686	7,944
인천	3,085	2,202	1,743	1,441	3,507
경기	10,350	7,568	5,656	4,397	11,249
대구	1,930	1,356	1,063	853	2,630
경북	1,635	1,178	839	642	1,546
경남	1,302	1,005	694	509	1,269
부산	2,589	1,955	1,523	1,210	2,989
울산	634	396	194	134	275
대전	1,473	1,088	889	671	1,639
세종	229	141	121	84	237
충남	1,819	1,328	929	643	1,308
충북	1,161	843	596	458	1,123
광주	1,283	979	726	572	1,410
전남	1,978	1,489	1,102	810	1,880
전북	1,323	955	687	553	1,126
강원	1,286	1,036	652	483	1,038
제주	287	181	110	74	129
기타	1,792	1,317	1,043	780	1,731

<부표 17> 지역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20년	5,933,707	4,968,032	459,650	181,789	99,668	62,256
서울	925,034	750,378	79,460	33,055	18,704	11,757
인천	357,718	295,684	27,905	11,473	6,394	4,141
경기	1,283,018	1,047,075	109,358	44,926	25,042	15,863
대구	265,658	224,769	19,060	7,324	4,082	2,602
경북	308,496	267,733	21,022	7,647	3,988	2,364
경남	338,469	295,951	23,411	8,257	4,002	2,130
부산	398,944	338,273	29,388	11,312	6,064	3,786
울산	131,936	112,764	10,383	3,879	1,978	1,105
대전	168,021	139,103	13,105	5,146	2,998	1,911
세종	27,130	22,357	2,264	904	492	284
충남	264,868	223,366	20,282	7,970	4,367	2,661
충북	186,946	159,650	13,619	5,065	2,754	1,716
광주	184,125	155,517	13,503	5,284	2,913	1,883
전남	288,699	245,760	20,489	7,904	4,154	2,742
전북	235,737	203,499	16,577	5,955	3,155	1,976
강원	227,626	197,339	15,467	5,622	2,912	1,820
제주	77,730	68,556	5,310	1,744	897	468
기타	263,552	220,258	19,047	8,322	4,772	3,047

<부표 17> 지역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20년	41,827	30,495	23,078	17,828	49,084
서울	8,177	5,967	4,586	3,562	9,388
인천	2,851	2,243	1,669	1,364	3,994
경기	10,491	7,473	5,796	4,330	12,664
대구	1,888	1,316	986	829	2,802
경북	1,534	1,094	796	645	1,673
경남	1,260	885	698	497	1,378
부산	2,431	1,878	1,379	1,153	3,280
울산	737	365	266	130	329
대전	1,434	1,052	803	645	1,824
세종	236	137	114	89	253
충남	1,715	1,324	938	698	1,547
충북	1,097	767	606	439	1,233
광주	1,242	934	706	541	1,602
전남	1,881	1,505	1,138	898	2,228
전북	1,235	909	640	530	1,261
강원	1,212	956	671	463	1,164
제주	281	156	116	64	138
기타	2,125	1,534	1,170	951	2,326

<부표 17> 지역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21년	5,790,886	4,851,588	434,676	175,997	97,945	63,076
서울	897,740	728,605	74,449	31,878	18,165	11,877
인천	349,314	288,613	26,810	10,956	6,381	4,200
경기	1,268,012	1,039,305	102,716	43,078	24,600	15,972
대구	256,939	216,989	18,340	7,052	4,040	2,546
경북	295,383	257,127	19,228	7,152	3,844	2,304
경남	328,889	287,487	22,219	7,954	4,099	2,271
부산	382,440	323,986	27,518	10,964	5,887	3,899
울산	129,512	110,458	9,882	3,959	2,011	1,213
대전	163,095	135,581	12,110	4,916	2,859	1,909
세종	27,203	22,642	2,137	846	461	283
충남	259,518	219,283	19,140	7,607	4,256	2,711
충북	179,764	154,232	12,468	4,697	2,576	1,684
광주	178,989	151,532	12,619	5,148	2,748	1,858
전남	277,383	236,155	18,906	7,669	4,024	2,765
전북	224,067	194,082	15,006	5,600	2,910	1,887
강원	217,401	188,702	14,441	5,347	2,727	1,747
제주	75,894	67,534	4,811	1,568	827	442
기타	279,343	229,275	21,876	9,606	5,530	3,508

<부표 17> 지역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21년	42,249	30,505	22,709	17,880	54,261
서울	8,130	5,903	4,573	3,615	10,545
인천	2,786	2,179	1,665	1,344	4,380
경기	10,725	7,806	5,561	4,430	13,819
대구	1,860	1,356	980	755	3,021
경북	1,559	981	783	584	1,821
경남	1,377	868	625	521	1,468
부산	2,521	1,802	1,313	1,025	3,525
울산	766	414	265	173	371
대전	1,289	1,079	788	597	1,967
세종	233	139	100	89	273
충남	1,753	1,276	937	747	1,808
충북	1,094	737	575	422	1,279
광주	1,161	936	684	559	1,744
전남	1,854	1,405	1,138	927	2,540
전북	1,238	808	645	505	1,386
강원	1,187	882	661	468	1,239
제주	258	149	101	60	144
기타	2,458	1,785	1,315	1,059	2,931

<부표 18> 월별 연도별 적립일수

(단위: 일)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44,023,140	138,179,156	134,509,401	129,623,959	125,178,829
1월	9,715,306	10,885,967	10,596,229	9,017,945	9,276,177
2월	10,579,092	9,307,947	8,515,654	9,682,192	8,430,699
3월	12,469,768	12,441,612	11,627,114	11,000,795	11,122,118
4월	12,123,567	12,322,686	11,787,949	11,340,801	11,263,005
5월	12,615,335	12,335,890	12,064,046	10,910,679	10,559,023
6월	12,608,660	12,171,093	11,435,918	11,402,068	10,966,440
7월	11,912,271	11,693,660	11,809,210	10,896,003	11,060,448
8월	12,227,356	10,956,633	11,319,877	9,743,516	10,104,047
9월	12,942,150	10,167,695	9,566,457	10,797,255	9,413,159
10월	11,426,877	12,630,943	12,461,027	11,500,981	11,290,960
11월	13,451,373	12,393,889	12,273,457	11,914,400	11,268,237
12월	11,951,385	10,871,141	11,052,463	11,417,324	10,424,516

<부표 19> 연도별 성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합계	739,075	655,706	83,369
1998년	0	0	0
1999년	0	0	0
2000년	0	0	0
2001년	0	0	0
2002년	4	2	2
2003년	1	1	0
2004년	3,980	3,691	289
2005년	2,814	2,567	247
2006년	23,481	21,570	1,911
2007년	31,894	29,230	2,664
2008년	48,095	44,241	3,854
2009년	40,132	36,120	4,012
2010년	22,398	19,954	2,444
2011년	26,792	24,207	2,585
2012년	31,462	28,587	2,875
2013년	40,481	36,470	4,011
2014년	47,625	42,163	5,462
2015년	44,914	39,621	5,293
2016년	64,456	57,600	6,856
2017년	82,808	72,696	10,112
2018년	69,279	59,290	9,989
2019년	59,971	52,289	7,682
2020년	47,704	41,266	6,438
2021년	50,784	44,141	6,643

<부표 20> 연도별 연령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합계	739,075	85,169	21,599	60,334	76,314	77,239	82,663	93,595
1998년	0	0	0	0	0	0	0	0
1999년	0	0	0	0	0	0	0	0
2000년	0	0	0	0	0	0	0	0
2001년	0	0	0	0	0	0	0	0
2002년	4	0	0	0	0	0	1	3
2003년	1	0	0	0	0	0	0	0
2004년	3,980	2	77	283	676	778	680	488
2005년	2,814	2	42	140	293	460	546	498
2006년	23,481	96	257	1,117	2,435	3,930	5,045	4,232
2007년	31,894	148	509	1,661	2,923	5,230	5,983	5,651
2008년	48,095	173	872	2,671	4,157	6,965	7,858	8,334
2009년	40,132	242	1,042	2,462	3,632	5,436	6,410	7,034
2010년	22,398	101	776	1,584	2,199	2,778	3,283	3,727
2011년	26,792	299	920	2,048	2,389	2,710	3,640	4,720
2012년	31,462	1,035	925	2,249	2,775	3,064	4,283	5,032
2013년	40,481	1,818	1,397	4,405	4,430	4,129	5,312	5,879
2014년	47,625	2,816	1,493	5,444	4,857	4,353	5,616	6,690
2015년	44,914	4,325	1,438	5,317	5,000	4,035	4,462	5,471
2016년	64,456	9,731	1,924	7,772	7,998	5,771	5,904	6,947
2017년	82,808	16,712	2,849	7,902	9,484	7,297	6,331	8,363
2018년	69,279	14,467	2,105	5,665	7,845	6,253	5,307	6,846
2019년	59,971	12,057	1,921	3,978	6,044	5,275	4,770	5,881
2020년	47,704	8,372	1,321	2,955	4,875	4,482	3,765	4,240
2021년	50,784	12,773	1,731	2,681	4,302	4,293	3,467	3,559

<부표 20> 연도별 연령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66~69세	70세 이상
합계	93,270	74,010	53,624	5,848	11,989	3,421
1998년	0	0	0	0	0	0
1999년	0	0	0	0	0	0
2000년	0	0	0	0	0	0
2001년	0	0	0	0	0	0
2002년	0	0	0	0	0	0
2003년	0	1	0	0	0	0
2004년	423	384	149	10	23	7
2005년	414	302	78	6	25	8
2006년	3,609	2,102	502	38	95	23
2007년	4,953	3,273	1,243	83	160	77
2008년	7,796	5,379	3,236	191	348	115
2009년	6,421	4,384	2,483	141	304	141
2010년	3,582	2,640	1,350	125	178	75
2011년	4,365	3,525	1,571	209	309	87
2012년	4,719	3,937	2,610	295	415	123
2013년	5,310	4,279	2,682	235	490	115
2014년	6,631	5,053	3,673	363	482	154
2015년	5,583	4,811	3,480	330	516	146
2016년	7,539	4,932	4,378	418	855	287
2017년	9,427	6,676	5,757	580	1,124	306
2018년	7,007	6,135	5,558	618	1,219	254
2019년	6,128	6,418	5,368	575	1,271	285
2020년	4,789	4,844	5,045	803	1,748	465
2021년	4,574	4,935	4,461	828	2,427	753

<부표 21> 연도별 지역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739,075	234,170	41,329	248,327	10,211	13,247	19,524	13,595	11,699
1998년	0	0	0	0	0	0	0	0	0
1999년	0	0	0	0	0	0	0	0	0
2000년	0	0	0	0	0	0	0	0	0
2001년	0	0	0	0	0	0	0	0	0
2002년	4	1	0	0	1	0	0	1	0
2003년	1	1	0	0	0	0	0	0	0
2004년	3,980	1,657	193	1,285	49	145	94	51	51
2005년	2,814	1,244	140	952	22	42	45	29	18
2006년	23,481	11,068	1,106	7,213	319	352	319	273	221
2007년	31,894	14,783	1,690	9,960	416	547	424	358	317
2008년	48,095	21,010	2,521	16,649	493	682	622	522	504
2009년	40,132	16,428	2,339	14,132	375	560	713	534	420
2010년	22,398	8,793	1,730	7,681	181	306	357	274	238
2011년	26,792	10,551	1,813	9,259	186	439	433	369	249
2012년	31,462	12,008	1,916	10,472	211	441	748	590	585
2013년	40,481	14,336	2,212	13,447	393	660	1,162	737	842
2014년	47,625	15,698	2,394	16,199	549	960	1,464	699	891
2015년	44,914	12,993	2,248	14,803	786	1,275	1,542	894	912
2016년	64,456	16,115	3,135	21,284	825	1,709	2,666	1,312	1,227
2017년	82,808	20,121	4,092	28,666	800	1,702	3,421	1,833	1,756
2018년	69,279	17,025	3,721	24,030	896	1,113	2,010	1,510	1,160
2019년	59,971	15,683	3,691	20,809	975	1,017	1,274	1,275	785
2020년	47,704	12,570	3,261	15,675	906	549	1,090	965	714
2021년	50,784	12,085	3,127	15,811	1,828	748	1,140	1,369	809

<부표 21> 연도별 지역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6,847	7,395	26,171	14,353	6,672	8,554	7,781	10,885	2,326	55,989
1998년	0	0	0	0	0	0	0	0	0	0
1999년	0	0	0	0	0	0	0	0	0	0
2000년	0	0	0	0	0	0	0	0	0	0
2001년	0	0	0	0	0	0	0	0	0	0
2002년	1	0	0	0	0	0	0	0	0	0
2003년	0	0	0	0	0	0	0	0	0	0
2004년	34	5	89	35	11	33	49	80	6	113
2005년	29	4	62	38	11	20	31	40	5	82
2006년	167	20	530	317	147	270	184	283	43	649
2007년	200	45	751	419	205	320	224	337	38	860
2008년	312	74	1,210	587	267	502	381	459	54	1,246
2009년	318	69	1,125	578	224	427	391	371	77	1,051
2010년	151	71	601	325	118	259	210	252	43	808
2011년	191	117	806	386	146	293	279	347	62	866
2012년	211	120	1,087	568	188	324	352	331	84	1,226
2013년	224	292	1,431	789	414	462	493	417	160	2,010
2014년	357	549	1,804	900	416	567	452	730	155	2,841
2015년	372	617	1,927	1,006	324	503	371	492	207	3,642
2016년	439	1,221	2,796	1,504	494	628	641	937	233	7,290
2017년	746	1,437	3,172	2,019	649	913	703	1,676	302	8,800
2018년	741	1,109	2,699	2,046	787	835	811	1,432	346	7,008
2019년	963	779	1,903	1,206	676	735	684	1,142	223	6,151
2020년	826	416	1,990	811	740	679	364	867	118	5,163
2021년	565	450	2,188	819	855	784	1,161	692	170	6,183

<부표 22>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합계	739,075	493,085	120,523	61,144	29,390
1998년	0	0	0	0	0
1999년	0	0	0	0	0
2000년	0	0	0	0	0
2001년	0	0	0	0	0
2002년	4	4	0	0	0
2003년	1	1	0	0	0
2004년	3,980	2,661	519	295	175
2005년	2,814	1,744	424	254	129
2006년	23,481	12,769	4,131	2,390	1,326
2007년	31,894	18,892	5,489	2,835	1,484
2008년	48,095	30,472	8,417	3,897	1,902
2009년	40,132	28,052	5,768	2,697	1,323
2010년	22,398	15,939	3,107	1,444	725
2011년	26,792	16,851	4,455	2,428	1,164
2012년	31,462	19,030	5,253	2,955	1,637
2013년	40,481	22,800	7,491	4,441	2,288
2014년	47,625	25,087	9,656	6,089	2,954
2015년	44,914	24,342	9,404	5,453	2,773
2016년	64,456	38,677	12,389	6,924	3,393
2017년	82,808	53,943	14,369	7,723	4,137
2018년	69,279	50,400	10,024	5,246	2,755
2019년	59,971	45,015	9,215	4,480	1,152
2020년	47,704	38,129	8,009	1,490	72
2021년	50,784	48,277	2,403	103	1

<부표 22>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합계	14,580	7,882	4,653	2,981	4,837
1998년	0	0	0	0	0
1999년	0	0	0	0	0
2000년	0	0	0	0	0
2001년	0	0	0	0	0
2002년	0	0	0	0	0
2003년	0	0	0	0	0
2004년	93	54	42	40	101
2005년	68	51	41	27	76
2006년	777	514	380	312	882
2007년	882	589	474	334	915
2008년	1,006	685	529	363	824
2009년	730	486	337	266	473
2010년	396	245	178	148	216
2011년	662	429	257	223	323
2012년	929	575	432	274	377
2013년	1,348	847	527	377	362
2014년	1,624	1,032	623	365	195
2015년	1,431	809	451	176	75
2016년	1,817	903	277	62	14
2017년	1,953	573	93	13	4
2018년	762	82	9	1	0
2019년	100	7	2	0	0
2020년	2	1	1	0	0
2021년	0	0	0	0	0

<부표 23>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합계	739,075	493,549	122,941	61,544	28,575	13,752
1998년	0	0	0	0	0	0
1999년	0	0	0	0	0	0
2000년	0	0	0	0	0	0
2001년	0	0	0	0	0	0
2002년	4	4	0	0	0	0
2003년	1	1	0	0	0	0
2004년	3,980	2,503	520	370	199	124
2005년	2,814	1,548	488	298	169	101
2006년	23,481	10,666	4,644	2,960	1,764	1,044
2007년	31,894	16,734	6,367	3,436	1,846	1,016
2008년	48,095	28,370	9,299	4,618	2,250	1,130
2009년	40,132	27,331	6,168	2,953	1,427	733
2010년	22,398	15,801	3,224	1,509	723	384
2011년	26,792	16,787	4,567	2,477	1,160	672
2012년	31,462	19,085	5,319	2,995	1,635	908
2013년	40,481	22,915	7,603	4,465	2,274	1,352
2014년	47,625	25,298	9,765	6,124	2,959	1,592
2015년	44,914	24,596	9,570	5,527	2,686	1,372
2016년	64,456	39,106	12,707	6,909	3,349	1,616
2017년	82,808	54,711	14,923	7,769	3,726	1,409
2018년	69,279	51,365	10,467	5,134	2,008	280
2019년	59,971	46,687	9,438	3,439	388	18
2020년	47,704	40,400	6,799	491	12	1
2021년	50,784	49,641	1,073	70	0	0

<부표 23>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합계	7,273	4,256	2,725	1,709	2,751
1998년	0	0	0	0	0
1999년	0	0	0	0	0
2000년	0	0	0	0	0
2001년	0	0	0	0	0
2002년	0	0	0	0	0
2003년	0	0	0	0	0
2004년	69	51	36	33	75
2005년	47	44	36	25	58
2006년	647	430	351	279	696
2007년	687	499	370	297	642
2008년	755	496	378	272	527
2009년	503	338	247	186	246
2010년	255	187	125	79	111
2011년	408	247	209	129	136
2012년	585	381	254	160	140
2013년	791	512	339	140	90
2014년	952	569	258	86	22
2015년	703	331	102	20	7
2016년	604	145	16	3	1
2017년	243	23	4	0	0
2018년	22	3	0	0	0
2019년	1	0	0	0	0
2020년	1	0	0	0	0
2021년	0	0	0	0	0

<부표 24>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금액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퇴직공제자수	퇴직공제금 지급액
합계	1,874,421	3,279,463
1999년	3	2
2000년	638	512
2001년	3,836	3,599
2002년	5,046	5,268
2003년	6,621	7,323
2004년	11,419	12,775
2005년	15,044	17,046
2006년	14,700	17,905
2007년	11,495	14,259
2008년	12,703	16,779
2009년	20,328	28,602
2010년	22,935	37,773
2011년	25,290	48,268
2012년	45,257	88,872
2013년	57,968	123,414
2014년	68,113	154,102
2015년	73,775	188,241
2016년	86,457	221,681
2017년	100,541	266,704
2018년	123,884	350,765
2019년	204,391	539,487
2020년	503,416	604,625
2021년	460,561	531,460

<부표 25> 연도별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단위: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합계	1,874,421	1,596,355	278,066
1999년	3	3	0
2000년	638	530	108
2001년	3,836	2,945	891
2002년	5,046	3,448	1,598
2003년	6,621	4,471	2,150
2004년	11,419	7,750	3,669
2005년	15,044	10,676	4,368
2006년	14,700	10,457	4,243
2007년	11,495	8,752	2,743
2008년	12,703	10,341	2,362
2009년	20,328	16,931	3,397
2010년	22,935	19,814	3,121
2011년	25,290	21,995	3,295
2012년	45,257	40,486	4,771
2013년	57,968	52,878	5,090
2014년	68,113	61,715	6,398
2015년	73,775	67,633	6,142
2016년	86,457	79,369	7,088
2017년	100,541	92,050	8,491
2018년	123,884	113,550	10,334
2019년	204,391	180,655	23,736
2020년	503,416	415,408	88,008
2021년	460,561	374,498	86,063

<부표 26> 연도별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단위: 명)

구분	전체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합계	1,874,421	388	8,103	33,460	48,655	69,853	91,714
1999년	3	0	1	0	1	0	1
2000년	638	5	38	77	73	85	86
2001년	3,836	18	184	428	389	370	433
2002년	5,046	22	238	543	456	449	480
2003년	6,621	16	305	650	736	600	630
2004년	11,419	21	409	905	1,114	985	1,041
2005년	15,044	27	418	1,034	1,332	1,290	1,377
2006년	14,700	10	253	823	1,250	1,356	1,387
2007년	11,495	4	137	566	871	1,044	1,024
2008년	12,703	0	84	504	809	1,236	1,171
2009년	20,328	0	70	491	980	1,648	1,858
2010년	22,935	1	69	467	1,061	1,699	2,064
2011년	25,290	2	77	470	1,049	1,824	2,418
2012년	45,257	6	105	652	1,699	2,812	4,216
2013년	57,968	5	159	888	1,979	3,330	5,320
2014년	68,113	7	225	1,042	1,946	3,010	5,351
2015년	73,775	6	311	1,384	2,551	3,840	5,931
2016년	86,457	8	312	1,489	2,757	4,135	6,230
2017년	100,541	11	489	2,043	3,512	5,371	7,492
2018년	123,884	21	868	3,543	4,654	6,888	8,734
2019년	204,391	20	1,057	4,951	7,012	10,916	13,075
2020년	503,416	56	1,105	5,226	6,109	8,133	10,153
2021년	460,561	122	1,189	5,284	6,315	8,832	11,242

<부표 26> 연도별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계속)

(단위: 명)

구분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66~69세	70세 이상
합계	120,519	140,610	147,839	388,187	138,420	299,469	387,204
1999년	0	0	0	0	0	0	0
2000년	54	67	91	45	7	7	3
2001년	362	446	554	472	58	97	25
2002년	472	538	654	801	97	236	60
2003년	615	630	690	1,139	144	362	104
2004년	1,075	1,000	1,246	2,304	320	777	222
2005년	1,546	1,486	1,814	3,085	393	972	270
2006년	1,515	1,502	1,866	2,907	435	1,040	356
2007년	1,237	1,135	1,448	2,534	414	805	276
2008년	1,397	1,295	1,455	2,916	496	1,050	290
2009년	2,016	2,059	2,362	5,372	825	2,046	601
2010년	2,222	2,429	2,840	6,125	796	2,309	853
2011년	2,521	2,886	3,317	6,695	829	2,293	909
2012년	4,802	5,427	4,969	14,368	1,510	3,009	1,682
2013년	6,304	7,596	6,547	17,753	2,108	3,845	2,134
2014년	6,303	7,370	6,559	21,116	2,967	6,829	5,388
2015년	7,513	8,572	8,020	24,929	2,475	5,260	2,983
2016년	8,072	9,260	8,807	26,789	3,222	9,241	6,135
2017년	10,952	12,441	12,669	31,630	3,236	7,154	3,541
2018년	12,797	14,161	15,098	38,052	3,949	9,513	5,606
2019년	19,189	21,946	23,464	61,757	6,352	17,736	16,916
2020년	14,646	18,369	20,272	59,801	53,371	128,215	177,960
2021년	14,909	19,995	23,097	57,597	54,416	96,673	160,890

<부표 27> 연도별 지역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1,874,421	311,837	116,713	376,982	93,562	103,461	98,104	142,601	32,030
1999년	3	0	2	0	0	0	0	0	0
2000년	638	171	72	144	56	22	11	22	3
2001년	3,836	717	227	702	249	185	173	220	69
2002년	5,046	593	228	853	259	333	256	338	75
2003년	6,621	756	308	1,170	484	486	397	355	120
2004년	11,419	1,273	496	1,954	729	779	659	941	192
2005년	15,044	1,630	750	2,493	895	950	907	1,524	245
2006년	14,700	1,649	694	2,377	940	935	826	1,317	187
2007년	11,495	1,273	571	1,795	786	842	688	1,139	126
2008년	12,703	1,667	612	1,842	1,373	835	654	1,344	150
2009년	20,328	2,997	1,009	3,195	2,431	1,184	867	2,390	154
2010년	22,935	3,916	1,271	3,902	2,147	1,222	891	2,318	216
2011년	25,290	4,914	1,643	4,758	1,933	1,307	992	2,240	293
2012년	45,257	10,749	2,952	9,811	2,561	2,210	1,556	3,069	381
2013년	57,968	13,887	3,986	12,028	2,842	2,455	2,140	4,062	569
2014년	68,113	13,629	4,161	12,953	3,614	3,788	3,075	5,785	1,033
2015년	73,775	15,198	4,835	14,679	3,690	3,683	2,946	6,166	1,058
2016년	86,457	16,510	5,534	17,177	4,157	4,617	3,869	6,764	1,415
2017년	100,541	20,604	6,427	21,064	4,672	4,983	4,451	7,348	1,443
2018년	123,884	23,910	8,419	28,575	5,658	6,012	5,838	9,888	2,444
2019년	204,391	35,646	13,466	48,322	8,808	10,207	11,111	14,332	3,752
2020년	503,416	77,182	31,330	95,201	24,140	27,874	27,457	38,979	9,310
2021년	460,561	62,966	27,720	91,987	21,138	28,552	28,340	32,060	8,795

<부표 27> 연도별 지역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계속)

(단위: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58,213	7,485	81,993	62,887	58,399	97,269	85,192	75,170	19,245	53,278
1999년	0	0	0	0	0	1	0	0	0	0
2000년	51	1	14	12	7	15	13	17	3	4
2001년	189	6	233	145	178	136	222	148	30	7
2002년	242	17	226	255	244	333	413	268	109	4
2003년	295	10	297	344	395	421	429	307	43	4
2004년	548	20	526	527	594	841	792	453	57	38
2005년	796	21	674	569	726	1,007	906	625	99	227
2006년	784	28	665	635	916	1,014	1,082	480	91	80
2007년	592	15	471	516	657	774	745	411	42	52
2008년	497	14	452	454	696	735	818	489	47	24
2009년	744	35	655	534	1,087	1,141	1,104	655	76	70
2010년	848	53	771	733	1,160	1,229	1,190	810	138	120
2011년	934	41	775	687	1,170	1,314	1,107	861	198	123
2012년	1,515	90	1,433	1,244	1,644	1,930	1,928	1,558	288	338
2013년	1,995	160	2,160	1,692	1,903	2,680	2,572	1,953	395	489
2014년	2,447	235	2,770	2,042	2,213	3,740	3,145	2,414	492	577
2015년	2,630	325	3,058	2,274	2,277	3,561	3,467	2,593	524	811
2016년	2,814	349	3,974	2,587	2,460	4,442	3,838	3,386	771	1,793
2017년	3,232	492	4,448	2,941	2,606	4,314	3,689	3,595	851	3,381
2018년	3,732	644	5,635	3,748	3,146	4,726	4,641	4,234	1,147	1,487
2019년	6,236	1,112	9,306	7,101	6,012	9,380	8,654	7,556	2,350	1,040
2020년	14,355	1,856	20,788	16,573	14,748	25,386	22,537	21,101	5,722	28,877
2021년	12,737	1,961	22,662	17,274	13,560	28,149	21,900	21,256	5,772	13,732

<부표 28> 연도별 지급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합계	1,874,421	825,367	600,176	209,530	98,310	53,062	31,568	19,882
1999년	3	3	0	0	0	0	0	0
2000년	638	521	116	1	0	0	0	0
2001년	3,836	2,692	1,116	28	0	0	0	0
2002년	5,046	3,011	1,910	124	1	0	0	0
2003년	6,621	3,671	2,567	353	30	0	0	0
2004년	11,419	6,296	4,295	726	94	8	0	0
2005년	15,044	8,216	5,588	1,029	180	30	1	0
2006년	14,700	7,625	5,649	1,136	240	45	5	0
2007년	11,495	6,293	4,184	802	193	20	3	0
2008년	12,703	6,763	4,718	993	186	38	5	0
2009년	20,328	9,413	8,419	1,949	446	82	18	1
2010년	22,935	8,854	10,377	2,773	720	171	38	2
2011년	25,290	6,780	12,336	4,324	1,373	377	75	15
2012년	45,257	9,339	23,095	8,280	3,064	1,067	317	75
2013년	57,968	8,352	29,639	11,805	4,964	2,080	787	240
2014년	68,113	10,102	33,791	12,608	6,047	3,055	1,518	641
2015년	73,775	6,328	36,592	14,467	7,491	4,300	2,359	1,293
2016년	86,457	7,482	43,779	16,586	7,972	4,526	2,801	1,635
2017년	100,541	6,776	50,865	19,681	9,497	5,280	3,283	2,155
2018년	123,884	5,325	64,010	23,410	11,880	6,932	4,418	2,927
2019년	204,391	23,026	104,057	34,126	16,431	9,112	5,711	3,892
2020년	503,416	351,144	82,772	28,509	14,507	8,328	5,379	3,743
2021년	460,561	327,355	70,301	25,820	12,994	7,611	4,850	3,263

<부표 28> 연도별 지급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계속)

(단위: 명)

구분	800만 원 미만	9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1,100만 원 미만	1,200만 원 미만	1,300만 원 미만	1,400만 원 미만	1,400만 원 이상
합계	13,081	8,911	5,789	3,862	2,295	1,257	729	602
1999년	0	0	0	0	0	0	0	0
2000년	0	0	0	0	0	0	0	0
2001년	0	0	0	0	0	0	0	0
2002년	0	0	0	0	0	0	0	0
2003년	0	0	0	0	0	0	0	0
2004년	0	0	0	0	0	0	0	0
2005년	0	0	0	0	0	0	0	0
2006년	0	0	0	0	0	0	0	0
2007년	0	0	0	0	0	0	0	0
2008년	0	0	0	0	0	0	0	0
2009년	0	0	0	0	0	0	0	0
2010년	0	0	0	0	0	0	0	0
2011년	8	2	0	0	0	0	0	0
2012년	15	5	0	0	0	0	0	0
2013년	79	17	4	1	0	0	0	0
2014년	245	73	24	9	0	0	0	0
2015년	564	263	81	27	9	1	0	0
2016년	881	468	211	80	25	11	0	0
2017년	1,362	838	465	221	81	26	10	1
2018년	1,941	1,329	874	483	231	76	31	17
2019년	2,820	2,020	1,319	884	543	262	119	69
2020년	2,788	2,079	1,472	1,103	701	449	250	192
2021년	2,378	1,817	1,339	1,054	705	432	319	323

<부표 29> 연도별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합계	1,874,421	667,320	667,300	240,078	117,290	65,052
1999년	3	0	3	0	0	0
2000년	638	0	586	47	4	1
2001년	3,836	0	2,988	673	162	11
2002년	5,046	0	3,368	1,279	307	81
2003년	6,621	0	4,012	1,705	594	219
2004년	11,419	0	7,141	2,472	1,152	442
2005년	15,044	0	9,394	3,157	1,466	589
2006년	14,700	0	8,400	3,460	1,596	684
2007년	11,495	1	6,544	2,788	1,184	543
2008년	12,703	0	7,127	3,065	1,370	637
2009년	20,328	0	11,108	4,991	2,226	1,094
2010년	22,935	0	12,849	5,293	2,529	1,158
2011년	25,290	1	13,111	6,115	3,054	1,511
2012년	45,257	0	24,571	10,448	5,012	2,579
2013년	57,968	0	30,505	13,168	6,631	3,576
2014년	68,113	0	37,224	14,035	7,071	4,077
2015년	73,775	0	37,906	15,167	7,863	4,809
2016년	86,457	0	46,841	17,285	8,585	4,872
2017년	100,541	0	54,093	20,187	9,988	5,443
2018년	123,884	0	66,430	23,782	12,011	7,063
2019년	204,391	0	118,487	37,653	17,789	9,910
2020년	503,416	343,356	88,628	28,862	14,504	8,517
2021년	460,561	323,962	75,984	24,446	12,192	7,236

<부표 29> 연도별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합계	39,045	25,044	17,239	11,660	24,393
1999년	0	0	0	0	0
2000년	0	0	0	0	0
2001년	2	0	0	0	0
2002년	10	1	0	0	0
2003년	69	20	2	0	0
2004년	122	62	24	4	0
2005년	266	103	47	17	5
2006년	304	162	55	25	14
2007년	234	117	63	13	8
2008년	290	117	58	27	12
2009년	492	236	101	52	28
2010년	588	273	136	67	42
2011년	793	389	168	83	65
2012년	1,332	659	345	174	137
2013년	1,897	1,057	580	266	288
2014년	2,368	1,484	868	467	519
2015년	3,049	1,975	1,270	773	963
2016년	3,181	2,018	1,451	894	1,330
2017년	3,441	2,402	1,723	1,177	2,087
2018년	4,565	2,981	2,202	1,566	3,284
2019년	6,133	4,118	2,932	2,228	5,141
2020년	5,327	3,724	2,825	2,064	5,609
2021년	4,582	3,146	2,389	1,763	4,861

<부표 30> 연도별 퇴직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단위: 명)

구분	전체	고령	타업종 취업	부상질병	자영업	상용 근로자	사망	수급요건 완화	기타
합계	1,874,421	563,613	184,490	175,600	54,265	34,318	21,826	666,845	173,464
1999년	3	0	0	1	0	1	0	0	1
2000년	638	85	118	30	19	38	4	0	344
2001년	3,836	1,034	448	164	79	109	30	0	1,972
2002년	5,046	1,474	1,042	404	272	237	54	0	1,563
2003년	6,621	1,723	1,361	577	369	637	86	0	1,868
2004년	11,419	3,607	2,425	1,068	481	575	154	0	3,109
2005년	15,044	4,792	3,499	1,527	574	572	142	0	3,938
2006년	14,700	4,954	3,346	1,640	637	518	169	0	3,436
2007년	11,495	4,352	2,685	1,288	654	435	148	0	1,933
2008년	12,703	5,050	3,341	1,328	632	382	206	0	1,764
2009년	20,328	9,454	4,331	2,063	971	676	332	0	2,501
2010년	22,935	10,078	4,768	1,869	1,136	785	1,852	0	2,447
2011년	25,290	11,241	5,314	2,465	1,313	800	1,024	0	3,133
2012년	45,257	19,931	6,485	5,312	1,700	1,380	1,255	0	9,194
2013년	57,968	25,352	8,045	8,869	2,179	2,235	1,219	0	10,069
2014년	68,113	35,773	9,083	9,026	2,452	1,743	1,206	0	8,830
2015년	73,775	35,198	11,776	10,601	3,073	2,018	1,146	0	9,963
2016년	86,457	44,915	11,606	11,615	3,407	2,489	1,165	0	11,260
2017년	100,541	45,114	14,263	15,713	4,219	2,779	1,206	0	17,247
2018년	123,884	56,624	18,443	22,589	5,324	2,994	1,253	0	16,657
2019년	204,391	101,176	32,441	28,762	10,141	4,973	3,141	0	23,757
2020년	503,416	78,373	20,602	25,005	7,427	3,990	3,454	344,380	20,185
2021년	460,561	63,313	19,068	23,684	7,206	3,952	2,580	322,465	18,293

<부표 31> 연령별 지역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1999~2021)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1,874,421	311,837	116,713	376,982	93,562	103,461	98,104	142,601	32,030
19세 이하	388	26	15	69	19	16	20	68	6
20~24세	8,103	968	529	1,946	413	406	433	671	126
25~29세	33,460	4,786	2,633	8,392	1,506	1,605	1,633	2,550	642
30~34세	48,655	8,010	3,373	11,913	2,188	2,275	2,313	3,559	845
35~39세	69,853	11,262	4,556	16,563	3,351	3,443	3,606	5,480	1,269
40~44세	91,714	15,786	5,807	21,161	4,431	4,570	4,648	7,045	1,497
45~49세	120,519	23,067	7,670	28,142	5,632	5,614	5,659	8,820	1,914
50~54세	140,610	28,214	9,059	32,757	6,714	6,348	6,349	10,293	2,050
55~59세	147,839	29,377	9,576	33,572	7,283	6,864	6,773	11,261	2,170
60~64세	388,187	70,662	24,942	82,275	20,481	20,794	18,529	30,092	6,826
65세	138,420	22,126	8,578	26,725	7,157	8,119	7,992	11,276	2,794
66~69세	299,469	46,714	17,231	53,328	15,591	17,759	16,875	23,628	5,744
70세 이상	387,204	50,839	22,744	60,139	18,796	25,648	23,274	27,858	6,147

<부표 31> 연령별 지역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1999~2021) (계속)

(단위: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58,213	7,485	81,993	62,887	58,399	97,269	85,192	75,170	19,245	53,278
19세 이하	12	2	18	14	8	26	12	15	1	41
20~24세	289	36	383	262	326	420	401	307	65	122
25~29세	1,089	202	1,516	842	1,152	1,518	1,301	972	277	844
30~34세	1,533	228	2,124	1,303	1,805	2,391	1,873	1,361	425	1,136
35~39세	2,336	362	3,248	1,930	2,694	3,329	2,756	2,001	596	1,071
40~44세	3,036	451	4,246	2,738	3,242	4,280	3,855	2,874	789	1,258
45~49세	3,814	530	5,542	3,489	3,738	5,207	4,828	4,098	1,101	1,654
50~54세	4,596	615	6,548	3,996	3,998	5,849	5,323	4,764	1,321	1,816
55~59세	5,005	604	6,529	4,391	4,316	6,113	5,835	5,144	1,291	1,735
60~64세	12,848	1,531	16,270	13,371	11,476	18,804	16,636	15,363	3,706	3,581
65세	4,215	552	5,620	4,793	4,017	6,430	6,435	5,850	1,608	4,133
66~69세	8,858	1,056	11,726	10,131	9,013	15,638	14,056	12,479	3,267	16,375
70세 이상	10,582	1,316	18,223	15,627	12,614	27,264	21,881	19,942	4,798	19,512

<부표 32> 연령별 적립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1999~2021)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합계	1,874,421	825,367	600,176	209,530	98,310	53,062	31,568
19세 이하	388	110	234	35	8	1	0
20~24세	8,103	1,666	5,321	890	187	30	8
25~29세	33,460	4,662	20,583	5,730	1,764	524	140
30~34세	48,655	7,361	27,327	8,602	3,281	1,223	486
35~39세	69,853	10,920	36,414	12,717	5,190	2,272	1,118
40~44세	91,714	13,822	44,806	17,340	7,549	3,757	1,990
45~49세	120,519	17,246	56,044	22,847	10,769	5,496	3,292
50~54세	140,610	21,623	62,385	26,370	12,761	7,015	3,902
55~59세	147,839	27,020	62,067	26,262	12,924	7,330	4,451
60~64세	388,187	61,522	177,735	60,204	31,264	18,818	12,420
65세	138,420	101,773	22,807	6,448	3,093	1,656	861
66~69세	299,469	218,789	51,201	14,180	6,255	3,371	1,971
70세 이상	387,204	338,853	33,252	7,905	3,265	1,569	929

<부표 32> 연령별 적립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1999~2021) (계속)

(단위: 명)

구분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9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1,100만 원 미만	1,200만 원 미만
합계	19,882	13,081	8,911	5,789	3,862	2,295
19세 이하	0	0	0	0	0	0
20~24세	1	0	0	0	0	0
25~29세	36	14	6	1	0	0
30~34세	225	91	33	14	6	5
35~39세	586	305	180	73	47	22
40~44세	1,037	586	353	233	115	64
45~49세	1,884	1,162	698	470	292	165
50~54세	2,410	1,528	1,008	680	434	243
55~59세	2,781	1,882	1,259	766	524	277
60~64세	8,535	5,975	4,258	2,835	1,951	1,211
65세	598	384	285	190	154	69
66~69세	1,262	816	617	382	250	181
70세 이상	527	338	214	145	89	58

<부표 32> 연령별 적립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1999~2021) (계속)

(단위: 명)

구분	1,300만 원 미만	1,400만 원 미만	1,500만 원 미만	1,600만 원 미만	1,700만 원 미만	1,700만 원 이상
합계	1,257	729	350	166	56	30
19세 이하	0	0	0	0	0	0
20~24세	0	0	0	0	0	0
25~29세	0	0	0	0	0	0
30~34세	0	1	0	0	0	0
35~39세	6	1	1	0	0	1
40~44세	29	15	8	7	1	2
45~49세	78	45	13	8	9	1
50~54세	116	79	35	19	0	2
55~59세	150	80	44	16	2	4
60~64세	705	425	195	85	34	15
65세	54	28	13	4	2	1
66~69세	88	44	30	23	5	4
70세 이상	31	11	11	4	3	0

2021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 본 자료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공공누리

공 공 서 작 물 자 유 이 용 허 락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